

수 있다. 무엇을 표준으로 시간적 계속성이 있다고 할 것인가에 대해 일반사회 통념상 계속적 존재를 이루는 성질의 것이라면 충분하다. 반드시 현재 일정기간 계속한 것을 요하지 않는다.

본 결사조직죄에 대해서 주의해야 할 것은 본죄는 다수인을 결합해서 결사의 존속을 만드는 것으로 충분하고 반드시 결사로서 한 걸음 나아가서 실제 활동을 요구하지 않는다.

* 주 : 일본공산당의 근본 목적

상고취지서의 원판결은 그 이유 중 “일본공산당은 러시아, 모스크바에 본부를 가진 국제공산당(코민테른)의 한 지부로 민중의 혁명적 수단에 의해 XXXX를 철폐하고 이에 대신하여 무산계급 독재정부를 수립해서 우리 국체를 변혁하고 또 일체의 생산기관을 사회의 공유로 옮겨서 사유재산제도를 부인하는 소위 공산주의 실현을 목적으로 한 단체라고 한다”고 판시했다. 생각건대 원판결이 일본공산당의 근본 목적이라는 것을 “혁명적 수단에 의해 정치적으로는 우리 대일본 제국의 대본(大本)인 XXXXX를 변혁해서 무산계급 독재의 정부를 수립하고 그것에 의해 경제적으로는 사유재산제도를 철폐하고 모든 생산기관을 사회의 공유로 하려고 하는” 것에 있다고 인정한 근거는 일본공산당의 정치테제 13항목의 슬로건 등에 근거함이 명백하다. 그렇지만 테제라는 것은 당면한 방침서 의견서로 불리야 할 것으로, 한번 정한 근본 목적을 기재하는 것이 아니라서 기술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슬로건은 정강, 정책과는 다르고 이에 의해 결사의 근본 목적을 결의하는 것 내지는 행동의 기준을 정하는 것이 아니다. 대중 동원의 가치로 그때그때에 따라 내건 일시적인 표어에 불과하다. 그러므로 테제와 슬로건에 표현된 사정을 공산당의 근본 목적으로 인정하는 것은 공산당의 본질에 속한 중대한 곡해이거나 사실의 오인에 근거한 것이다. 그 근본 목적은 타인의 노동력 착취의 철폐 즉 착취 없는 사회의 실현에 있다. 요컨대 일본공산당의 근본 목적의 인정에 대해 중대한 사실의 오인을 의심하기에 충분히 현저한 사유가 있는 것이 아닌데도, 원판결은 문서의 기재·증인의 공술을 종합해서 인정한 것으로 더욱이 기록을 조사해서 상고하건대 일본공산당의 근본 목적인 사실의 인정에 있어서 중대한 오류가 있다는 것을 의심하기에 충분히 현저한 사유가 없어 상고는 이유 없는 것으로 한다. (1930년 12월 8일 대심원 형사부 판결)

* 주 : 결사조직죄와 슬로건

슬로건은 가령 정책, 정강과 다르다고 해도 슬로건이 근본 목적을 가진 비밀결사 일본공산당의 조직 이후 발표된 것과 관련해서 내세운 것 내지 3항의 주장이 공산당의 정강이 되거나 그렇지 않으면 소위 일시적인 표어에 지나지 않은 것은 치안유지법에서 비밀결사 조직죄의 구성에 영향이 없다. (1929년 5월 31일 대심원 형사부 판결)

* 주: 결사조직죄의 성립

본조의 결사조직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국체의 변혁 또는 사유재산제도의 부인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필요하다. 소위 ‘목적으로서’라는 것은 형법 제77조 등의 용례와 같은 뜻으로 국체를 변혁하거나 사유재산의 제도를 부인하는 것이 결사를 조직하는 것의 동기가 된다는 것을 말한다. 즉 국체의 변혁 또는 사유재산제도를 부인하는 것에 대해 확정 고의가 존재하는 것만으로 충분하다. 그렇지만 가입자에 대해서는 반드시 그 같은 목적 고의가 존재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다. 기존의 결사가 위에서 말한 것과 같은 목적을 인식하면 그것으로 충분하다. 대개 가입자가 기존 결사가 상술한 목적을 가진 것을 인식하는데 구애받지 않고 굳이 이에 가입한 것에는 가령 스스로 상술한 목적을 갖고 가입한 것이 아니라고 해도 가입 후 공동목적 하에 행동할 위험은 이미 발생한 것이라고 말할 수 있다. 그것이 본 조에서 단순히 사정을 알고 결사에 가입한 것으로 규정할 수 있는 이유이다.

1) 결사조직의 미수죄

결사조직의 미수도 본 조 제3항에 의해 처벌된다. 즉 미수라는 것은 본 조 범죄의 실행에 착수했어도 그 범죄를 완성하기에 도달하지 않은 경우를 말한다. 즉 결사를 조직하려고 기획해서 상대방에 대해 그런 뜻의 의사를 표시하고 상대방이 아직 이에 응하지 않은 경우, 또는 현존의 결사에 대해서 가맹 권유의 의견을 표시한 문서를 송부하고, 그것이 아직 도달하기 이전인 경우 모두 미수죄를 구성한다. 그런데 본 법은 미수죄를 처벌해도 그 예비음모는 처벌하지 않는다. 대개 형법내란죄의 예비음모에 비해서 아직 위험상태에 접근했다고 인정할 수 없기 때문이다.

2) 형법내란에 관한 죄와 결사조직죄 및 가입죄의 관계

국체를 변혁하려는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키기 위해 결사를 조직하거나 또는 결사에 가입한 경우는 형법 제79조의 내란의 예비 또는 음모로 인정해야 하며 본 법의 결사죄를 구성하지 않는다. 대개 본 법은 국체를 변혁하거나 혹은 사유재산제도의 부인을 목적으로 하는 결사의 조직, 가입, 그 사항의 실행에 대한 협의, 혹은 이런 것들의 선동을 벌하는 데 있고, 직접 폭동을 목적으로 하는 예비음모를 벌하는 데 있지 않다.

처벌 : 사형 또는 무기 혹은 5년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

제2. 결사지도죄

본 법 제1조 제1항 전단 2에 의하면, 결사의 조직원과 그 외 지도자의 임무에 종사한

자를 별한다.

결사의 조직원 또는 지도자라는 것은 조직된 결사의 활동을 위한 기관에서 즉 간부, 서기, 비서 등 명의의 여하를 불문하고 결사활동 행위에 대해 지도자 역할을 담당한 자로, 그 지도는 직접인 것과 간접인 것 또는 언론에 의한 것, 문서에 의한 것을 불문하고, 사회통념상 지도행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것으로 충분하다. 그러므로 이 지도행위를 분류할 때

1. 결사조직행위의 지도

2. 결사조직후의 지도

1) 스스로 결사를 조직하고 그것을 인계하여 지도한 경우

2) 타인이 이미 조직한 결사를 이후에 지도한 경우

위의 '1. 결사조직행위의 지도'는 결사조직행위 즉 조직죄에 포함된 것으로 본죄의 목적이 되지 않는다. 그렇지만 모성단체의 사원이 새로 세포단체를 조직하는 경우나 이를 지도한 경우에는 지도죄를 구성한다.

따라서 지도죄로서 보통 일반의 경우는 위의 2.에서 결사조직 후의 지도를 내용으로 한다. 즉 스스로 결사를 조직하고 지도하는 경우는 물론 타인이 이미 조직한 결사에서 지도하는 경우를 말한다.

그러므로 그 지도행위라는 것은 결사의 행동을 지시하고 교도(敎導)하는 동정(動靜)을 말한다. 1928년 6월 칙령 제129호에 의해 지도행위를 부가하는 이유는 지도행위가 협의의 조직행위로 받아들여지지 않는 경우가 있어 결사지도행위와 같은 중대한 임무에 따르는 자를 처벌하지 않는 경우 또는 가벼운 가입죄 및 목적수행 행위를 한 죄에 의하지 않으므로 이를 처단하기 어려운 경우가 있다는 것을 고려해야 하기 때문이다.

본 죄의 미수는 그것을 별한다.

처벌 : 사형 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

제3. 가입죄

제1조 제1항 후단 1에 의하면, 사정을 알고 국체의 변혁을 목적으로 하는 결사에 가입한 자는 가입죄로 별한다. 가입죄의 성립은 다음과 같은 요건을 필요로 한다.

1. 사원 자격의 획득행위

사원 자격의 획득이라는 것은 사원의 지위를 획득하기 위해 필요한 행위를 한 것을

말한다. 즉 상대방에 대해 결사동맹의 의사를 표시하고 상대방의 승낙을 구하거나 혹은 가맹신청서를 제출하거나 혹은 사원의 결맹을 하는 것과 같이 결사 사원의 자격을 획득하기 위한 일체의 행위를 말한다. 가입하려고 하는 결사는 이미 성립한 것과 조직준비 중의 결사인 것, 그 가입의 수단은 타동적인 것과 자동적인 것을 불문한다.

2. 결사의 지지행위

결사가입죄의 성립에는 사원 자격의 획득행위만으로는 부족하다. 여기에서 말하는 지지행위라는 것이 필요하다. 즉 지지행위라는 것은 결사의 구성분자가 되어 결사를 유지하기 위한 행위를 말한다.

그렇지만 여기에서 지지행위라는 것은 결사에 가입하고 활동한 것 또는 결사의 발표상 필요한 역할을 한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결사의 구성분자라는 지위를 획득한 것으로 충분하여 그 이상 활동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

3. 사정을 알고 가입한 것을 요함

가입행위라는 것은 사정을 알고 가입한 것이 필요하다. 즉 국체의 변혁을 목적으로 하는 결사는 사실을 알고 가입한 것이 필요하고, 그 인식이 결여할 때는 본죄로 하지 않는다. 그 사정을 아는 시기는 반드시 가입 전 또는 가입 당시인 것이 필요하지 않다. 가입 당시 사정을 알지 못하고 가맹 후 사정을 알고 탈퇴하지 않은 경우도 지정가입(사정을 알고 가입)이라고 말할 수 있다.

또 지정가입 후 탈퇴한 경우는 본죄의 성립에 영향이 없다.

마지막으로 결사조직죄 및 가입죄의 성질 및 관계에 대해서 고찰하건대, 본 법 제1조는 결사의 창설 및 지지 확대를 위한 행위를 처벌하고, 치안의 유지를 목적으로 한다. 원래 결사는 계속적 존재를 본질로 하는 단체이지만, 그렇기 때문에 그 지지를 위한 행위 또한 그 본질상 포괄성 및 계속성을 가진다. 특히 그 지도행위 및 목적행위를 위한 행위는 이러한 개념을 가진다. 조직죄 및 가입죄는 그 정의상 소위 기성범(既成犯)이라고 볼 수 없는 것은 아니지만, 이를 치안유지의 목적에 입각한 입법의 정신에 비추어 볼 때 조직죄는 결사를 창설하는 행위, 즉 협의의 조직행위와 당연히 이에 동반하는 활동을 포괄한다. 가입죄는 사원 자원의 획득, 즉 협의의 가입행위 및 결사지지행위를 포괄하며, 어느 쪽이든 계속 연장하는 포괄일죄(包括一罪)로 이를 관찰하는 것은 정당하다. 그렇지만 이러한 행위는 어느 쪽이든 가별성(可罰性)을 가진 것이므로 하나로써 다른 것을 흡수하지 않고 모두 그 가별성을 보지(保持)하면서 서로 합해서 포괄적인 하나의 죄를

구성한다. 그 내용을 확충하는 것, 이를 비유한다면 내란죄 또는 소요죄를 구성하는 다수행위 상호의 관계 또는 수뢰죄(收賂罪)에 서의 결사행위, 수수행위, 상호의 관계와 다를 것이 없다. 요컨대 결사조직죄는 결사의 창설 및 지지를 목적으로 하는 것이고, 그 목적에서 나온 일체의 행위를 포괄하는 하나의 죄여야 한다. 결사가입죄는 그 자체로 결사의 지지행위에 속하고, 결사사원 자격획득 행위와 목적수행행위를 포괄하는 하나의 죄이다.

신법에서 새로 지도행위와 목적 수행 행위를 첨가한 것은 전자가 협의의 조직행위를 동반하지 않고, 후자가 협의의 가입행위와 서로 동반하지 않는 것을 고려한 것이다. 그러므로 시종 발전, 확충해서 포괄적으로 하나의 죄를 구성하는 일단의 다수행위이거나 구법시대부터 신법하에 계속되어 실행된 경우에는 이를 분할할 것 없이 그 전체를 포괄하는 하나의 죄로 삼아 신법을 적용해야 한다. (1931년 11월 26일 대심원 판결)

가입미수죄는 별한다.

가입죄의 처벌 : 2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금고

제4. 목적수행 행위의 죄

제1조 제1항 후단 2는 국체의 변혁을 목적으로 한 결사의 목적을 수행한 자를 벌한다.

1928년 6월 칙령 제129호에서 새로 목적수행행위를 더한 것은 협의의 가입행위(사원 자격의 획득행위)와 상반하지 않는 경우를 고려한 것이다. 즉 결사에 가입하지 않고 결사의 목적수행행위를 한 것을 단속하려는 데 있다. 목적수행 행위를 분할하면 다음과 같다.

1. 결사조직 전의 목적수행행위
2. 결사성립 후의 목적수행행위
 - 1) 결사에 가입해서 목적수행행위를 한 경우
 - 2) 결사에 가입하지 않고 목적수행행위를 한 경우

필요 예시

1. 결사조직 전의 목적수행행위는 본 죄를 구성하지 않는다. 그렇지만 당의 존재 목적을 인식해서 한 경우는 본 조의 죄를 성립한다.
2. 결사성립 후의 목적수행행위는 그 결사에 가입해서 목적수행행위를 한 것과 결사에 가입하지 않고 목적수행행위를 한 것을 불문하고 같이 처벌한다.

요컨대 여기에서 목적수행행위라는 것은 결사의 지지행위 즉 그 확대, 강화의 행동에서 비롯된 행위를 의미한다.

그렇다면 본 조에서 정한 목적수행행위, 즉 확대강화행위라는 것이 어떠한 성질, 종류, 범위의 행위를 구성하는가를 아래에 분류한다.

제1. 확대강화행위(목적수행행위)는 그 주체가 당원 또는 준당원 혹은 당원 후보자인 것이 필요하지 않는가?

생각컨대 진실로 국체의 변혁 또는 사유재산제도의 부인을 목적으로 하는 결사의 존재라는 것을 알면서 그 결사를 지지하고 그 확대, 강화를 도모한 행위를 한 자는 동(同) 결사와 조직관계를 가지지 않거나 또는 그 기관의 통제 지휘를 받는 것 없이도 치안유지법 제1조의 목적 수행을 위한 행위를 한 것에 해당한다. 대개 결사를 지지하고 그 확대, 강화를 도모하는 행위는 필경 결사의 목적 수행을 위한 행위에 다름 아니다(1930년 11월 17일 대심원 판결)라고 소극적으로 해석하는 것은 타당하다.

제2. 확대강화회의(목적수행행위)는 국체의 변혁 또는 사유재산제도 부인의 목적하에 이루어지는 것을 필요로 하는가?

제3. 당의 대목적과 직접 중요한 관계에 서는 행위만이 확대강화회의로 될 것인가?

위의 제2, 3에 관해 대심원은 소극적인 견해를 거시(擧示)하고, ‘본 법 제1조에 결사의 목적수행을 위한 행위라는 것’은 국체의 변혁 또는 사유재산제도의 부인을 목적으로 조직한 결사인 것을 인식해서 결사를 지지하고, 그 확대를 도모하는 등 결사의 목적 수행에 도움이 되는 모든 행위를 포함해야 할 것으로 해석한다. 진실로 상술한 것처럼 결사인 것을 알면서 그것이 지지행위에 도움이 될 수 있는 행위인 이상, 그 행위가 국체의 변혁 또는 사유재산제도 부인의 목적에서 나왔는가 아닌가, 또 위의 목적과 직접 중요한 관계인가 아닌가는 동 법 제1조 제1항 제2항 각 후단의 죄 성립에 소장(消長)이 오는 것이 아니다. (1931년 5월 21일 대심원 판결)

따라서 이상의 견해에 의하면 당의 존재 목적을 인식하면서 그 지지, 확대에 이바지하고, 당의 지지, 확대의 자료를 내용으로 하는 인쇄물의 발행행위 · 배포행위 · 첨부행위 등은 물론 독서회 · 담화회 · 연구회 등의 명칭하에 다수 집합하여 당의 지지, 확대에 관한 방법에 대해 연구 · 토론 등을 한 경우, 당의 지지, 확대를 위해서 스트라이크(파업)를 한 경우, 당의 지지, 확대를 위해 입당을 권유한 경우, 당의 지지, 확대에 도움이 되는 연설 · 강의 · 담론을 한 경우 등 어떤 것이든 확대강화행위를 형성하는 것이다.

그러나 예를 들면 영화에 나타난 레닌, 스탈린 등의 초상을 보고 관중과 함께 박수 치는 행위 같은 것은 당의 지지, 확대에 어떤 영향도 없을 뿐만 아니라, 감정에 지배된 행위이므로 이를 지목하여 확대강화행위라고 단언하는 것은 온당치 않다. 이와 반대로 법정에서 당의 피고 등이 입정할 때에, 또는 소란을 부릴 때에 협력 합체해서 당의 지지, 확대를 도모하는 의견에 방청인이 박수 치고, 소란 또는 혐명가를 고창하는 행위는 이상의 견해로 보면 확대강화회의로 인정할 수 있다.

그러므로 결사가입과 목적수행행위의 관계를 어떻게 검토하는가에 대해 본 법 제1조 제1항 후단은 단체의 변혁을 목적으로 하는 결사에 가입하거나 또는 그 목적 수행을 위한 행위를 처벌하는 것으로써 그 결사에 가입하고 함께 그 목적 수행을 위한 행위를 했을 때는 이죄(二罪)로써 처벌해야 한다. 진실로 결사에 가입한 자는 결사의 지지는 물론 그 확대, 강화를 도모해야 할 행동으로 나오는 것이 당연한 것으로써 위의 양자는 이를 포괄적으로 관찰하고, 동 조 제1항 후단에 해당하는 죄로서 치단해야 한다고 해석하는 것이 마땅하다.

* 주 : 진실로 국체의 변혁 또는 사유재산제도의 변혁을 목적으로 한 결사의 존재를 알고, 그 결사를 지지하고 그 확대, 강화를 기도하는 행위를 한 자는 동 결사와 조직관계를 갖지 않거나 또는 그 기관의 통제와 지도를 받은 일이 없어도 치안유지법 제1조의 소위 결사의 목적 수행을 위한 행위를 한 자에 해당한다. (1930년 11월 17일 대심원 형사부 판결)

* 주 : 치안유지법 제1조에 소위 결사의 목적 수행을 위한 행위라는 것은 국체의 변혁 또는 사유재산제도의 부인을 목적으로 하는 결사라는 것을 인식하고 그 결사를 지지하고 그 확대를 도모하는 등 결사의 목적 수행에 도움이 된 일체의 행위를 포함한다. (1931년 5월 21일 대심원 형사부 판결)

제2항 사유재산제도의 부인을 목적으로 하는 죄

제1. 결사조직죄

사유재산제도의 변혁을 목적으로 하는 결사죄도 그 구성에 있어서 국체의 변혁을 목적으로 한 결사죄와 다를 것이 없다.

1. 결사의 창설행위인 것.
2. 결사의 지지행위인 것.

3. 결사가 조직된 것.

세 가지 요소로 충분하고 단지 그 목적이 사유재산제도를 부인한다는 점에 있어서 국체의 변혁과 취급을 달리하는 것이다.

처벌 : 10년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

사유재산제도 부인의 죄가 국체의 변혁을 목적으로 하는 죄와 처벌의 정도가 다른 이유는 국체의 변혁은 우리 국가의 존립상 극히 중대한 사항이고, 우리 국체가 절대 불가침인 것은 국민정서가 일치하는 것으로 사유재산제도와 비할 바가 아니다. 사유재산제도라는 것은 시대의 추이에 의해서는 합법적 수단으로써 변경될 수 있다. 이처럼 전자와 후자는 그 성질 등에 있어서 중대한 차이가 있으므로 양자를 구별하지 않고, 동일 조항으로 규정하는 것은 우리 국민정신상 결코 적당한 방법이 아니기 때문이다.

미수죄 : 본 죄의 미수는 별한다. (국체 변혁의 결사조직죄 참조)

* 주 : 사유재산제도 부인의 의의

사유재산제도의 전폐를 공산주의사회의 최고의 이념으로 하고 그 당면의 과정으로서 일본공산당이 논지 제11점에 상술했듯이 사사(社寺) 및 대지주의 토지 몫수를 주장하는 것은 결국 동법 제1조 제2항에 소위 사유재산제도를 부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 것에 해당한다. 일본공산당의 현실 당면의 소론 강령에 있어서의 주장은 동 법 제1조에 소위 국체를 변혁하고 사유재산제도를 부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것에 해당한다. (1931년 7월 9일 대심원 형사부 판결)

* 주 : 사유재산제도 부인을 목적으로 하는 것의 의의

현존의 사회제도에 결함이 있고, 유산계급이 무산계급을 압박, 착취하고 노동에 대한 임금을 정당하게 지급하지 않는 것에 기인하여 이를 방지할 수단으로서 생산기관을 공유의 것으로 귀속시키고, 분배는 사회의 손에 의해 노동의 가치에 상당해서 분배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런데 현재의 기본적 조직을 파괴하고 공산주의적 사회를 건설하기 위해서는 그 실현운동을 하는 기관으로서 정치행위를 가진 결사를 조직하는 것이 급무이므로, 우리는 공산주의자로서 전위분자로 신예술협회라는 위치에 서서 집산당이라는 결사를 조직한다. 그 당의 목적은 마르크스주의를 실현해서 우리나라에서 사유재산제도를 부인하고 산업기관을 공유로 귀속시켜서 공산주의적 사회를 건설하기 위함이라고 말하고, 또는 목적은 산업기관을 사회공유로 하거나 공산제도를 실현하는 것에 있다고 운운하는 것은 요컨대 사유재산제도를 근본적으로 파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 것으로, 즉 치안유지법 제1조 제1항의 사유재산제도를 부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다. (1929년 4월 30일 대심원 형사부 판결)

* 주 : 사유재산제도의 파괴와 부인

사유재산제도를 근본적으로 파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면 1925년 법률 제46호, 치안유지법 제1조 제1항에 소위 사유재산제도를 부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것에 해당한다. (1929년 4월 30일 대심원 형사부 판결)

제2. 가입죄

본 법 제1조 제2항은 사유재산제도의 변혁을 목적으로 하는 결사가입죄를 벌한다. 가입죄도 또한 국체의 변혁을 목적으로 하는 가입죄와 구성이 동일한 것으로 해서

1. 사원자격의 획득행위인 것
2. 결사의 지지행위인 것

의 두 가지 요소를 필요로 한다는 것은 두말할 것도 없다.

여기에서 사유재산제도의 부인을 목적으로 하는 가입죄에 대해 문제가 되는 것은

1. 사정을 알고 가입하는 것을 필요로 하는가

국체의 변혁을 목적으로 하는 결사가입죄에 있어서는 법문에 명확히 사정을 알고 가입한 자로 규정해도 사유재산제도의 부인을 목적으로 하는 결사가입죄에 대해서는 ‘사정을 알고’라고 법문에 명시되어 있지 않다. 그렇지만 본 죄 또 목적죄로 법문의 자구상 사유재산제도의 부인을 목적으로 결사에 가입한 것을 벌하므로, 국체 변혁의 경우처럼 ‘사정을 알고’라고 명확히 정하지 않아도 여기에서 말하는 가입이 지정(知情)가입이라는 것은 의심할 수 없다. 대개 국체 변혁의 경우의 결사가입에 ‘사정을 알고’라는 문자를 사용하고 사유재산제도 부인의 경우 지정 문구를 사용하지 않은 것은 본 법 제1조 제2항은 전단, 후단으로 나누고 행위의 여하에 따라 형벌을 2종으로 하고 후단의 규정은 법문 구성상 지정 문구를 기입하지 않는 경우는 사정을 알지 않는 자도 처벌되어 목적죄라는 것에 위배되는 모순이 발생하므로 ‘사정을 알고’라는 자구를 특별히 삽입시키는 것이다. 제2항과 같은 경우에는 지정 문구를 삽입하지 않아도 문의상 당연히 지정가입이라는 것이 명확하다.

2. 결사의 조직원, 기타 지도자의 임무에 종사한 자를 처벌하지 않는가

본 조 제2항에서는 결사의 조직원, 기타 지도자의 임무에 종사한 자를 처벌하는 규정을 결여한다.

생각전대 국체 변혁의 지도를 벌하는 경우는

① 스스로 결사를 조직하고 이것을 계속해서 지도한 경우(즉 조직시대부터 계속 가입해 있는 자)

② 타인이 이미 조직한 결사에 가입해서 지도한 경우(즉 사후에 가입을 한 것)

위의 ①, ②의 경우에 국체의 변혁을 목적으로 한 결사에 있어서는 독립의 죄로 무겁게 처벌해야 한다는 것을 명문화해야 하지만, 사유재산제도의 부인을 목적으로 한 경우에는 이를 방임하는 것이 아니라 독립죄를 적용하지 않고 단순히 가입죄로 처벌할 뿐이다. 그러므로 사유재산제도의 부인을 목적으로 한 결사의 조직원 또는 기타 지도자가 된 자는 가입죄로 취급한다.

미수죄는 이를 벌하지 않는다.

처벌 :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

제3. 목적수행 행위의 죄

제1조 제2항에 의하면 사유재산제도 부인의 목적수행 행위를 한 자를 벌한다. 미수도 국체 변혁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1. 결사에 가입해서 목적수행 행위를 한 경우

2. 결사에 가입하지 않고 목적수행 행위를 한 경우

로 성립한다. (국체 변혁 목적수행행위 참고)

(하략)

〈출전 : 中川利吉, 『朝鮮社會運動與締法要義』,
帝國地方行政學會 朝鮮本部 發行, 1932년, 1~36쪽〉

7) 개정 치안유지법안 해설(1935)

제1편 총설

1. 치안유지법 개정 법률 이유서

치안유지법은 법률의 보지(保持)에 대해서 실제의 필요에 적응하지 않는 바가 있어, 그 별칙을 정비함과 동시에 특별한 소송수속 및 보호관찰의 제도를 제정하기 위해 개정 할 필요가 있으며, 이것이 본 법안을 제출하는 이유이다.

2. 치안유지법 개정 이유

사법대신 오바라 나오시(小原直) 씨 설명

치안유지법 개정의 이유에 대해서 설명한다.

치안유지법 위반사건에 대해서는, 정부가 1928년 아래 열정을 갖고 검거를 속행했음에도 불구하고, 공산주의자의 운동은 실로 집요하고 몇 번인가의 검거에 의해 그 결사조직이 궤멸에 이르렀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 재건을 기획하고 있는 것이 있어서, 오늘에 이르러서는 여전히 초멸(剿滅)¹⁾할 수 없는 상황에 있는 것이 진실로 유감일 따름이다. 돌이켜 우리 국정을 생각컨대 지금이야말로 내외 실로 중대한 시국이고, 따라서 이 때 이러한 흉악한 사상운동을 근절하는 것은 현하(現下)의 급무라고 믿는다. 그런데 이 대책으로는 물론 교육 그 외의 방면에 있어서 새로운 설계계획을 필요로 하는 것이고, 단지 형벌만으로 근절을 기도하는 것은 자극히 어려운 일이지만, 진실로 국체를 변혁하고 노농계급의 독재정치를 기획하는 듯한, 흉악하기 짝이 없는 사상운동자가 잠행(潛行)적으로 활약하는 오늘날에는 우선 이것에 대해서 철저하게 탄압하고, 그들을 준동할 여지가 없도록 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 것이다. 그런데 현행 치안유지법은 그 시행이래의 실적에 비추어 보건대, 위와 같은 목적을 달성하는 데 규정에 미비한 점이 적지 않다고 생각한다. 특히 공산당의 소위 외곽단체의 단속에 대해서는 다대한 결함이 있는 것을 발견할 수 있다. 전에도 설명한 것처럼 공산주의자가 몇 번인가 당의 재건운

1) 나쁜 무리를 없앰.

동을 수행하는 데 이른 것도 오로지 이러한 외곽단체들이 존재하고 있고, 음으로 양으로 활약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정부는 이러한 자들에 대해서 특별한 단속규정을 제정할 필요를 인정하는 것이다. 다음에 치안유지법 위반사건은 조직적이고, 또한 대중적인 범죄이고 현행 형사소속법에 의한 수사소속이 예상하지 못한 범죄현상을 드러내고 있기 때문에, 그 검거를 하는 데에 수속상 특례를 제정할 필요를 인정하는 것이다. 따라서 개정안에서는 죄와 형을 정한 실체법의 규정 외에 수속법규를 첨가하게 되었다. 더욱이 범죄자의 실정에 비추어서 범죄의 예방을 온전히 하기 위해 보호관찰의 제도를 창설한 것이다.

더욱이 본 개정법의 주요한 사항에 대해서 간략하고 구체적으로 설명했다고 생각한다. 개정의 첫째는 국체 변혁을 목적으로 하는 범죄와 사유재산제도 부인을 목적으로 하는 범죄의 규정을 완전히 별조로 규정한 것, 둘째는 소위 외곽단체에 대한 처벌규정을 제정한 것, 셋째는 국체 변혁에 관한 선전행위를 처벌하는 규정을 제정한 것, 넷째는 본 법의 제3조, 제4조 및 제8조의 범죄에 한해서 이것은 국체의 변혁 및 사유재산제도 부인을 위한 결사죄이지만 이러한 죄에 대해서는 특별한 경우에 지방재판소 검사가 피해자에 대해 구인장·구류장을 발급할 수 있는 규정을 제정한 것이고, 다음에 본 법의 죄를 범한 피고사건의 제1심 공판의 심리에서 필요한 경우에는 관할을 이전할 수 있는 규정을 제정한 것이고, 다섯째는 검사가 불기소처분한 자 또는 형의 집행 등을 받고 석방된 자에 대해서 본인을 보호관찰로 두는 규정을 제정한 것 등이다.

3. 치안유지법 개정 법률의 내용

사법대신 오바라 나오시 씨 설명

치안유지법 개정 이유 및 그 내용에 대해 조금 상세하게 요점을 설명한다.

첫째는 개정법에서 국체를 변혁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범죄와 사유재산제도를 부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범죄의 규정을 완전히 별도로 규정하고 또 전자의 죄에서 금고를 삭제하였다. 즉 징역형만으로 한 것이다.

둘째는 개정안 제4조의 소위 외곽단체에 대한 규정을 제정한 것이다. 말할 것도 없이 각종의 외곽단체에 의한 공산주의자의 조직적 행동은 현행 치안유지법 실시 이후에 나타난 사상범죄의 새로운 양상이다. 이러한 외곽단체들은 오로지 일본공산당의 저수지라

는 임무에 종사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공산당에 대해 아무리 치명적으로 검거해도 이후 외곽단체에 의해 세력이 보급되어 공산당의 간생이 실현되고 있다. 또 한편 이러한 것이 공산주의 사상을 널리 침투·전파시키는 데 힘이 되는 것은 현저한 사실이다. 즉 공산운동에 대한 방퇴(防退)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공산당만을 단속 대상으로 해서는 도저히 불충분하다는 것이 명확해졌다. 이 점에 관해서 현행 치안유지법은 그 제1조 중에 ‘결사의 목적 수행을 위한 행위를 한 자’로 규정해서 결사의 외부에 있으면서 결사의 활동을 지원하는 자도 결사가입죄와 같은 처벌할 수 있는 길을 제정하고 있으므로 외곽단체원의 행동에 대해서도 역시 결사의 목적 수행을 위한 행위를 한 자로서 어느 정도까지의 처벌이 가능하다. 하지만 기타 외곽단체의 조직자 또는 조직원, 기타 지도자의 임무에 종사한 자에 대한 처벌로는 가벼운 것에 불과할 뿐만 아니라 규정 자체가 외곽단체를 직접 대상으로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유감스러운 점이 많았다. 외곽단체에 관한 처벌규정을 명문상 명확하게 한 것은 사상범죄를 막고 물리치기 위해서 절대로 필요하기 때문에 본 법에는 그 특별규정을 제정함과 동시에 국체 변혁을 목적으로 하는 결사의 예로 간주하여 지원결사의 조직자 및 그에 필적할 만한 주동자에 대해서는 무기형으로 처벌할 수 있는 길을 열었다.

셋째는 개정법 제5조 제2항의 선전에 관한 규정이다. 선전은 선동과 함께 결사행동에 있어서 빠지지 않는 방법으로서 중요한 의의를 지니지만 운용의 점을 생각해서 그 취지를 국체 변혁의 사상 선전으로 한정한 것이다. 원래 선전은 ‘일정한 사항을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설명하고, 또한 호소해서 그 이해와 공명을 구하려고 하는 행위’이므로 이러한 사상이 국민의 뇌리에 침투해서 마침내 국체관념을 침식시키는 데 도달하는 위험은 선동과 거의 차이가 없다. 그러므로 선전이라고 해도 진실로 국체 변혁의 목적을 갖고 그 목적이 되는 사항에 관하여 수행된다면 결사의 목적 수행을 위해 이루어진 경우는 물론 개개인의 행위라고 해도 처벌하는 규정을 제정한 것이다.

넷째는 제3장의 형사 수속에 관한 규정으로 2개의 사항을 포함하고 있다. 즉 수사상 검사에게 강제처분권을 인정하는 점과 관할 이전에 관한 규정이다. 본래 치안유지법의 피의(被疑) 사건에는 검거할 때마다 피의자는 상당수에 달하는 것이 보통이다. 더구나 그 다수는 서로 상하좌우의 조직적 관계를 갖고 있으므로 그 관계에 대해 취조한 후가 아니면 특정의 피의자가 어떠한 조직계통에 속하고, 어떠한 지위와 임무를 갖고, 더욱이 어떠한 경로에 의해, 또 어떠한 목적하에 그 범죄 활동을 하였는가를 알기 어려운 사정이다. 특히 범인 중에는 한패의 비밀을 염수하고, 다른 사람에게 누를 미치지 않으려는 것에 전념해서 수사선에 오른 자에 대해서 용이하게 진실을 고하지 않는다. 심한 경우

에는 검거 후 수십 일이 지나도 여전히 그 성명조차 공술하지 않는 자도 있다. 수사는 정말로 곤란하기 짝이 없고, 또 범인 중 조금 중요한 지위에 있는 자는 대개 광범위하게 활동하여 각지에 다수의 관계자가 산재하므로 단시일에 수사를 종료하는 것은 극히 곤란한 실정이다. 이처럼 치안유지법이 정한 결사의 범죄는 수사를 곤란하게 하거나 또한 장기간이 되게 하는 여러 사유를 구비할 뿐만 아니라, 일반 범죄와 달리 그 수사 중에 피의자의 신병을 구속하지 않을 때는 즉시 그 소재를 없애서 그 범죄 활동을 계속하는 것이 보통이다. 따라서 일단 검거한 이상은 종국처분을 할 때까지 그 신병을 구속해 두는 것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이다. 그런데 현행 형사소송법 하에서는 검사가 수사를 하는 데 강제의 처분을 필요로 할 때는 공소의 제기 전에 예심판사 또는 구재판소의 판사에 청구해서 겨우 10일의 기간을 한정해서 피의자를 구류할 수 있는 것에 불과하므로, 도저히 치안유지법이 정한 범죄에 대한 수사상의 필요에 응할 수 없다. 이에 본 법은 국체의 변혁을 목적으로 하는 결사 및 그 지원결사 및 사유재산제도의 부인을 목적으로 하는 결사에 관한 규정이 정한 죄에 해당하는 피의 사건에 대해서 수사상 필요한 경우에 또 판사의 영장을 요구할 수 없는 경우에 지방재판소의 검사에 대해서 일정한 조건 하에 피의자의 구인, 구류 및 신문을 할 수 있게 하고, 사상범죄의 특수성에 비추어 정말로 피치 못할 사정에서 나온 특별한 수사수속이다.

다음은 관할이전의 점이다. 본 법 위반 사건의 제1심 공판심리에 대해서는 그 죄가 실제로 무겁다. 특히 전문의 부가 제정된 재판소로 하여금 이를 심리하게 하고, 심리의 신속 또한 적절을 기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물론 간단한 사건에 대해서는 필요하지 않지만, 중요한 사건 사안에 대해서는 자주 그 필요를 통감한다. 본 법의 제21조는 이 취지에서 나온 관할이전에 관한 규정이다.

넷째는 제4장의 보호관찰제도에 관한 규정이다. 그 범인의 모든 것을 기소하거나 또는 기소한 범인의 모든 것에 중형을 부과하는 것만이 사상범죄 방퇴(防退)의 목적을 완수하는 방법이 아니다. 일시의 과오로 사상범죄로 빠지는 자가 있고, 또 진실로 개과천선의 가능성 있는 자에 대해서는 잠시 그 처분을 유예해서 간생의 여지를 주는 것이 형사정책의 입장에서 보아도 또한 범인의 장래에 대한 방면에서 보아도 적절한 처분이다. 기소유예도 형의 집행유예도 항상 이러한 견지에서 수행되는 처분이다. 그러나 장래의 실적에 비춘다면 일단 기소유예 또는 형의 집행유예의 처분으로 해도 그 유예기간 중 수시로 이러한 자들의 신상의 상황을 조사하고 적절한 보호를 하지 않으면, 개전(改悛) 상태를 지속하는 것이 곤란하여 마침내 다시 죄를 범하는 것에 이른 사례가 적지 않다. 본인에게 그 개전상태를 지속시키기 위해서는 어떻든 검사의 보좌기관으로서 활동

하는 직원을 필요로 한다. 그런데 현재 제도로는 이러한 보좌기관들이 거의 결여해 있기 때문에 번잡한 직무에 종사하는 검사는 그 방면에 몹시 바쁜 실정이다. 현행제도에도 소년법에는 범죄소년에 대해서 보호사제도가 인정되어 있지만, 사상법에 대해서는 한층 강한 취지를 갖고 신속히 보호관찰제도를 확립하는 것이 필요하다. 본 법에서는 치안유지법의 죄를 범한 자에 대해서 검사가 공소를 제기하지 않은 경우, 형의 집행유예의 언도가 있는 경우, 또는 형의 집행을 마치거나 혹은 가석방을 허락받은 경우에 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본인을 보호관찰로 하고 그 재범 방지에 대해서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게 한 것이다.

이상 서술한 바가 개정의 주요한 점이지만, 대체의 취지에서 현행 치안유지법 중 국체변혁에 관한 죄에 대해서 특히 그 단속을 철저히 하는 것에 중점을 두고, 사유재산제도의 부인에 관한 처벌규정에 대해서는 현행법을 답습하는 것이다. 그 외의 여러 규정은 현재의 실정에 비추어서 사상범죄의 예방 및 진압의 작용을 한층 효과적으로 하기 위한 것에 다름 아니다.

(하략)

〈출전 : 改正治安維持法案解說, 政府 解說 編輯, 深谷成司 編纂,
『改正治安維持法案 · 現行治安維持法解說』, 1935년 7월, 1~9쪽〉

8) 조선 · 대만에서 공산운동자 검거 수가 최근 격증한 이유

조선에서 1931, 1932년경부터 치안유지법 위반 사건의 검거수가 격증한 원인을 설명한다. 종래 이 조선의 공산당은 아주 분파투쟁이 왕성해서 서로 항쟁을 일삼고 있었던 것이다. 1928년 12월 및 1930년 9월의 ‘테제’에서는 그 제휴를 끊고 노동자, 농민에 기초를 두고 소위 대중적인 적화공작을 수행하도록 한 것이다. 이 때문에 공산운동에 하나의 신경향을 주는 것이고, 그 취지는 대체로 일본에서의 경향과 같다. 이 시기부터 외곽운동이 아주 커짐에 따라 적색노동조합 혹은 적색농민조합 등의 운동이 왕성하게 이루어졌다. 반제(反帝) · 반전 운동의 조직이 서서히 결성되었고, ‘프롤레타리아’ 문화운동 등이 점차 확대됨에 따라 그와 관련하여 1931, 1932년에 걸쳐 검거수가 아주 많아지고 있다.

이후 만주사변의 영향 혹은 농촌진흥운동 등 농민의 지도방책을 채용해서 상당한 효과가 일어난 관계상, 1933년도에는 약간 이런 종류의 사상운동이 줄어드는 경향이 있다.

만주에서도 이러한 경향은 조선과 대체로 같다. 최근 외곽운동이 아주 왕성해진 결과 검거수가 늘고 있지만, 만주사변 이후 일본의 국제적 지위가 매우 견고하다는 사실이 점차 국민 사이에 알려져, 1933년에는 오히려 줄어들고 있다. (정부 설명)

〈출전 : (附設朝鮮·臺灣二於ケル共産運動者檢舉數ノ最近激増シタル所以 政府 解說 編輯
深谷成司 編纂, 『改正治安維持法案·現行治安維持法解說』, 1935년 7월, 26쪽〉

9) 치안유지법 개정(1941)

개정 1941년 3월 8일, 법률 제54호

제1장 죄

제1조 국체를 변혁할 목적으로 결사를 조직한 자, 또는 결사의 조직원, 기타 지도자의 임무에 종사한 자는 사형 또는 무기 혹은 7년 이상의 징역, 혹은 금고에 처한다. 사정을 알고 결사에 가입한 자, 또는 결사의 목적 수행을 위한 행위를 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제2조 전 조의 결사를 지원할 것을 목적으로 결사를 조직한 자 또는 결사의 조직원, 기타 지도자의 임무에 종사한 자는 사형 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사정을 알고 결사에 가입한 자, 또는 결사의 목적 수행을 위한 행위를 한 자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제3조 제1조의 결사의 조직을 준비할 목적으로 결사를 조직한 자 또는 결사의 조직원, 기타 지도자의 임무에 종사한 자는 사형 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사정을 알고 결사에 가입한 자, 또는 결사의 목적 수행을 위한 행위를 한 자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제4조 전 3조의 목적으로서 집단을 결성한 자 또는 집단을 지도한 자는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전 3조의 목적으로서 집단에 참가한 자 또는 집단에 관여하여 전 3조의 목적 수행을 위한 행위를 한 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 제5조 제1조 내지 제3조의 목적으로 그 목적인 사항의 실행에 관여하여 협의 또는 선동하거나 또는 그 목적인 사항을 선전하고 기타 그 목적 수행을 위한 행위를 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 제6조 제1조 내지 제3조의 목적으로 소요·폭행, 기타 생명·신체 또는 재산에 해를 가할 만한 범죄를 선동한 자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 제7조 국체를 부정하거나 또는 신궁(神宮) 또는 황실의 존엄을 모독할 만한 사항을 유포할 목적으로 결사를 조직한 자 또는 결사의 조직원, 기타 지도자의 임무에 종사한 자는 무기 또는 4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사정을 알고 결사에 가입한 자, 또는 결사의 목적 수행을 위한 행위를 한 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 제8조 전 조의 목적으로서 집단을 결성한 자 또는 집단을 지도한 자는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전 조의 목적으로서 집단에 참가한 자 또는 집단에 관여하여 전 조의 목적 수행을 위한 행위를 한 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 제9조 전 8조의 죄를 범하게 할 것을 목적으로 신청 또는 약속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사정을 알고 공여를 받거나 그 요구 또는 약속을 한 자 역시 같다.
- 제10조 사유재산제도의 부인을 목적으로 결사를 조직한 자, 또는 사정을 알고 결사에 가입한 자, 또는 결사의 목적 수행을 위한 행위를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에 처한다.
- 제11조 전 조의 목적으로서 그 목적인 사항의 실행에 관여하여 협의를 하거나 또는 그 목적인 사항의 실행을 선동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에 처한다.
- 제12조 제10조의 목적으로 소요·폭행, 기타 생명·신체 또는 재산에 해를 가할 만한 범죄를 선동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에 처한다.
- 제13조 전 3조의 죄를 범할 것을 목적으로 금품, 기타 재산상의 이익을 공여하거나 또는 그 신청 또는 약속을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에 처한다. 사정을 알고 공여를 받거나 또는 약속을 한 자 역시 같다.
- 제14조 제1조 내지 제4조, 제7조, 제8조 및 제10조의 미수죄는 별한다.
- 제15조 본 장의 죄를 범한 자가 자수했을 때는 그 죄를 감경 또는 면제한다.
- 제16조 본 장의 규정은 누구든지 이 법의 시행구역 외에서 죄를 범한 자에게도 역시 적용한다.

제2장 형사수속

- 제17조 본 장의 규정은 제1장에 언급한 사건에 대해서 적용한다.

- 제18조 검사는 피의자를 소환하거나 또는 그 소환을 사법경찰관에게 명령할 수 있다.
검사의 명령에 의해 사법경찰관이 발행한 소환장에는 명령한 검사의 직위, 씨
명 및 그 명령에 의해 발행한다는 취지를 기재해야 한다.
소환장의 송달에 관여한 재판소 서기 및 집달리(執達吏)에 속하는 직무는 사법
경찰 관리가 행할 수 있다.
- 제19조 피의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전 조의 규정에 의한 소환에 응하지 않거나 또는
형사소송법 제87조 제1항 각호에 규정하는 사유가 있을 때는 검사는 피의자를
구인하거나 또는 그 구인을 다른 검사에게 위탁 또는 사법경찰관에게 명령할
수 있다.
전 조 제2항의 규정은 검사의 명령에 의해 사법경찰관이 발행하는 구인장으로
준용(準用)한다.
- 제20조 구인한 피의자는 지정된 장소에 인치(引致)되었을 때부터 48시간 내에 검사 또
는 사법경찰관이 신문해야 한다. 그 시간 내에 구류장(拘留狀)이 발급되지 않았
을 때에는 검사는 피의자를 석방하거나 또는 사법경찰관으로 하여금 석방시키
도록 해야 한다.
- 제21조 형사소송법 제87조 제1항 각호에 규정된 사유가 있을 때는 검사는 피의자를 구
류하거나 또는 그 구류를 사법경찰관에게 명령할 수 있다.
- 제18조 제2항의 규정은 검사의 명령에 의해 사법경찰관이 발급하는 구류장으
로 준용한다.
- 제22조 구류에 대해서는 경찰관서 또는 현병대의 구류장(拘留場)으로 대용할 수 있다.
- 제23조 구류의 기간은 2개월로 한다. 특히 계속할 필요가 있을 때는 지방재판소 검사 또
는 구(區)재판소 검사는 검사장의 허가를 받고 1개월마다 구류의 기간을 갱신
할 수 있다. 단, 계속해서 1년을 초과할 수 없다.
- 제24조 구류의 사유가 소멸하고 기타 구류를 계속할 필요가 없다고 사료(思料)될 때는
검사는 시급히 피의자를 석방하거나 또는 사법경찰관으로 하여금 석방하게 해
야 한다.
- 제25조 검사는 피의자의 주거를 제한하고 구류의 집행을 정지할 수 있다.
형사소송법 제119호 제1항에 규정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검사는 구류의 집행
정지를 취소할 수 있다.
- 제26조 검사는 피의자를 신문하거나 또는 그 신문을 사법경찰관에게 명령할 수 있다.
검사는 공소제기 전에 한해 증인을 신문하거나 또는 그 신문을 다른 검사에게

위탁하거나 또는 사법경찰관에게 명령할 수 있다.

사법경찰관이 검사의 명령에 의해 피의자 또는 증인을 신문할 때는 명령을 한 검사의 직위, 씨명 및 그 명령에 의해 신문한다는 취지를 신문서류에 기재해야 한다.

제18조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은 증인신문에 대해서 준용한다.

제27조 검사는 공소제기 전에 한해 압수, 수색 또는 검증을 하거나 또는 그 처분을 다른 검사에게 위탁하거나 사법경찰관에게 명령할 수 있다.

검사는 공소제기 전에 한해 감정, 통역 또는 번역을 명령하거나 또는 그 처분을 다른 검사에게 위탁하거나 사법경찰관에게 명령할 수 있다.

전 조 제3항의 규정은 압수, 수색 또는 검증의 조서 및 감정인, 통사(通事) 또는 번역인의 신문조서로 준용한다.

제18조 제2항 및 3항의 규정은 감정, 통역 및 번역으로 준용한다.

제28조 형사소송법 중 피고인의 소환, 구인 및 구류, 피고인 및 증인의 신문, 압수, 수색, 검증, 감정, 통역 및 번역에 관한 규정은 별단(別段)의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피의사건에 대해서 준용한다. 단, 보석 및 책부(責付)에 관한 규정은 여기에 한정되지 않는다.

제29조 변호인은 사법대신이 미리 지정한 변호인 변호사 중에서 선임해야 한다. 단, 형사소송법 제40조 제2항의 규정을 방해하지 않는다.

제30조 변호인의 수는 피고인 1인에 대해서 2인을 초과할 수 없다.

변호인의 선임은 최초에 정한 공판기일에 관련된 소환장의 송달을 받은 날부터 10일을 경과했을 때는 할 수 없다. 단 피치 못할 사유가 있는 경우 재판소의 허가를 받았을 때는 여기에 한하지 않는다.

제31조 변호인은 소송에 관한 서류의 등사(贍寫)를 하려고 할 때는 재판장 또는 예심판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32조 피의사건 공판에 관련된 경우 검사(檢事)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할 이전의 청구를 할 수 있다. 단 제1회 공판기일의 지정이 있은 후에는 여기에 해당되지 않는다.

전 항의 요구는 사건의 계속(繫屬) 재판소 및 이전하는 곳의 재판소에 공통하는 가까운 상급재판소에서 해야 한다.

제1항의 요구가 있을 때는 결정이 있을 때까지 소송수속을 정지해야 한다.

제33조 제1장에 언급한 죄를 범했다고 인정되는 제1심의 판결에 대해서는 공소를 할

수 없다.

전 항에 규정하는 제1심의 판결에 대해서는 직접 상고할 수 있다.

상고는 형사소송법의 제2심의 판결에 대해서 상고할 만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 할 수 있다.

상고재판소는 제2심의 판결에 대한 상고사건에 관한 수속에 의해 재판해야 한다.

제34조 제1장에 언급한 죄를 범했다고 인정되는 제1심의 판결에 대해서 상고가 있을 경우에는 상급재판소가 동장(同章)에서 언급한 죄를 범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의심하기에 충분한 현저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판결로써 원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관할 공소 재판소에 이전해야 한다.

제35조 상고재판소는 공판기일의 통지에 대해서는 형사소송법 제422조 제1항의 기간에 의하지 않을 수 있다.

제36조 형사수속에 대해서는 별단의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일반 규정을 적용한다.

제37조 본 장의 규정은 제22조, 제23조, 제29조, 제30조 제1항, 제32조, 제33조 및 제34조의 규정을 제외하고 군법회의의 형사수속으로 이를 적용한다. 이 경우 형사소송법 제87조 제1항은 육군군법회의법 제143조 또는 해군군법회의법 제143조, 형사소송법 제122조 제1항은 육군군법회의법 제444조 제1항 또는 해군군법회의법 제446조 제1항으로 하고, 제25조 제2항 중 형사소송법 제119조 제1항 규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어느 때라도 가능하다.

제38조 조선에서는 본장 중 사법대신에는 조선총독, 검사장에는 복심법원검사장, 지방재판소 검사장 또는 구재판소 검사에는 지방법원검사, 형사소송법에는 조선형사령에서 정한 형사소송법으로 한다. 단, 형사소송법 제422조 제1항에는 조선형사령 제31조로 한다.

제3장 예방구금(豫防拘禁)

제39조 제1조에서 언급한 죄를 범한 형에 처해진 자가 그 집행을 마치고 석방될 경우, 석방 후 다시 동장에 언급한 죄를 범할 우려가 현저할 때는 재판소는 검사의 청구에 의해 본인을 예방구금에 처한다는 취지를 명할 수 있다.

제1장에 언급한 죄를 범한 형에 처해서 그 집행을 마친 자 또는 형의 집행유예의 연도를 받은 자, 사상범보호관찰법에 의해 보호관금(保護觀禁)에 처해져 있는 경우에 보호관찰에 의해서도 동장에 언급한 죄를 범할 위험을 방지하기 곤

란하고, 더욱이 이를 범할 우려가 현저할 때 역시 전 항과 같다.

제40조 예방구금의 청구는 본인의 현재지를 관할하는 지방재판소의 검사 그 재판소에서 해야 한다.

전 항의 청구는 보호관찰에 처해지고 있는 자에 관련될 때는 그 보호관찰을 하는 보호관찰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재판소의 검사가 그 재판소에서 청구 할 수 있다.

예방구금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미리 예방구금위원회의 의견을 구할 필요가 있다. 예방구금위원회에 관련된 규정은 칙령으로 정한다.

제41조 검사는 예방구금을 청구하는 데 필요한 취조를 하거나 또는 공무소(公務所)에 조회해서 필요한 사항의 보고를 청구할 수 있다.

전 항의 취조를 하는 데 필요한 경우에는 사법경찰 관리가 본인을 동행시킬 수 있다.

제42조 검사는 본인이 일정한 주거를 갖지 않는 경우 또는 도망하거나 또는 도망할 우려가 있는 경우 예방구금의 청구를 하는 데 필요할 때는 본인을 예방구금소에 임시로 수용할 수 있다. 단, 어쩔 수 없는 사유가 있을 때는 감옥에 임시로 수용 할 수 있다.

전 항의 가(假)수용은 본인의 진술을 들은 후가 아니라면 할 수 없다. 단, 본인 이 진술을 거부하거나 또는 도망한 경우는 여기에 한하지 않는다.

제43조 전 조의 가수용의 기간은 10일로 한다. 그 기간 내에 예방구금을 청구하지 않았 을 때에는 신속히 본인을 석방해야 한다.

제44조 예방구금의 청구가 있을 때는 재판소는 본인의 진술을 듣고 결정해야 한다. 이 경우 재판소는 본인에 출두를 명할 수 있다.

본인이 진술을 거부하거나 또는 도망했을 때는 진술을 듣지 않고 결정할 수 있다. 형의 집행 종료 전 예방구금의 청구가 있을 때는 재판소는 형의 집행 정지 이후에도 예방 구금한다는 취지를 결정할 수 있다.

제45조 재판소는 사실의 취조를 하는 데 필요한 경우에는 참고인에게 출두를 명해 사 실을 진술 또는 감정할 수 있다.

재판소는 공무소에 조회해서 필요한 사항의 보고를 요구할 수 있다.

제46조 검사는 재판소가 본인에게 진술하거나 또는 참고인에게 사실을 진술 또는 감정 하는 경우 입회해서 의견을 개진할 수 있다.

제47조 본인이 속한 집의 호주, 배우자 또는 4촌 이내의 혈족 또는 3촌 이내의 혼인은

재판소의 허가를 받아야 보좌인이 될 수 있다.

보좌인은 재판소가 본인에게 진술하거나 혹은 참고인에게 사실의 진술 혹은 감정을 하게 한 경우에 입회해서 의견을 진술하거나 또는 참고가 될 만한 자료를 제출할 수 있다.

제48조 아래의 경우 재판소는 본인을 구인할 수 있다.

1. 본인이 일정한 주거를 가지지 않았을 때
2. 본인이 도망했을 때 또는 도주할 우려가 있을 때
3. 본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제44조 제1항의 출두명령에 응하지 않을 때

제49조 전 조 제1호 또는 제2호에 규정한 사유가 있을 때는 재판소는 본인을 예방구금 소에 임시로 수용할 수 있다. 단, 피치 못할 사유가 있을 때는 감옥에 임시로 수용할 수 있다.

본인이 감옥에 있을 때는 전 항의 사유가 없다고 해도 임시로 수용할 수 있다.

제42조 제2항의 규정은 제1항의 경우에 따라서 준용한다.

제50조 별단의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 형사소송법 중 구인에 속하는 규정은 제48 조의 구인에, 구류에 속하는 규정은 제42조 및 전 조의 가수용에 의해서 준용한다. 단, 보석 및 책부(責付)에 관한 규정은 여기에 한정되지 않는다.

제51조 예방구금에 의하지 않는다는 뜻의 결정에 대해서 검사는 즉시 항고할 수 있다.

예방구금에 의한다는 뜻의 결정에 대해서 본인 및 보좌인은 즉시 항고할 수 있다.

제52조 별단의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 형사소송법 중 결정에 속하는 규정은 제44조의 결정에, 즉 즉시항고에 속하는 규정은 전 조의 즉시항고에 의해서 준용한다.

제53조 예방구금에 처해진 자는 예방구금소에 수용하고 개전(改悛)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제54조 예방구금에 처해진 자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타인과 접견하고 신서(信書), 기타 물건의 수수를 할 수 있다.

예방구금에 처해진 자는 신서, 그 외의 물건의 검열, 차압 혹은 몰수를 하거나 또는 보안 혹은 징계를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임시로 수용된 자 및 본장의 규정에 의해 구인장의 집행을 받고 유치(留置)된 자에 대해서도 또한 같다.

제55조 예방구금의 기간은 2년으로 한다. 특별히 계속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재판소가 결정해서 갱신할 수 있다.

예방구금의 기간만료 전 갱신의 청구가 있을 때는 재판소는 기간만료 후라고 갱신을 결정할 수 있다.

갱신의 결정은 예방구금의 기간만료 후 확정되어도 기간만료의 때에 확정한 것으로 간주한다.

제40조, 제41조 및 제44조 내지 제52조의 규정은 갱신의 경우에 대해서 준용한다. 이 경우 제49조 제2항 중 감옥으로 되어 있는 것은 예방구금소로 한다.

제56조 예방구금의 기간은 결정 확정의 날에서 기산(起算)한다.

구금하지 않은 일수(日數) 또는 형 집행을 위해 구금된 일수는 결정 확정 후라고 해도 전 항의 기간에 산입(算入)하지 않는다.

제57조 결정 확정의 때 본인이 수형자가 되었을 때는 예방구금은 형 집행 종료 후 집행한다.

감옥에 있는 본인에 대해서 예방구금을 집행하려고 하는 경우에 이송의 준비, 그 외 사유 때문에 특별히 필요한 때는 일시구금을 계속할 수 있다.

예방구금의 집행은 본인에 대한 범죄의 수사, 그 외의 사유 때문에 특별히 필요한 때는 결정을 한 재판소의 검사 또는 본인의 현재지를 관할하는 지방재판소의 검사의 지휘에 의해 정지할 수 있다.

형사소송법 제534조 내지 제536조 및 544조 내지 552조의 규정은 예방구금의 집행에 대해서 준용한다.

제58조 예방구금에 처해진 자가 수용 후 그 필요가 없어졌을 때에는 제55조에 규정한 기간만료 전이라고 해도 집행관청의 처분으로 퇴소할 수 있다.

제40조 제3항의 규정은 전 항의 규정에 대해서 준용한다.

제59조 예방구금의 집행을 하지 않은 것이 2년이 되었을 때는 결정을 한 재판소의 검사 또는 본인의 현재지를 관할하는 지방재판소의 검사는 사정에 따라 그 집행을 면제할 수 있다.

제40조 제3항의 규정은 전 항의 규정에 대해서 준용한다.

제60조 천재지변의 때에 예방구금소 안에 피난의 수단이 없다고 인정될 때는 수용된 자를 다른 곳으로 호송해야 한다. 만약 호송할 시간이 없을 때는 일시 해방할 수 있다.

해방된 자는 해방 후 24시간 내에 예방구금소 또는 경찰관서에 출두해야 한다.

제61조 본 장의 규정에 의해 예방구금소 혹은 감옥에 수용된 자 또는 구인장 혹은 체포장의 집행을 받은 자가 도주했을 때는 1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전 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해 해방된 자와 마찬가지로 제2항의 규정에 위배했을 때는 역시 전 항과 같다.

제62조 수용설비 혹은 기구를 손괴(損壞)하고, 폭행 혹은 협박을 하거나 또는 2년 이상

통모해서 전 조 제1항의 죄를 범한 자는 3개월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제63조 전 2조의 미수죄는 별한다.

제64조 본 법에 규정한 자 외 예방구금에 관련해서 필요한 사항은 명령으로써 정한다.

제65조 조선에 있어서는 예방구금에 관련하여 지방재판소가 행할 결정은 지방법원의 합의부(合議部)에서 처리한다.

조선에 있어서는 본 장 중 지방재판소의 검사에는 지방법원의 검사, 사상범보호관찰법에는 조선사상범보호관찰령, 형사소송법에는 조선형사령으로 하는 것을 정한 형사소송법으로 한다.

부칙

본 법 시행의 날짜는 칙령으로 정한다.

제1장의 개정 규정은 본 법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서 정한 죄를 범한 자 역시 적용한다. 단, 개정 규정에 정한 형이 종전에 정한 형보다 무거울 때는 종전의 규정에 정한 형에 의해 처단한다.

제2장의 개정 규정은 본 법 시행 전 공소를 제기한 사건에 대해서는 준용하지 않는다.

제3장의 개정 규정은 종전의 규정에서 정한 죄에 대해서 본 법 시행 전에 형에 처해진 자에게도 역시 적용한다.

본 법 시행 전 조선형사령 제12조 내지 제15조의 규정에 의해 이루어진 수사 수속은 본 법 시행 후라도 여전히 그 효력을 가진다.

전 항의 수사 수속에서 본 법에 상당하는 규정이 있는 것은 본 법에 의해 이루어진 것으로 간주한다.

본 법 시행 전 조선사상범예방구금령에 의해 이루어진 예방구금에 관한 수속은 본 법 시행 후에도 여전히 그 효력을 가진다.

전 항의 예방구금에 관한 수속에서 본 법에 상당하는 규정이 있는 것은 본 법에 의해 이루어진 것으로 간주한다.

〈출전 : 『朝鮮總督府官報』, 1941년 5월 1일〉

10) 재판소 및 검사국 감독관회의, 미나미 총독 훈시

1941년도 재판소 및 검사국 감독관회의(監督官會議)에서 미나미(南) 총독이 다음과 같이 훈시하다.

오늘 이에 각위(各位)를 회동하고 친히 중대시국하의 사법의 기무(機務)에 관하여 소회를 연설하고 아울러 소관사무의 상황을 청취할 기회를 얻게 된 것은 본직(本職)이 실로 훈쾌하게 여기는 바이다.

1. 중대시국하 사법관의 각오에 대하여

지금 시국은 더욱 중대하여 만주사변의 처리, 대동아공영권의 확립은 세계 신질서의 건설과 불가분적 관련을 가지게 되어 우리 제국의 국제적 지위와 사명은 더 한층 중대함을 가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중대시국을 맞이하여 제국이 대동아공영권 확립의 대사명을 완수함에는 1억 국민 일심이 되어 견인지구(堅忍持久)의 각오와 확호불발(確乎不拔)한 신념을 가지고 신도실천(臣道實踐)의 완벽을 기하여 직역봉공(職域奉公)의 성(誠)을 다하여 변전무극(變轉無極)한 국제정세에 대처하여 미동조차 하지 않는 고도국방국가체제(高度國防國家體制)를 확립하지 않으면 아니된다. 이리하여 사법의 사명인 치안의 확보와 사회생활의 질서의 유지와는 고도국방국가체제 확립의 근체(根蒂)가 되는 것이므로 사법권 운용의 임무에 있는 각위는 깊이 이 점을 생각하여 솔선수범하여 부하 직원을 이끌고 직책의 완수에 멸사봉공(滅私奉公)의 적성을 다하여 국가 부탁의 중책에 응답하기를 바라마지 않는 바이다.

2. 사상대책에 대하여

강내(疆內) 사상의 대세는 사변 발발이래 내선일체의 심화철저에 따라 반도 동포의 황국신민으로서의 자각 양양에 인하여 현저하게 호전되고 있으나, 최근의 정세를 자세히 관찰할 때에는 지금도 민중의 반국가적 사상에 기한 준동을 하는 자가 없지도 않아 낙관(樂觀)을 불허하는 바 있다.

그런 고로 각위는 현재의 정세와 민심의 경향에 세심 주도한 주의를 하여 반국가적 사상범죄를 철저하게 박멸하여 사상통일의 만전을 기하고 고도국방국가체제의 근기(根基)로 총후단결(銃後團結)의 철벽을 확보하는 데 전력을 경주하기 바란다.

지난번 제정 공포된 개정치안유지법은 최근의 사상운동 정세에 대응하여 벌칙을 정비 강화한 외에 한사람이라도 단속의 범위에 벗어나는 자가 없도록 주도(周到)한 규정을 두 어 적어도 우리 국체에 배반하는 불령(不逞)한 행동은 철저하게 이를 규탄 제거하려고 하는 취지에서 나온 것이다. 그리고 동법에서 사상범인에 대한 예방구금제도(豫防拘禁制度)를 창정(創定)하고 있는데 조선에서는 이에 앞서 금년 2월 조선사상범예방구금령(朝鮮思想犯豫防拘禁令)을 제정 공포하여 이미 3월 10일부터 실시하고 있는 터로서 그 취지로 하는 바는 현재 국제정세의 긴박화에 따라 반도사상정세의 추이에 대처하기 위하여 사상범보호관찰제도의 운용과 아울러 반국가적 사상의 정화 숙정의 철저 완벽을 기하여 반도사상 통일의 달성을 나아가서는 고도국방국가체제의 확립에 기여하려 하는 바이다. 각위는 잘 이들 중요법령의 근본정신을 파악하여 그 운용에 조금도 과오가 없기를 기하여 주기 바란다.

3. 방첩대책에 대하여

세계동란의 심각화에 따라 열국의 첩보 선전 모략 등의 모든 활동은 더욱 더 치열해 져 이 진공(進攻)에 전 지능을 열중하고 있는 실정이다. 즉 각국이 모두 평시부터 방대하고 정치(精緻)한 조직체를 가지고 혹은 합법수단을 이용하고 혹은 비합법 방책을 통하여 외국의 군사·외교·정치·경제·기타 각 부문에 걸친 중요기밀을 탐지·수집하여 그 나라의 총력을 측정하여 일단 사태가 벌어질 때에는 선전에 모략에 필사의 암약을 다하여 드디어 상대국으로 하여금 혹은 사상적 붕괴에 유도하고 혹은 경제적 파멸에 이르게 하여 거의 무력을 쓰지 않고서 상대국을 강복시킨 사례도 보는 바이다. 따라서 현재와 같은 전시체제 하에 있는 우리 제국에 대해서도 적성(敵性) 제국이 각종의 모략을 써서 첩보에 선전에 광분하고 있는 것은 당연하게 상상된다.

지난번 제정 공포된 국방보안법(國防保安法)은 즉 이러한 국제정세에 대처하여 군기보호법(軍機保護法) 기타의 방첩 관계 모든 법령의 운용과 함께 이러한 비밀전의 전전을 파괴하고 방첩국방의 완벽을 기할 것을 목적으로 한 것이다. 각위는 이들 입법의 주지를 익혀 그 운용에 대하여 주도한 연찬(研鑽)을 따르고 깊은 고려를 하여 사범(事犯)이 있을 때는 그 검거 심판의 민속 적정을 얻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 만일의 유산(遺算)이 없기를 기한다.

4. 치안의 확보에 대하여

현재 미증유(未曾有)의 난국을 극복하여 대동아공영권 확립의 대사명을 완수하기 위해서는 국가총동원체제(國家總動員體制)의 철저한 강화를 도모하여 어느 때 어떠한 사태의 변화에 직면할지라도 신속하고 또 적절한 조치를 강구할 주도(周到)한 용의(用意)를 갖추어 국가총력의 발휘에 유감없기를 기하는 동시에 국민경제의 운행을 확립할 것은 실로 긴요한 바이다. 이에 총후국민의 일치결속을 문란케 하고 경제계를 교란하여 국책 수행을 조해(阻害)함과 같은 사범(事犯)의 근절을 도모하여 국내 민심의 안정과 경제통제의 원활한 운영을 확보하지 않으면 안 된다. 지난번 형법과 국가총동원법에 개정을 가하여 인심을 흐란하거나 또는 경제상의 혼란을 유발함과 같은 허위의 사실을 유포하는 자에 대한 형벌규정을 두어 기타 폭리 행위의 단속규정을 무겁게 하여 경제사범에 대한 벌칙을 강화하게 된 것도 이상의 요청에 기하는 것이다. 그러나 만주사변 발발 이래 점차 확대 강화된 경제통제는 내외 여러 정세의 변화에 따라 금후 일층 더 심화되어 국민의 일상생활은 더욱 부자유하게 될 것을 예상하지 않으면 아니되는 고로 이 틈을 타서 인심을 흐란하거나 혹은 경제계의 교란을 책모함과 같은 비국민적 태도에 나오는 자가 없다고 보장하기 어렵다. 각위는 깊이 이 점에 유의하여 부하직원으로 하여금 늘 민심의 동향과 경제정세의 추이를 상세히 사찰시키는 동시에 사범의 검거 심판에 있어서도 잘 그 대소경중을 판별하여 처리의 신속, 적정을 기하여 현재内外의 정세에 대처할 것을 바라는 바이다.

5. 조정(調停)제도에 대하여

조정제도는 사법제도상의 혁명적 제도인 바 근래 제소(提訴)의 전제요건으로서 먼저 조정의 신청을 하라는 설이 지배적으로 대두되게 되었다. 생각컨대 국민의 법적 생활의 최종의 보장은 참으로 헌법상 법률에 준거할 재판소의 재판에 의하여 이를 주어지는 것이라는 것은 도저히 부정할 수 없는 바이다. 그러나 소송제도가 불가피하게 내포하는 간극도 또한 부정할 수 없는 바이므로 이 간극을 보전한 조정제도가 국민의 법적 생활의 보장에 중대한 역할을 하는 것은 명료한 사실이다.

조선에서는 지난번 조선소작조정령(朝鮮小作調停令), 조선인사조정령(朝鮮人事調停令)을 시행하고 다시 지난 1월부터 조선차지차가조정령(朝鮮借地借家調停令)을 시행한 것인데 조정제도의 효용에 비춰 볼 때에는 장래 조정제도의 분화·확대가 필연적으로 요청되는 바로서 현행 조정제도는 실로 그 시금석(試金石)인 고로 각위는 그 적절·타당

한 운행에 의하여 그 육성에 노력하는 동시에 인민으로 하여금 이를 익히고 익숙하게 하기 위하여 특별한 배려와 노력을 해주기를 바라는 바이다.

6. 관기진숙(官紀振肅)에 대하여

관공리의 청렴결백을 확보하고 직무집행의 적정을 도모하여 관기의 진숙을 기할 필요가 있는 것은 지금 새롭게 언급함이 불요(不要)하는 바이다. 특히 만주사변 발발 이래 경제통제의 실시에 따라 각종의 중요정책으로서 국가의 통제를 필요로 하는 것이 극히 많은 경제 사무에 종사하는 관공리의 공정한 처치는 특히 강하게 요청되는 것이다. 형법을 개정하여 증수뢰(贈收賂) 처벌의 범위를 확대하고 또 형의 강화를 도모하고 혹은 국가총동원법에 있어서 통제단체의 역원·직원의 증수회에 관한 규정을 신설한 것도 관기의 진숙, 통제사무의 공정을 기하려고 하는 데에서 벗어나지 않는다. 각위는 제대로 개정법령의 취지를 익히고 이러한 사법의 발생에 있어서는 사정없이 이를 규탄하여 관기의 진숙, 통제의 실효 확보에 더욱 힘써서 고도국방국가체제의 확립에 기여하기를 바라는 바이다.

〈출전 : 司法監督官會議 今日 本府에서 開催 『毎日新報』, 1941년 5월 3일〉

2. 관련 기사

1) 독립과 적색(赤色) 기사는 학설이라도 단속할 수 있다.

- 검사장과 본사 기자 문답

이에 대하여 고등법원 나카무라(中村) 검사장을 방문하였다.

기자 “이제부터 계속해서 사법권의 활동으로 언론계를 압박할 것인가?”

검사장 “이번 일을 일반은 지금 별안간 벌어진 일같이 아는 모양이나 실상은 올봄 이래로 이미 정한 방침을 실행한 일례라. 내가 사법관회의와 경찰부장회의에서 이미 언명한 바라.”

기자 “그러면 사법권으로 취체하려는 범위는 어떠한가?”

검사장 “조선에서 절대독립을 주장하는 독립주의를 고취하든지 또 공산주의를 고취하는 사상은 취체하겠노라.”

기자 “독립주의나 공산주의를 선동적인 기사로 쓰는 것이 아니라 학설 그대로 소개하는 것은 어떠한가?”

검사장 “필자는 학설로 소개한다 하였을지라도 보는 사람이 선동되리라고 인정되면 취체하겠노라.”

기자 “그 표준이 무엇인가?”

검사장 “일반 사람이 선동이 아니라고 인정할지라도 건전한 사상을 가진 사람의 눈으로 보아 과격하다 인정하면 취체하겠노라.”

기자 “건전한 사상을 가진 사람이란 어떠한 표준으로 정하는가?”

검사장 “대개 정치는 국리(國利)를 증진함에 있고 사법도 정치의 일부분인 이상, 아무리 일반 인심이 타락하여 그만한 언론은 아무렇지 않게 생각한다 하여도 국리를 증진하는 안목으로 보아 불가하면 취체하게 된다.”

기자 “처벌하는 정도는 어찌하려는가?”

검사장 “처벌 정도는 그 사건이 현재 있는 것이 아니라 말할 수 없으나 일본에서 취체하는 이상의 처벌은 안하고 되도록 관대하다는 말을 듣도록 하겠노라.”

기자 “이번 구인한 두 잡지사 사건은 어느 때나 결말이 날 것인가?”

검사장 “명언할 수 없으나 하루라도 속히 처리하도록 하겠노라.”

기자 “이번 일은 총독부의 지휘로 그리 된 것이라던데 어떠한가?”
검사장 “책임상 내용은 말할 수 없으나 내 생각에는 사법권의 독립을 위해 총독이 너무 간섭하여서는 안 될 줄 아노라.”

〈출전 : 獨立과 赤色記事는 학설이라도 취체할 수 있다. 검사장과 본사 기자의 문답.
『東亞日報』, 1922년 11월 24일〉

2) 일본 정치가의 고루(固陋)를 비웃음, 소위 치안유지법안(사설)

1.

동경 전(電)은 법제국으로부터 내무성에 제출된 6개조의 치안유지법안의 성립을 전한다. 그 법안의 전문은 이미 보도한 바와 같거니와 이 법안이 대다수의 여당을 가진 현내각 손에서 성립된 것을 보면 중의원 통과는 기정사실이며, 또한 완명(頑冥) 보수 집단인 귀족원의 청종(聽從)도 물론일 것이다. 따라서 이 법안이 조만간 사실 법률화할 것도 예측할 바이다.

2.

그리면 이 법안이 성립된 경로와 동기가 어디에 있는가 하여 그 법안의 내용을 검토하여 보면, 일면에 있어서는 일·러의 기본조약이 성립된 동시에 불안정한 사상계가 급변격화 할 우려에서 배태된 것이며, 다른 한편에 있어서는 보통선거의 실시를 단행하며 귀족원의 개혁을 제창하는 동시에 추부(樞府) 원로배의 경이해시(驚異駭視)²⁾하는 감정을 완화하기 위함이며, 또한 무산정당의 발전을 견제하기 위한 현 내각의 정략적 법안이라 하여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어찌 그러나 하면 전 해에 정우회(政友會)³⁾ 내각으로부터 제안되었던 과격법안에 대하여 그 당시 재야당 및 헌정회와 혁신구락부가 모두 반대의 기치를 들지 않았던가. 법안의 실질로 보아서 전 회의 과격법안과 이번의 치안법안이 동조이곡(同調異曲)이 될 뿐이다.

2) 놀라서 쳐다봄.

3) 1900년 일본에서 결성된 보수 정당 입헌정우회(立憲政友會)를 말함.

3.

그리나 사상의 운동을 과연 법문으로써 예방할 수가 있으며, 사상의 격화를 형별로써 억제할 수 있을까. 분서갱유(焚書坑儒)하던 진(秦)나라 정치의 후세(後世)가 과연 어떠하였으며, 포락중형(炮烙重刑)하던 상주(商紂)⁴⁾의 말로가 과연 어떠하였는가. 고대에 있어서만 그럴 뿐이 아니라 근대에 있어서도 청조(清朝)의 몰락과 러시아의 격화가 다 은감(殷鑑)⁵⁾을 만들며 사실로써 증명하는 것이 아닌가. 요컨대 문제는 사상은 사상으로 대항할 것이며, 사상은 사상으로 정복할 것이다. 첫째는 사상의 악화와 격화를 야기하는 원인, 곧 정치 제도와 경제생활에 대한 그 착오와 결함을 부단히 개혁해서 시운(時運)에 순응하도록 인성에 합치하도록 노력하는 것이 한 방책일 것이며, 둘째는 인류 진화의 원칙에 있어서 사상은 악화(惡貨)가 정화(正貨)를 구축하는 경제적 법칙과 달라 어디까지든지 현정파사(顯正破邪)⁶⁾의 권위를 가진 것이다. 그러면 이를 선도하는 방책은 그 자유를 존중하며 그 토론을 치밀하게 하여 그 자체로써 우열을 가리며 그 선악을 제정케 할 것이다.

4.

이에 반하여 몇 개 조의 법문으로써 사상운동의 원류를 막으려 하는 것은 일본 정치가의 안목이 이처럼 고루하다는 것을 알려준다. 이리하여 여론이 사어(私語)로 변하며, 결사(結社)가 비밀로 이루어져 음모가 생기며 격류가 동하는 때에는 과연 어떠한 법안을 제정할 것인가. 나는 하등의 정견과 고매한 이상 없이 현안에 국한하며 자기옹호에 급급하는 일본 정치가들을 위해 오히려 연민의 정을 불감(不堪)하는 바이다.

〈출전 : 일본 정치가의 固陋를 笑함, 소위 치안유지법안(사설), 『東亞日報』, 1925년 1월 31일〉

4) 달군 쇠로 지지는 극형을 뜻하는 ‘포락’은 중국 은(殷)나라 주왕(紂王)이 쓰던 형벌제도임.

5) 경계를 삼아야 할 실패의 선례라는 뜻.

6) 옳바르지 않은 것을 깨고 옳바른 법리를 나타내어 보임을 뜻함.

3) 치안유지법과 조선의 관계(사설)

1.

세계적 악법의 표본인 구한국(舊韓國)시대의 신문지법(新聞紙法)과 총독정치의 골수인 제령(制令)의 구속을 당하고 있는 조선인으로서는 이제 일본 정치에서 그 의회에 제출한 치안유지법안에 대하여 일찍이 본란에서 거론한 바 있어 또 다시 중복하여 그의 선악 적부를 지적할 필요가 없을 것이다. 그러나 시대의 진운을 따라서 인간생활을 개척하지 아니할 수 없으며 그 생활을 개척함에는 무엇보다도 그 사상과 행동과 노력의 자유를 전제조건으로 하여 출발하지 않으면 아니 될 것이다. 이렇게 함으로써 더 나은 생활을 구하여 마지아니하는 인간은 더 나은 사회를 원하며 보다 나은 사회는 현상사회 의 제 조건을 긍정하는 데에서 이를 수 있는 것이 아니요, 필연적으로 현 사회의 불합리한 제 조건을 완전히 혁신함에서만 이를 수 있는 것이다. 이러한 혁신적 사상 또는 행동이 의식적, 무의식적으로 현존 사회 질서의 폐해를 이용하여 정치적으로 또는 사회적으로 지위와 권세와 영예를 놓단하고 있는 자들에게 비상한 위협이 되는 것은 물론이지만, 인간사회의 진화와 생활의 향상이 한갓 구제도의 폐해를 이용하는 자 때문에 희생되고 만다면 이야기로 인간의 막대한 치욕인 동시에 인류 문화에 있어서 참혹한 손실이다. 따라서 동(同) 법안을 논하라면 근본 문제로부터 비롯하는 것이 옳지만 우리의 처지로는 이제 근본 원리를 검토할 여지가 없으므로 자못 조선인에게 직접 관계되는 조항만 일고 하려 한다.

2.

동 법안 제1조에 의하면 “국체(國體) 또는 정체(政體)를 변혁하거나 사유재산제도를 부인하는 목적으로 결사조직한 자와 또는 사정을 알고 이에 가입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에 처함”이라 하였다. 조선과 일본 사이에 조선인이 일본의 국체 또는 정체를 변혁할 목적으로는 일본의 헌법으로 본 조선과 일본과의 관계로 보아서 결사조직 할 필요도 이유도 없지만 사유재산제도 문제에 이르러서는 조선인의 결사조직에 있어서 지대한 관계가 있다고 생각한다. 어찌 그러하나하면 조선에서는 법률의 적용과 조문의 해석이 일본에서보다 매우 가혹하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 사유재산 문제에 관하여 현 정부 내각 수상의 설명에 의하면 토지, 주택, 선박, 전력 등의 국유론은 긍정하고 총괄적으로 국민경제 조직의 근본을 부인하는 것을 불법이라 하였으니, 사유재산에 대한 의의

가 매우 애매하고 불명확하지만 이로써 보면 선박과 철도와 토지와 주택과 전력 등의 사유는 부인할 수 있는 것을 간취할 수 있다. 그러나 이 법률이 조선에도 실행되면 조선에서는 이 법률을 적용 또는 해석함에 있어 위에서도 말한 바와 같이 일본에서의 그 것보다 한층 가혹하고 심각할 것은 전례가 명시하고 있다. 또 제2조 내지 제6조의 각 조에 규정한 것을 보면 제1조의 목적을 실행하기 위하여 협의한 자, 선동한 자, 금품을 수수한 자까지 처벌한다 하였으니, 이러한 조문을 임의로 적용하거나 해석하여 조선에서 조선인의 선의 실현에 대하여 비상히 박해를 가할 것은 총독정치의 본질에서 판명되는 바이다. 이럼으로써 조선인은 종래의 신문지법과 제령과 이 위에 또다시 치안유지법으로 삼중구속을 당하는 것을 우리는 이제 기억하고 있다.

3.

물론 약한 우리는 강자가 권력으로써 ‘다 나의 그물 속으로 들어오라’ 하면 일제히 들어가지 아니할 수 없는 것을 안다. 그물이 철로 되었건 강철로 되었건 이것은 우리가 알 바 아니요, 오직 그 그물의 눈(目)이 너무 세밀하여 누구 하나도 헤어나지 못하게 되는 것만 우리는 주시하고 있다. 왜냐하면 이와 같이 되어야 드디어 그물과 우리 사이에 그 비중이 균형을 이루지 못하여, 마침내 그 그물의 벼리(維)가 끊어지거나 그렇지 아니하면 그 중폭(中幅)이 찢어지고 말 것을 확신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우리는 더욱 세밀한 그물이 제조되는 것을 오히려 기대해 마지아니하는 동시에 이러한 의미에서 일본의 신홍계급의 치안유지법의 반대운동에 큰 관심을 두지 아니한다. 그러나 우리는 어떠한 기회이든지 기회가 있을 때마다, 또는 기회를 만들어가면서 생의 투쟁을 확대하지 않으면 안 될 것을 안다. 더욱이 다른 계급의 도전적 행동에 대하여 굴욕적 침묵을 묵수할 수 없는 것을 깨닫는다. 그리고 치안유지법안이 법률이 될 것은 정부안으로 이미 국회에 제출된 이상에는 여당이 절대다수인 것보다도 이 법안의 전신인 과격법안을 제출하던 정우본당(政友本黨)이 유일한 야당인 것으로 보아, 다시 말하면 일본 의회의 소위 선량한 무리는 전부가 순자본별(純資本閥)의 선출인 것으로 보아 의심할 바 없는 기정사실이다. 이제 우리가 오직 유감으로 생각하는 바는 정우본당이 소수가 되어 한층 주도면밀한 조문 수정을 하지 못하게 된 것뿐이니, 요컨대 ‘그물’을 제조하려거든 세목의 것을 고안할 것이지 그렇게 하지 않은 것을 우리는 매우 유감으로 생각한다.

〈출전 : 治安維持法과 朝鮮과의 關系(사설), 『東亞日報』, 1925년 2월 23일〉

4) 치안법 조선엔 꼭 실시, 사이토 총독 귀임담(歸任談)

동경에 갔던 사이토 총독은 4일 오후 7시 경성 역에 도착, 귀임하였는데 방문 기자에게 다음과 같이 말하더라.

치안유지법안(治安維持法案)은 의회에서 다소 문제가 있으나 결국 통과될 것은 확실하다. 이를 일본에서 실시하게 되면 조선에도 법령의 형식은 어떠하든지 기어이 실시할 것은 물론이며, 만약 의회에서 통과되지 못하여 일본에는 실시키 어렵더라도 조선만이라도 금일의 시세에 비추어 특별히 제령(制令)의 형식으로 실시함이 필요하지 아니할까 하니, 적어도 국체를 없애려는 행위는 비록 예비행위라도 취체(取締)할 필요가 있음을 확인한다. 제령 제7호와의 관계는 양자의 입법취지 및 적용범위가 상이하기 때문에 병립하여도 불가하지 않다. 치안유지법의 실시로 인하여 경비가 필요할 것은 별로 없고 다만 일러조약(日露條約) 성립으로 인하여 국제관계상 요하는 경비가 있는데 이는 추가 예산으로써 처리할 터이며, 상세한 것은 이 사안이 국제관계에 속하기 때문에 사전 언명은 금물이다. 국경 경비 방침은 전과 같이 변함이 없으니 일러조약의 영향을 받는 것은 없다.

▲ 조선 재주 러시아인은 백적(白赤)을 구분할 것 없이 동일한 외국인인 이상에는 범죄행위가 있으면 별 문제이나, 그렇지 않으면 특히 백파라고 해서 피국(彼國)에 인도할 필요는 없다.

조선에의 특별의회 설치 문제는 하등 구체적 성안을 하지 못했고 참정운동의 일파도 예(例)에 의하여 예와 같을 뿐이다. 당국자로서 평소부터 일 연구 문제를 삼아 왔음은 물론이다.

▲ 만주 조(票) 수입관세 면제는 당분간 사세의 추이를 보아서 해결하고자 하니, 만약 일차 면제를 단행하였다가 이로 인하여 중국 측에서 방곡령 등을 실시하게 되면 그야말로 중대문제가 되기 때문에 각반 관계의 조절에 최선을 다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

▲ 중등정도 학교에 군사교육 실시는 예산관계로 14년도에는 실행하지 않기로 결정하였고, 15년도부터는 다시 연구하여 실시할지도 예측하기 어려우며, 그 취지가 병역 의무 관계에서 출발한 것인즉 병역 의무가 없는 조선인 학생에게는 부과하지 않을 것은 물론이다.

▲ 연고 임야 무상양여 문제는 속히 해결하고자 하는데 구체적 방법은 아직 언급할

시기가 아니다 운운.

〈출전 : 治安法 朝鮮연 꼭 實施, 斎藤總督 歸任談 『朝鮮日報』, 1925년 3월 5일〉

5) 조선독립운동에도 치안유지법을 적용, 야마오카(山岡) 정부위원 답변

일본 귀족원(貴族院)의 치안유지법안위원회는 오전 10시 40분에 개회하고 질의에 들어가 이토(伊東祐弘) 자작, 덴(田健治郎) 남작, 오카(岡喜七郎), 유치(湯地幸平), 오오이(大井成元) 남작, 오코치(大河内輝耕) 자작 등 제 씨는 평범한 질문을 하고 야마오카(山岡) 국장, 오가와(小川) 법상(法相)의 응수가 있은 후 12시 40분에 산회하였는데, 유치 씨의 질문에 대하여 오가와 국장은 대만, 조선 등의 독립운동은 본 법에 의하여 취체할 것이라고 답하였다. (동경 전(電))

약법 원안 가결, 귀원위원회(貴院委員會)

일본 귀족원 치안유지법안위원회는 오후 2시 4분에 재개하여 오카(岡喜七郎) 씨, 본 법안 불통과를 목적으로 의원에 과격 문서를 송부한 자에 대한 단속에 관하여 질문하고 법무대신이 이 점은 충분히 고려하여 범인의 발견에 주의한다고 답하였으며 이로써 질문을 정지하고 토론에 들어가 결국 원안을 가결하고 오후 4시에 산회하였더라. (동경 전)

정부의장 탈당

일본에서 의장의 질서유지와 엄정 공평한 의사 진행을 도모하기 위하여 이제부터 문제되었던 중의원 정부의장의 당적 이탈문제는 17일에 실현하게 되어 □□ 의장은 정우회를 고이즈미(小泉) 부의장은 현정회를 각기 탈당하여 무소속으로 입회하였더라. (동경 전)

진사문(陳謝文)⁷⁾ 수교(手交)

의장이 의원에게

17일에 일본의 □□ 의장과 나카무라(中村) 서기관은 3월 2일 의원 내에서 전□(殿□) 된 모리타(森田) 대의사(代議士)를 방문하고 진사문을 수교하였더라. (동경 전)

중요안, 회기 중에 해결?

일본의 보선안(普選案)도 늦어도 19일까지에는 질문을 종료할 것이오. 귀족원 개혁도 사실상 질문이 종료되고 예산안만은 연구회의 내부적 관계로 진행이 정지되었으나 예산안이나 보선안도 양원 협의회를 개최할 리는 만무하다고 하며 회기 중에 전부가 해결될 듯하더라. (동경 전)

귀혁안위원회(貴革案委員會), 귀·중 대립의 질문

일본귀족원 개혁위원회는 17일 년후 1시에 개회하고, 야구치(矢口) · □□ · 가츠(勝) · 스가와라(菅原) 씨 등 공선(公選) 의원에 대하여 질문한 □□□□□ 씨, 토지 · 상 · 공업 등의 직접국세 중에 □로소득이 포함되지 않느냐. 에기(江木) □장(□長), 포함되지 않았다. □□의 사용으로 발생하는 수입은 이것에 가산한다. 사카타니(阪谷芳□男) 귀원(貴院)은 보선□□□의 중의원과 □립(□立)하여 자본가와 무산자계급의 □립(□立)과 같이 생각하게 되는 양원제에 화근을 질문하고 사사키(佐佐木行忠) 후작이 세습 의원에 대하여 질문이 아직 끝나지 않았으나 3시 50분에 산회하였더라. (동경 전)

대만의회 설치, 삼파회(三派會) 부결

여당 삼파교섭회는 17일 중의원 본 회의 산회 후 개회하고 대만의회 설치의 청원은 부결로 결정하고 □태□비(□太□備)에 관하여 급□히 전부를 철퇴함은 질서유지 상 정직할 사□(事□)가 발생하겠음으로 잠시 사정의 안정이 있을 때까지 1부대를 주둔하도록 각파(各派)에서 연구한 후 당국에 대하여 권고할 것과 북해도 척식에 관한 법률안은 각파에서 연구하기로 하였더라. (동경 전)

7) 이유(理由)를 말하고 사죄(謝罪)함.

일본국유재산

총액 60여 억

일본 중의원에서 금년에 비로소 결산위원회에 □□하여 심의하게 된 1922년 4월 1일 현재 국유재산 총액은 58억 6,935여 원(圓)이며 1922년도 후 증가는 4억 7,443만 7,000여 원이라더라. (동경 전)

경관무기사용규정 공포

17일 관보로써 경찰관리무기사용규정이 공포되었는데 다음 규정에 의하면 각 경우는 아래와 같더라. (동경 전)

1. 인민의 생명을 보호 또는 재산을 방위할 때, 상황□□으로 무기사용 외에 수단이 없는 경우
2. □□상 □□하는 인, □소(□所) 또는 □전을 지지함을 당하여 폭행을 받으며 또는 받으려 할 때 상황이 궁박(窮迫)하여 무기사용하는 외에는 이것을 배제할 수 없는 경우
3. 다수가 연합하여 폭행을 하였을 때의 자위
4. 직무집행 시 폭행을 받아 상황이 궁박할 경우

무기사용규정

일본에서는 경찰관의 무기사용규정이 발포되었다. 총독부에서는 이미 이에 대한 규정이 있으므로 금번 일본에서 발포한 규정으로 인하여 하등 변경이 없으리라더라.

〈출전 : 朝鮮獨立運動에도 治安維持法을 適用, 山岡 政府委員 答辯,
『東亞日報』, 1925년 3월 19일〉

6) 치안유지법안과 보안법안(기사)

일본의 치안유지법안과 조선의 제령(制令) 제7호 보안법안은 다 이곡동교(異曲同巧)의 가혹한 악법이다. 다만 양 법안에 다소 차이가 있다 하면, 전자는 일본의 현 국체와 사유재산제도의 침범과 같은 비교적 구체적 사실을 열거하였거니와 후자, 즉 조선의 보안법안은 가장 광막한 범위의 자유자재한 적용성을 가진 것이다. 그러므로 ‘법’의 필수적인 본질의 하나인 명확의 일정만 가지고 보더라도 조선의 보안법안은 일본의 치안유지법안보다도 오히려 그 소질이 월등 열악하다는 것이 속일 수 없는 사실이다. 우리는 이 점에 있어 차라리 거악(巨惡)보다 소악(小惡)을 취한다.

〈출전 : 治安維持法案과 保安法案, 『朝鮮日報』, 1925년 4월 27일〉

7) 다시 치안유지법 실시에 대하여(사설)

1.

여기에 불행한 일군의 어족(魚族)이 있다. 날랜 물질에 이리 쏠리고 저리 쏠리어 마침내 메마른 연못 우리 안에 갇힌바 되어 그 가쁜 숨이 자못 삽시간에 절박하였거늘, 비록 간교한 어부의 수단이 아니더라도 족히 일거수일투족으로써 그 전족을 획득할 바인데, 하물며 배인 어망과 날랜 수단으로 불의의 습격을 피하고자 하니 일망타진하에 그 전족이 잔멸할 것은 실로 타수가득(唾手可得)⁸⁾의 일이로다.

2.

아아, 이것이 어찌 일편의 비유에 그치랴. 또는 혹 종(種)에 빗댄 우의(寓意)의 풍자일 것이냐. 바로 이것이 현재 당면해 있는 우리 조선 민족의 입장이다. 저희는 혹 우리의 이러한 말에 대하여 약자의 편협한 감정론이라 비웃을지 모른다. 그러나 저희가 비웃든지 말든지 사실이 사실인 바에야 이것을 부인할 수 없는 것이 아닌가. 다시 말하면 오늘 날 우리 조선사람 일반이 민족적으로 가진 희망이 무엇이며, 또 의지할 것이 무엇인가.

8) 어렵지 않게 일이 잘 되기를 기약할 수 있음.

만일 우리가 가진 것이 있다 하면 오직 잔망(殘亡)과 굴욕과 모든 원한뿐이다.

3.

물론 우리가 이러한 절박한 상태에 있다고 하여 곧 자포자기하는 것은 아니나, 너희는 불평을 불평으로 생각지 말며, 어디까지나 현상을 구가하는 것으로써 본분을 삼으라고 하니, 어찌 천하에 이처럼 무리한 말이 있으랴. 물(物)이 그 정(正)을 얻지 못하면 반드시 불평을 부르는 것과 같이, 오늘날 조선 민중이 정치적, 경제적으로 또는 일반 사회적으로 모든 불합리한 것에 대하여 그 불평을 말하며, 또 어디까지나 이것을 개혁하고자 하는 것은 인류로서의 가장 정당한 요구일 뿐 아니라 또 억제하려 해도 억제할 수 없는 것인가 한다. 그런데 이와 같은 명명백백의 사리에도 불구하고 간교한 책략과 권력의 압박으로써 이 모든 요구를 근절하고자 하는 것은 만일 그것이 한때 착오가 아니라면 가장 어리석은 인도(人道)에 대한 모독이다.

4.

그러나 우리는 유감이나마 많은 과거의 역사적 사실을 통하여 이러한 과오가 자주 중첩하였던 것을 발견하는 동시에, 이제 당면해 있는 일본의 치안유지법안 같은 무류(無類)의 악법으로써 장차 우리의 앞길에 산비(酸鼻)의 고초라는 복철(覆轍)⁹⁾을 밟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 아아, 이것이 얼마나 저주할 만한 인류생활의 대역전인가. 그러나 우리는 태연한 사실 그대로의 직관을 도피할 수 없는 오늘날에 있어서 다만 선후의 대책을 예의 부심하는 것 외에 별다른 방도가 없다. 다시 말하면 치안유지법안이라는 일대(一大) 철조망을 늘이고 조선의 정치적, 경제적 모든 운동의 맹아를 일거에 제거하고자 하는 권력의 마수가 전에 비해 한층 맹렬하게 우리의 두상에 임할 것은 다시 변하지 않을 예정된 순서이다. 그렇다면 우리가 장차 어떤 각오와 대책을 강구할 것인가 함은 우리가 가장 신중히 고려해야 할 것이다. 우리는 이 점에 있어 본 문제를 포착하여 항상 만천하 민중의 관청(觀聽)을 환기하는 데 애써 왔던 것이다.

5.

즉, 오는 11일부터 조선에 적용하게 될 일본의 치안유지법안 내용이 조선의 모든 정치적 및 사회적 운동을 근본부터 탄압할 가장 가혹한 법령인 것은 이제 새삼스럽게 설명

9) 수레가 뒤집힌 자리. 즉 전에 실패한 자취를 비유하는 말.

을 요할 바 아니다. 다시 말하면, 조선 사람으로서 당연히 부르짖지 아니할 수 없는 모든 정치적 및 경제적 요구에 대하여 추호의 여지도 없을 만큼 전 민족을 강제로 감금시킬 일대 새 위협이다. 그러면 이와 같은 새 위협에 대하여 장차 우리가 취할 태도는 무엇인가.

물론 정치와 경제의 양 부문은 서로 떠나지 못할 이신동체(異身同體)의 인과관계를 갖고 있음은 다시 거론할 여지가 없다. 따라서 오늘날과 같은 조선의 정치상태와 경제상태가 일본의 제국주의와 자본주의의 이중적 지배하에 있는 것과 또 이와 같은 이중적 지배의 기조와 조선 전 민중의 생존원리는 조화시키려 해도 도저히 불가능할 것이라는 사실은 인정하지 않을 수 없다. 하물며 일본의 현 정치와 현 경제조직을 옹호하고자 하는 이번의 치안유지법안과 조선 민중의 모든 정치운동과 사회운동에 대해서 세불양립(勢不兩立)의 관계가 있음은 다시 언급할 필요도 없다. 이리하여 법률이라는 추상적 범주와 생활이라는 구체적 사실이 끝끝내 격투하기를 마지아니할 것이다.

〈출전 : 다시 治安維持法 實施에 對하여(사설), 『朝鮮日報』, 1925년 4월 30일〉

8) 경찰정치와 사상단체, 치안법을 빙자하여(사설)

1.

조선총독부에서는 기본적 악법인 치안유지법을 조선에 실시하는 그 첫 번째로 기성단체의 해산을 단행할 터이라 하니, 이제 악법이 실시되면 그 악법을 조선총독부에서 활용하는 데 있어서 의론도 비평도 가부도 원래 있는바 아니지마는 이렇게 강권을 발휘하여 만사를 마음대로 할지라도 그 형식과 또는 실질에 있어서 전혀 기댈 곳이 없는 것을 한갓 위력으로써 무리하게 탄압하는 것은 정의와 인도(人道)를 위하여, 즉 인간생활의 향상과 발달을 위하여 도저히 묵과할 수 없는 것이다. 앞서 우리는 치안법이 일본 의회에서 문제되던 때에 이것이 법률로 확정되면 조선에도 실시될 것과, 조선에 실시되면 그 적용 정도와 범위가 일본보다 열 배나 가혹하거나 확대될 것이라는 것을 논한 바 있거니와, 이제 실시의 벽두에서 이와 같이 노골적으로 위협적인 독사의 독을 철저히 내뿜는 것은 총독정치의 본색을 적나라하게 드러내는 것이 아닐까 한다.

2.

조선의 기성단체는 결사의 자유가 없는 조선에서의 결합이니, 물론 어떠한 실제의 정강정책을 수립한다 하여도 이것의 현실적 실현을 기도하려는 정당도 아니요, 파괴를 목적으로 하는 공포주의적 테러리스트의 결사도 아니다. 다만 정서와 사상으로 취합한 일종의 사상단체에 불과하며, 그 단체의 주지와 강령은 물론, 신사회 건설을 동경하는 현대적 혁신사조에 합류하려는 것이지마는, 문자로나 실행으로나 공연히 과격한 행동을 고조하지 못하는 것은 종래의 총독정치의 위압과 감금의 취제(取締) 방침 하에 임의 빠짐없이 봉쇄된 까닭이다. 그리고 사상단체는 정치결사와 같이 실제문제를 처리하는 것이 아니요, 무책임한 입지에서 아무 구속이 없이 학술적, 이론적으로 사회문제를 연구하고, 비평하며, 또 건설적, 창조적인 인간생활을 경륜(經綸)하며 포부하는 것이니, 이러므로 각 개인의 사상이 자유인 것과 같이 그 집단도 자유라야 할 것이다. 만일 그렇지 아니하면 이로 말미암아 개인사상의 자유가 그대로 억압되어 그 국가, 사회의 인간생활은 인간으로의 생활을 영위하지 못하고 바로 금수와 기계의 모형이 되고 마는 것은 물론이고, 이와 동시에 문화의 쇠판(消長)도 마침내 그 사회와 같이 화석화하고 말 것이다.

3.

도공(陶工)은 점토로써, 목공(木工)은 목재로써 승척만거(繩尺鑛鋸)¹⁰⁾를 사용하여 각각 그의 의장(意匠)¹¹⁾과 도안대로 대소방원(大小方圓) 심천장단(深淺長短)의 기구를 제조하기 마련이다. 그러나 위정자가 권력으로써 승척만거에 대하여 민중으로써 그의 도안과 의장대로 기구를 만들려고 하는 것은 사람은 점토도 목재도 아닌 생명체인 관계상 절대로 실현되지 못할 것이며, 이것은 인류사가 다 같이 입증하는 바이다. 특히 조선에 있어서 가깝게는 데라우치(寺内) 총독의 무단정치가 분명히 증거하는 바이거니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또 다시 사상압박을 감행하려는 것은 너무도 경험의 양지(良志)를 결여한 어리석은 분동(奮動)일 것이다. 두고 보자, 어찌되는가. ‘루이’와 ‘찰스’의 운명은 자기 손으로 만든 것이요, 결코 당시 프랑스의 민중도 영국의 민중도 그의 최후를 촉구한 것이 아님을 누구나 안다. 더욱이 프랑스의 혁명사상을 박멸하기 위하여 신성동맹을 체결한 러시아·프로이센·오스트리아의 세 제국을 보라. 지금 어찌되고 있는가.

10) 줄과 자, 흙손과 톱을 뜻함.

11) 생각이나 도안, 디자인을 뜻함.

4.

그리하고 조선의 사상단체는 치안법의 적용으로 인하여 해산의 액을 당하게 될 것이며, 치안법이 실시되기도 전에 조선에서는 사라질 것이다. 어찌 그런가 하면 조선에는 치안법보다도 가혹한 제령(制令)이 있으며, 이밖에 각종 악법이 있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이러한 법률이 없을지라도 경무국이나 경찰부, 또는 경찰서 일편의 명령이면 안 될 일이 없었으니, 이제 새삼스럽게 치안법을 빌릴 필요가 없지 아니한가. 치안법에는 ‘국체와 사유재산제도의 근본 조직’을 운위하였으니, 국체에 관한 것은 제령 제7호로써 넉넉히 취제하였다. 한편 사유재산에 관하여는 종래에 있어서도 개인적으로는 어떠한 사상을 동경하든지 간에 단체로는 근본적 변혁을 주창할 수도 없었으려니와 이를 주장하는 자가 있었다면 그는 대체로 토지나 가옥 등의 일부 재산제도의 변혁을 이론함에 불과하였음은 조선의 경제나 산업 상태를 보아도 알 만한 것이다. 말하자면 조선의 사상단체가 비록 러시아(露西亞)를 모방한다 할지라도 그것을 한 걸음에 건설할 수 없는 것은 현재의 러시아의 경제정책을 이해한다면 명백한 사실이니, 국체와 사유재산에 저촉이 되지 아니하면 기성단체는 물론이요 새로 조직되는 결사에도 종래와 현재가 다를 것이 없지 아니한가. 국체 또는 사유재산 문제에 관하여 공공연히 저촉된 바 있었으면 종래에도 결코 이것을 묵과하지 않았을 것이니, 그러면 종래에는 없던 일을 이제 단행한다는 것은 그 무엇으로써 설명할 것인가. 이와 같이 무리한 위압은 법률도 법률이려니와, 이러한 법률을 빙자하여 경찰정치를 더한층 철저히 강화하려는 것뿐이니, 따라서 이로부터 우리는 사상과 경찰이 도처마다 충돌하는 침극을 보게 될 것이다. 이것이 누구의 죄인가.

〈출전 : 警察政治와 思想團體(사설), 『東亞日報』, 1925년 5월 6일〉

9) 금일부터 실시하는 ‘특법’ 치안유지법, 우선 관계당국 의견

일본 정부에서 새로이 만들어 낸 소위 치안유지법은 드디어 금일 12일부터 실시하게 되었는데 입법정신이라든지, 적용범위와 아울러 일본 정부의 조문해석 등은 이미 보도한 바와 같거니와, 이제 실시함에 있어 우선 조선 관계 당국자의 의견을 듣건대 아래와 같다.

실시의 구체적 방침 언명 회피, 저촉되면 해산, 안 되면 지금이라도 주시

다나카(田中) 고등경찰과장 담(談)

◇ 경무국 다나카 고등경찰과장은 말하되 조선에는 벌써부터 치안유지법과 대동소이한 제령(制令)이 있었으므로 치안유지법을 실시한다 하더라도 특별히 새로운 현상은 없을 줄로 압니다. 즉, 제령은 그 목표가 독립운동자에게 있고 치안유지법은 무정부주의나 공산주의자에게 있을 뿐으로 실질에 있어서는 공통되는 점이 많아서 실상 제령으로도 무정부주의나 공산주의자를 넉넉히 취체(取締)할 수 있는 동시에 치안유지법으로도 독립운동자를 넉넉히 취체할 수 있는 것이외다.

◇ 적용범위에 대해 말하자면 재래의 제령은 ‘어떠어떠한 일을 하라고 한 자까지 처벌’하였으나 치안유지법안은 ‘어떠어떠한 일을 한 자를 처벌’하게 된 것이므로 이 점으로 보아서는 오히려 재래의 제령이 그 범위가 광범하다 할 수 있습니다.

◇ 이제 실시를 맞아 당국의 구체적 방침을 말하면 치안유지법에 저촉되는 단체가 있으면 해산할 것이고 저촉되지 않는 단체나 개인에게 대하여는 이후의 태도를 보아서 취체할 뿐인데, 현재 조선의 사상단체 중 이 치안유지법에 저촉되는 단체가 있고 없는 것은 아직 명언할 시기가 아니므로 말할 수 없습니다.

〈출전 : 今日부터 實施하는 「特法」 治安維持法 爲先 關係當局 意見,
『東亞日報』, 1925년 5월 12일〉

10) 치안유지법 실시에 대하여, 파급되는 영향 여하(사설)

1.

내가 본문에서 논평하였던 소위 치안유지법은 어제 12일부터 조선에도 실시하게 되었다. 과연 치안유지법을 실시한 결과 당국자가 미루어 생각한 바와 같이 완전한 효과를 얻을까, 아니면 도리어 일반 사상계에 악영향을 파급할 뿐일까 하는 것은 이 법안을 실시하는 금일에 있어서 더욱 중요한 문제이며, 또한 이 법을 적용하는 범위와 정도에 있어서도 당국자는 신중히 고려하지 않으면 안 될 것이다.

2.

첫째, 일본에 있어서는 보선안(普選案)을 실시한 결과, 정계의 급격한 변혁을 예방하기 위해 사상에 관한 법안을 통과시킨다는 것이 이러한 악법을 변호해주는 충분한 구실이 되겠지만, 조선에 있어서 과연 이 법안을 실시할 만한 타당한 이유가 있는가. 그렇지 않아도 모든 준열한 법망이 구비되어 있는 조선에 다시 이 법까지 실시한다는 것은 한갓 현재의 총독정치는 어디까지나 전제정치이며, 압박정치이며, 위협정치라는 것을 더 한층 심각하게 조선 민중의 심리에 악인상을 각인해 줄 뿐이 아닌가. 하물며 치안유지 법이 아니라 할지라도 제령 제7호만 가지고도 현하 사상운동을 형식적으로는 넉넉히 위살, 협살할 수가 있지 않을까.

3.

둘째, 현하 조선의 문화운동은 아직도 여명기에 있는 것이 사실이다. 여명기에 있으므로 모든 사상과 지식을 될 수 있는 대로 자유연구와 자유토론에 맡김으로써 연구토론의 결과, 단점을 버리고 장점을 취하고, 거친 것은 버리고 순한 것을 택하여 우미려아(優美麗雅)한 새 문화를 형성하는 것이 목표 급무일 것이다. 이 점에 있어서는 결사적(結社的) 연구도 필요할 것이며, 비교 토론도 적절할 것이다. 이를 불구하고 현하 문화운동의 초기에 있어서 이와 같은 준열한 사상법안을 실시하는 것은 과연 당국자의 심의가 어디에 있는가를 해괴한 눈으로 보지 아니할 수 없다.

4.

셋째, 현하 조선의 사회운동은 사회 자체의 병적 현상에 기인한 것이다. 그렇다면 이러한 사회의 병적 현상을 야기한 근본 원인이 과연 어디에 있으며, 또한 그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가. 여기서 나는 단언한다. 이 모든 원인과 책임은 그 대부분이 조선총독부 당국자와 또한 그 실행 정책에 잠재해 있다. 따라서 조선총독부 당국자는 일말의 성의가 있다면 고식적 법망으로써 사회표면의 혼란을 피하려 하기보다는 근본적으로 그 이면에 잠재한 생활 안정의 중대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안 될 것이다. 한갓 고식적으로 위협적으로 외부 압박에만 국한하는 것은 도리어 비밀결사를 촉진하며, 과격운동을 준동하는 것이 아닐까 한다.

5.

현하 조선에 있어서 이 법을 실시하는 것이 하등의 실효가 없다는 것은 이상에서 논술한 바이거니와, 마지막으로 한마디 하고자 하는 것은 이 법을 적용하는 범위와 정도 문제이다. 적어도 이 법의 해석과 적용에 이르러서는 현대사상에 대한 이해와 연구가 있지 않다면 의외의 독소를 파급하게 될 것이다. 그럼으로 이 법의 적용에는 저급한 속리(俗吏)의 곡해(曲解)와 편감(偏感)을 제거하기 위해 노력하지 않으면 안 될 것이다. 이곳 사법당국자에게 일언하는 바이다.

〈출전 : 治安維持法 實施에 對하야(사설), 『東亞日報』, 1925년 5월 13일〉

11) 치안법의 해석에 대하여(사설)

1.

이미 조선에도 실시된 치안유지법(治安維持法)에 대하여 일찍이 재삼 논평한 바 있거니와 이제 또 다시 악법이니 세망(細網)이니 할 필요가 없고, 자못 그 내용을 대관하여 일반 사회의 참고에 제공하고자 할 뿐이다. 더욱이 조선에서는 법률도 문제가 아니요, 오직 관료배의 기분과 감정이 법률이 되며, 선악의 표준이 되며, 권력의 연원이 되고 있으니 비록 악법이라도 부득이 정확히 이해해 둘 필요가 있다. 순리로 논하여 치자와 피치자의 부자연한 관계에 있어서 법률의 이상(理想)은 무법률에 있다는 우아한 논의를 토출하는 것은 실제 생활의 참혹한 사정과는 너무도 먼 한담(閑談)일 뿐이다. 또한 그 법률의 발생 동기로 보아서 무법률을 이상으로 삼더라도 그 법률을 어기지 않을 수 없는 관계상 현실적인 이해와 권리를 위하여 세망의 가는 구멍을 잘 살피는 것이 결코 혁수고가 아닐까 한다.

2.

치안유지법의 정신은 무정부주의와 공산주의를 취체(取締)함에 있는 것이니, 사회주의는 이 법망에 걸리지 않는다. 그런즉 문제는 사회주의와 공산주의의 구별에 있으니, 첫째 우리는 이것을 기억해 둘 필요가 있는 것이며, 둘째 선동행위는 법망에 걸리지만,

무정부주의와 공산주의 운동도 무릇 유포 또는 선전에만 그치는 행동은 할 수 있다. 일본 정부의 해석에 의하면, “선동이란 것은 감정에 호소하여 자유로운 의사에 특수한 자극을 주는 것을 말한다. 그러므로 단순히 유포 또는 선전과 같은 어떤 사항을 공중에게 전파함에 불과한 정도의 것은 이를 포함치 아니한다.”고 하였으니, 요컨대 파종하는 것은 막을 수 없으나, 악초를 제거한다는 것은 암박한다는 것과 다르지 않다. 기민한 감각 신경을 가진 인간의 감정은 무릇 사물에 접하면 반드시 흥분되며 자극되는 것이니, 인류의 최고 이상이 표현되는 문제에 있어서는 더욱 그러하다. 그러나 선전과 유포는 선동이 아닌 것을 알아두는 것이 좋겠다.

3.

사회주의와 공산주의의 구별은 학자들의 논의가 구구하지만 대체적으로 일반적 구별은, 전자는 분배의 공평을 토대로 한 것이요, 후자는 총생산기관의 공유를 주장하는 것이니, 이는 곧 종래의 사유재산제도를 근본적으로 부인하는 것이다. 그러나 사회주의의 토대인 분배의 공평이 완성하면, 재산사유의 근본적 동기와 이유가 자연히 소멸되고 만다. 바꾸어 말하면 어떤 개인이 재산의 과실을 독점하지 못하게 되면, 따라서 사유재산관념의 근본 조건이 소멸되며, 이와 동시에 사유재산제도는 필연적으로 붕괴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러나 일거에 사유재산제도를 파괴하려는 것과 그렇지 않은 것이 사회주의와 공산주의의 다른 점이다. 이 문제에 대한 실제운동은 원래의 필연한 진화법칙의 추세에 맡기거니와, 이제 외부에서의 고압과 강제로 말미암아 비상히 자극한 것만은 또한 취득인 것이다.

4.

또 일본 정부에서는 토지와 철도 등의 일부 사유재산의 공유론은 사유재산제도의 부인이 아니요, 이것을 한 계계(階梯)로 하는 것만 불법이라 하였으니, 이러한 경우에 있어서 어떤 것은 계계로 주장하는 것이고, 어떤 것은 그렇지 않은 것인지, 이것은 물론 실제 사국실(國實)에서 판단할 것이지마는 결국 사법관의 임의 처단에 맡기게 되는 관계상 대단한 불안을 느끼지 않을 수 없다. 더욱이 조선의 사법관은 보통민사에 관해서는 어떤지 모르지만 형사에 관해서 특히 사상문제에 있어서는 그때그때 총독부의 정책에 지배되는 것은 물론이고, 정책이 아니라도 법률을 법률대로 해석하여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기분과 감정을 주체로 하여 한갓 편견과 사곡(私曲)¹²⁾으로써 임할 뿐이니, 현대적 법치사상도 저들에게는 도리어 과격사상이 된다. 그러므로 일정하게 열거한 구체

적 설명이 없는 계계(階梯) 운운하는 문구는 심히 위험한 것이다. 그러나 모든 무리와 위압을 다반사로 당하는 조선인에게 있어서 어찌 이것만이 문제이겠는가. 이제 우리는 악법의 세망(細網)을 통하여 오직 조선의 완고한 사법관의 전통적 전단(專斷)을 감시할 뿐이다.

〈출전 : 治安法의 解釋에 對하여(사설), 『東亞日報』, 1925년 5월 16일〉

12) 조선의 사회운동, 금후의 추세는 여하(사설)

1.

조선의 사회운동은 이제 전환기에 놓여 있다. 좌경으로 기울까 우경으로 기울까의 전환이 아니요, 종래의 기분적 운동에서 점차 실제성을 갖춘 조직적 운동으로 추이되는 중이다. 따라서 모든 운동가가 종래와 같이 기분에 따라 활동하지 않고 과학적 근거를 둔 실제적 운동을 펼치고 있으므로, 운동 그 자체로 보아서는 불가피의 경로이고 축하할 현상인 것은 다시 말할 필요가 없지만, 외관으로 보면 침적된 느낌이 없지 않으며, 쇠잔한 기미가 보이는 것은 명백한 사실이다. 그것을 충분히 이해하지 못하는 제3자의 안목에는 치안유지법이란 가혹한 법에 억압되어 우리 사회운동이 침체되고 당분간 □□□ 못하게 된 것으로 오인하는 □□□□□ 할지나, 사실은 그렇지 않아 조선의 사회운동도 이제 와서는 □□하 □□한 것이며, 제일보에서 제이보로 한 걸음 내딛게 된 것이라고 한다.

일본에서도 야마카와 히토시(山川均) 등의 볼셰비키를 중심으로 한 사회운동의 방향 전환이 문제가 되어 한동안은 학자들 간에 큰 논란의 중요한 주제로 여론이 분분하였다. 한편 부르조아의 어용학자들은 그 기회를 교묘히 이용하여 “이제부터 일본의 사회주의자는 종래에 고집하던 모든 주의의 오류를 깨닫고 점차로 자본주의에 귀순하는 도중에 있다고”까지 하는 것도 없지 않다. 조선의 운동도 특별히 방향전환이라 함보다는 좌우간에 종래의 운동선에서 떠나 새로운 운동선을 발견할 필요가 절박해진 것이라 하겠다. 우리가 지금까지 취해 온 운동은 주의자 자체로서의 특별한 단련이나 태도를 선명히 하지 못함과 동시에 일반 민중의 지적 수준, 생활수준 및 환경의 여하를 이해하지 못하고,

12) 사적인 이익을 피하는 부정을 뜻함.

오직 기분에 따라 흑백과 피아의 경계선을 명백히 구분하지 못하여 일정한 주의와 정견 없이 그저 현 정치제도하에서 불만과 불평을 가진 것에 불과하였다. 또한 모두 좋다(皆曰好也)고만 하여 어디라 지목하지는 못하나 대체로의 운동선이 혼탁하여 몽롱한 형세가 많았고 아울러 사회주의가 일종의 유행품화하여 흡사 연중 춘하추동의 변동을 따라 중절모가 유행하다가 맥고모(麥藁帽)가 유행하듯이, 사회주의란 것이 오늘날에는 유행 시절이니, 유행품인 사회주의를 표방하지 않으면 사회의 역군이란 반열에 끼지 못하게 되므로 행세의 수단으로 사회주의자라 하는 자도 없지 않다.

이 현상은 어느 나라를 불문하고 그 초기에 있어서는 불가피한 사실이니, 어찌 그것이 우리 조선에서만 특유하다 하리오. 러시아도 그리 했었고 일본에도 그러한 시기가 있었다. 이 시기를 가리켜 사회주의운동사상에서 제1기라고 한다면, 반드시 제2기가 도래할 것은 필연의 사실이니 오늘 조선의 사회운동도 제1기에서 제2기로 추이되어야 할 것은 지극히 당연한 경로일 것이다. 자본주의제도에서 사회주의제도로 추이된 것이 역사상의 필연인 것과 같이, 사회주의운동 자체에서도 기분에 따르는 운동이 지난 후 조직적 운동이 있어야 할 것은 또한 필연일 것이다.

2.

여기에 소위 전환기라 함은 일본의 방향전환과 그 본질에 있어서 판이하다 할지니, 그 이유는 조선의 형편은 일본의 형편과는 특수한 까닭이라고 한다. 이제 일본의 방향전환 운동의 내용을 검토해 보면, 일본의 운동가가 종래 취하여 온 태도는 사회주의자는 자체의 수련에만 전력하여 일반 민중과는 현격한 거리감이 있었고 또한 정치운동을 등한시 하였기 때문에 그 방면에는 소극적인 태도를 가져 청렴을 위주로 하고 적극적으로 정치 무대에 참가하여 변혁을 도모한 일은 없었다. 아직도 일반 민중의 이상은 현재 경제조직을 배제하고 새로운 경제조직하에서 신사회의 건설을 계획하는 것에까지 이르지 못하고, 다만 자본가나 지주에게 소작료의 감하나 노임의 윤택을 얻어 그날그날의 생활의 안정이나 취하는 것을 상책으로 여기고 다소의 대우 개선이나 바라는 것에 불과하다. 그러나 일부 운동가의 이상은 턱없이 전진되어 있으므로 이 둘 사이에 너무나 현격한 거리가 있으니 다시 우리는 직접으로 일반의 □□에 접근하며 그들의 요구에 □□을 얻을 수 있게 한 후 점차 □□□□어 최후 □□□하자는 것이다. □□□□회와 같은 곳에도 기회가 닿는 대로 관계를 맺어야 할 것이다. 저 기관에서는 자본주의적 제국주의 국가가 주체가 되었으니 저 기관에 간접하게 되면 갑자기 변절이나 한 것처럼 일반에게 주시되

던 것을 버리고, 민중의 집회에는 모조리 침입하여 그들의 이상을 변환하게 한 후 일차, 이차로 점진하자는 것이었다.

이상에 약술한 바가 일본에 있어서 방향전환운동에 대한 개관인데, 이제 조선도 전환기에 임했다 함은 결코 그러한 의미의 전환이 아니요, 그 일보를 후퇴하여 우리는 우선 주의자 자체로서의 상당한 수련을 쌓고 그래서 운동자 자신부터 상당한 이해와 정결을 확립하자는 운동, 즉 다시 말하면 기분적 조류에서 벗어나 실제성을 갖춘 과학적 운동으로 전환하자는 것이다.

3.

1907년 7월에 ‘일한병합’과 함께 발포된 보안법(保安法)이나, 1919년 4월부터 실시하게 된 제령(制令) 제7호는 조선인으로서 일본의 통치권역 내에서 이탈하여 조선의 독립을 도모하는 독립운동자를 취체(取締)하고 처벌하고자 함이었으나, 치안유지법은 국체의 변혁을 꾀하거나 사유재산제도를 부인하는 무정부주의나 공산주의자를 취체하고자 하는 의미에서 실시하게 된 것이다. 이에 조선의 사회운동은 초 7월에 서리나 맞은 듯이 세인이 공포를 느끼나, 사실 이상하게도 사회운동가 그들은 하등의 공황을 느끼지 않고 태연하게 마땅히 걸어가야 할 길을 걸어갈 뿐이다. 인간이 있고 역사가 있은 후 오늘에 이르기까지 법의 조문으로 사회진화의 원칙을 강제하여 성공한 실례가 없는 것이며, 설혹 그것이 어찌하여 순간적으로 지장을 줄지는 알 수 없으되 영구히 제지시키는 것은 절대 불가능함을 어찌하겠는가. 그러므로 치안유지법도 일시적으로 조선의 사회운동에 다소의 지장이 될지는 모르나 그것으로써 조선의 사회운동이 종식되지는 않을 것이다.

현하의 조선 사회운동은 높은 산꼭대기에서 떨어지기 시작한 바위와 같아 그것이 중도에 풀숲이나 나무뿌리에 걸려 일시 멈추는 일은 있을지라도, 결코 그 바위가 중간에서 영원히 고정되지 못하는 것과 동일한 이유로 언제나 목적지에 도달할 가능성이 풍부하다.

치안유지법이 실시되자 자못 나의 흥미를 끄는 것은 광무 11년에 제정된 보안법이다. 1919년에 급급하게 율령으로 실시된 제령 제7호는 조선인에게 한하여서만 그것이 가혹하고 악법이던 것이 이번에 발포, 실시하게 된 치안유지법은 일본에서도 동일한 법률로써 시행된다는 것이다. 그리고 보니 비슷한 운동을 하는 사람 중에는 조선인만이 아니고 일본인도 상당한 수를 점령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것이다.

‘일한병합’한 그 당시에 있어서는 보안법만으로도 능히 조선인을 억압하고 통치의 안정을 보장할 수 있었던 것이 그 후 10여 년이 경과한 1919년에 와서는 도저히 보안법만으

로는 조선인을 억압하고 통치의 실적을 거두지 못하게 되어 제령 제7호를 발포하게 된 것이 다시금년에 와서는 치안유지법을 조선에도 실시하게 됨은 주목할 만한 현상이다.

4.

조선의 사회운동을 과거의 기분운동¹³⁾에서 과학적 운동—조직의 운동, 혹은 실제적 운동—으로 추이되는 전환기에 있어서 치안유지법의 실시를 보게 되었으므로 제삼자의 안목으로 보면, 조선의 사회운동은 치안유지법이란 가혹한 법에 억압되어 부득이 침체 상태에 빠질 것으로 오해하게 되었다. 또는 실제로 지금껏 하등의 적학한 주이며 정견도 없이 시대의 조류에 따라 기분으로 움직이던 혹 일종의 유행아(流行兒)에게는 일반적으로 가혹한 법문이 억누르며, 모든 사방의 운동가가 과거와 같이 기분으로 움직이지 않고 거의 외양으로는 정적(靜的) 상태에 있으므로 부지불식간에 열이 식을 것도 물론이거니와, 한편으론 교묘한 유인책이 따라올 것도 가히 추정할 수 있는 것이다. 이 시기에는 다소의 위험을 면하지 못할 것이니 소수의 변절분자도 있게 될 것이고, 혹은 극단으로 달려 허무사상을 품게 되는 자도 없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조선의 운동은 현재의 조선인 전체의 처지—민족적 환경—로 보아 일본의 사회운동보다 정치적 의미가 농후한 것은 사실이니, 그 점으로 보아서는 일본의 그것보다 우월하다고 할 수 있다. 현재 일본에서 떠들고 있는 무산운동이나 조합운동이 그 최고의 목적을 달성하고자 함에는 경제적 조건보다 정치적 근본 해결이 있기 전에는 그 이상의 실시가 도저히 불가능인 것은 반복할 필요가 없는 것인바, 조선의 운동선에는 정치적 의미가 농후하다는 것은 당연하다고 할 수 있다. 좌우간 오늘날에 회고하니 우리에게 사회주의운동의 역사는 일천하나 그 실질에 이르러서는 다른 외국의 그것에 비하여 놀랄 만한 장족의 진보를 하였다고 할 수 있다. 오직 문제는 앞으로 무산계급운동에 발 벗고 나선 그네들이 자중하여 많은 수련과 연마를 하여야 하고 그리하여 실제로 조선 전 민중을 움직여 나갈 뛰어난 전위(前衛)가 되기에 충분한 준비를 하여야 한다. 만일 과거의 우리 운동, 즉 기분운동을 가리켜 무산계급운동의 제1보라 한다면 이제부터의 운동은 제2보가 되어야 한다.

〈출전 : 朝鮮의 社會運動, 今後의 趨勢는 如何(사설), 『時代日報』, 1925년 6월 30일〉

13) 원문에는 動자 누락됨.

13) 러시아에 있는 언론의 통제(상 · 하)(사설)

1.

모 신문사에서는 앞서 통속적으로 말하는 러시아, 즉 소비에트사회주의공화국연방에 특파원을 보내 동국(同國)의 사정을 상세히 보도하였다. 그러나 내가 본 바에 의하면 그 특파원이 중요한 문제에는 착목하지 않은 것 같았다. 이는 다름 아니라 이 나라가 ‘프롤레타리아’ 독재 정권을 확실히 유지하기 때문에 반대 정당정파, 혹은 학자, 사상가 등이 어떠한 태도를 가졌는지, 게다가 신문에 대하여 어떠한 통제를 하는 것인가 함이니, 이는 마땅히 먼저 양지(諒知)하여 두지 않으면 안 될 점이다.

2.

물론 이 나라는 자본주의국가의 민주주의와 자유주의와는 본질적으로 상용되지 못하고 따라서 개인의 자유라는 관념도 인정하지 않는 터이니, 소위 언론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와 같은 것은 자본주의의 산물에 불과한 것이다. 사상적 기조까지 다른데, 러시아의 정치적 형식은 고대의 전제국가와 동일하여 일체 개인을 모두 국가의 지배에 복종하게 하였으며, 사상도 국가의 전매이며, 문학도 국가의 전매이며, 예술, 교육도 국가의 전매로 될 것이다.

3.

나는 이에 공산주의를 비판하려는 것이 아니다. 다만 내가 말하고자 하는 것은 이상과 같이 사상적 뿌리로부터 보건대 이 나라에는 내가 가장 중요한 무기로 삼는 언론의 자유가 전연 없다는 것을 논하는 것이다. 전국의 신문 수는 수천에 달하지마는 공산주의에 반대하는 것은 하나도 없다. 정부의 기관지나 공산당 기관의 기사까지도 모두 엄밀한 검열제도 하에 두었다. 다소 정부를 반대하는 색채를 띤 신문은 간혹 있지만 이것이 결코 공산주의를 반대하는 것은 아니다.

4.

러시아에 대한 나의 지식은 물론 자본주의국가의 인쇄물로부터 얻은 것인데, 이와 같은 논점은 러시아 사람들도 이를 허위라고 말하지 못할 것이다. 공산주의의 이론은 명백히 이러한 것을 긍정하는 터이다. 즉 전에도 서술함과 같이 언론의 자유라 하는 관념

은 공산주의국가에서 본질적으로 부정하는 것이니, 이는 다만 자본주의국가에서 인정하는 사회적 공리이며, 자본주의의 특징이다.

5.

그러나 구미의 자본주의국가는 공산주의의 반항에 위협받아 점차 그 정당방위의 수단을 강구하는 경향이니, 오늘날까지의 정치적 투쟁은 말하자면 일종의 유희이다. 유희의 궁정적인 점은 공정한 경기정신이며 관대한 자유사상인데, 자본주의와 공산주의의 대항은 아(我)가 피(彼)를 무너지게 하지 못하면 피(彼)가 아(我)를 넘어뜨림에 이르는 본질적인 적대관계이다. 거기에 진정한 자본주의국가는 공산주의에 대항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니, 한편으로 러시아의 전제정치가 있으면 다른 한편으로는 반대사상의 이탈리아(伊太利) 전제정치를 발견하게 되는 것은 원래 당연한 것이다.

〈이상 (상)〉

1.

최근의 어떤 논자 중에는 소비에트 러시아에 있는 언론의 압박, 집회결사의 부자유라는 현상을 가리켜 대표적으로 잘못된 것으로 간주하는 자가 있으나, 이는 공산주의가 어떤 것인지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

공산주의는 무산계급의 독재전제의 시대를 그 종국의 목적으로 삼는 필연의 과정으로 인식하고 자유라는 관념을 개인주의에 기반한 자본주의국가의 것이라 하여, 이를 부인하는 것이다. 즉 언론의 자유는 영업의 자유라는 사상과 동일하게 개인주의를 인식하는 자만이 이를 주장하는 것이다. 개인주의에 반대하는 공산주의국가가 언론을 억압하고 개인의 자유를 압박하는 것은 추호도 자가당착이 아니고, 그 주의대로 행하는 것이다.

2.

나는 이와 동시에 우리나라의 공산주의자가 앞서 치안유지법에 반대한 것은 곧 모순이라고 생각하니, 그들은 러시아의 정부조직과 사회조직을 동경하면서 유독 언론에 관해서만 개인주의적 자유를 기대하는 것은 불가한 것이다. 즉 극구 통감하는 바의 자본주의만이 가지고 있는 ‘데모크라시’의 자유사상을 차용하는 것이다. 데모크라시는 개인

의 자유를 존중하는 사상의, 즉 언론의 자유를 존중하는 근거가 되는 것이니, 만일 프롤레타리아의 독재전제를 찬양한다면, 러시아와 같이 언론의 부자유도 용인하지 않으면 안 될 것이다. 그러므로 언론의 자유를 고조할진대 일체 전제독재정치에 반대하지 않으면 불가할 것이 아닌가. 환언하면 개인의 자유를 부인하는 공산주의를 방기하지 않으면 안 될 것이다.

3.

러시아의 신문이 자본주의를 선전하고 공산주의를 반대한다면 어떻게 될 것인가. 신문의 존재 여부는 차치하고 기자의 생명까지도 결코 안전하지 못할 것이다. 이것이 공산주의자가 갈망하는 러시아의 정치이며, 또 공산주의의 목적에 적합한 행동이다. 그리고 단순히 언론뿐 아니라 '체카'라 하는 것에 의한 밀정제도는 얼마나 가공할 만한 위협을 인심(人心)에게 가하는 것인가. 재판제의 여하로 독립을 잃었으나 공산주의라는 색채만이 인민에게 물드는 색이 되고, 공산주의라는 사상만이 인민에게 획득될 사상이며, 소위 자유라는 것은 공산주의 범주 안에 있는 자유이니, 그 외에는 절대로 없는 것이다. 그러면 이것이 우리나라에 있는 공산주의자의 이상으로 되지 않고서는 불가할 것이다.

4.

즉 무산주의자가 그들의 국가조직 아래서 다소 부자유함을 받는다 함은 결코 저들의 고통을 말함이 아니니, 저들의 생명과 재산이 보장되어야 반국가적 사상의 선전까지 어느 정도 큰 안목으로 보는 것은 저들이 반대하는 자유사상의 덕택이 아닌가. 또는 자본주의국가의 은택이 아닌가. 그러나 미국(米國)과 같은 민주국가에서는 공산주의에 대하여 각반의 준열한 수단으로 압박을 가하여 근본적으로 퇴치하는 중이니, 이는 공산주의가 민주주의와 본질적으로 상용되지 못하기 때문이다. 말하자면 이것이 정당방위이니 일본의 치안유지법도 이와 같고 또한 국가조직의 근본에 위협을 주려는 공산주의에 대하여 정당방위의 수단을 고집함에 불과한 것이다.

〈이상 (하)〉

〈출전 : 露國에 在한 言論의 통제(上, 下)(사설), 『毎日申報』, 1925년 9월 11~12일〉

14) 치안유지법에 관한 긴급처령안(사설)

1.

문제의 치안유지법 개정안은 과반의 특별의회에서 (1) 야당의 반대와 (2) 내각 불신임 안 저지를 위한 정부 및 여당의 정략적 정회(停會)와 휴회로 인하여 드디어 내각 불신임 안과 같은 모양으로 심의 미료(未了)로 끝나고 말았다. 그런데 현 내각은 특별의회 폐회 후 얼마 지나지 않아 이를 긴급처령안으로 할 의사를 발표하였다. 긴급처령안설이 나오자 일로당(日勞黨), 민중당(民衆黨) 등 단체와 제 언론기관은 물론, 같은 정부 부내의 정무관회의에서까지도 “인명에 관한 형벌을 긴급처령으로써 개정하는 것은 헌법 실시 이래 전례가 없는 바라. 위헌과 의회부인론으로써 오는 의회에는 반드시 문제가 야기되리라” 하여 반대자가 다수를 차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다나카(田中) 내각은 특별의회 제출안 내용을 다소 수정하여 18일 각의에서 이를 단행긴급처령안으로 제정하기로 결정하고, 즉시 상주(上奏), 추부(樞府) 자문(諮詢)의 수속을 취하였다고 한다.

2.

이제 18일 결정의 입안과 지난번 특별의회 제출안을 비교하면, (1) 내용에 있어서 사유재산의 부인을 목적으로 결사를 조직하는 데 관한 조항을 전부 삭제한 것이 첫째 주목할 바요, (2) 형식에 있어서는 전에는 이를 법률로 하려던 것을 헌법 제8조에 의한 긴급처령안으로 하되, 이를 단행처령안으로 하여 현행 치안유지법 제1조의 개정안이 아닌 것을 표명한 점이 둘째로 주목할 점이다. 이렇게 사유재산 부인에 관한 조항을 삭제한 중요 이유의 하나는 이 안을 현행 치안유지법과는 독립된 단행처령안으로 할 필요가 있는 까닭이다. 그렇다면 그 필요가 어디에 있는가 하면, 이번 긴급처령안을 순전히 치안유지법의 개정안으로 제정, 공포하게 되면 현행 치안유지법 제1조는 효력을 상실하게 되고 마는데, 오는 의회에서 만약 이번 긴급처령안이 승인을 얻지 못하게 되면 둘 다 실효(失效)하고 말게 되는 폐단이 생기는 까닭이다. 이제 그 폐단을 예방하는 것은, “만약 긴급처령안이 의회의 승낙을 얻지 못하게 되면 현행 치안유지법은 효력을 부활한다.”라는 의미의 문구를 긴급처령 중에 삽입하였다면 쉬웠겠지만 이제 와서 그렇게 할 수도 없기 때문에 입법기술상의 연구를 거듭한 결과, 드디어 이를 단행안으로 하는 묘법을 안출한 것으로 보인다.

3.

다음 이 안이 현행 치안유지법 제1조와 다른 점을 말하면, (1) 사유재산제도 부인에 관한 것을 뺀 것, (2) “결사를 조직한 자” 외에 “결사의 역원(役員), 기타 지도자의 임무를 담당한 자”라는 한 구절을 첨가한 것, (3) “결사를 조직한 자”와 “정(情)을 알고 결사에 가입한 자”를 별도의 조로 규정하여 형별에 차이를 둔 것, (4) “정을 알고 결사에 가입한 자” 외에 “결사의 목적 수행을 위하여 유리한 행위를 한 자”까지도 첨가한 것이며, (5) 형별에 있어서 다른 점은 긴급처벌 제1조는 징역 또는 금고의 최단기를 5년 이상으로 하여 그 아래로 못 내려가게 하고 위로는 현행 치안유지법의 최장 10년을 그 이상 무기, 사형에까지 연장하고, 제2조에 있어서도 역시 2년 이하로 못 내려가게 최단기를 제한하는 동시에, 위로 이를 유기까지 연장한 것 등이다.

4.

여하간 이미 정부로서 취할 모든 수속을 다 마쳐 가고 있는 이 안이 확실히 단행긴급처벌안으로 공포되고 안 되고는 다만 자문기관인 추부의 태도에 달렸다. 자세히 말하자면 지난해 3월 전 와카즈키(若槻) 내각의 2억 원의 대만융자긴급처벌안 모양으로 추부의 반대를 받으면 실현되지 못하고 말 수도 있다. 약규 내각이 그것으로 인해 사직한 전례를 보면 이 안의 추부 통과 여부는 적어도 현 내각의 체면에 중대한 관계가 있는 것으로 볼 것인즉, 혹은 결정 전에 미리 내안(内案) 교섭으로 추부 측의 양해가 충분히 성립되었는지는 모르나, 적어도 (1) 교육, 기타에 의한 사상선도(思想善導), (2) 더구나 발본색원적인 사회정당 등에 관해서는 별반 시설이 없이 다만 엄벌, 탄압만으로 능사를 삼으려 하여 긴급하지도 않은 것을 긴급히 구는 반동적 시책에 대해서 추부까지도 찬성할지 이 것이 우리의 주목할 바라 한다.

〈출전 : 治維에 關한 緊急勅令案(사설), 『東亞日報』, 1928년 5월 20일〉

15) 각 방면에서 반대하는 치안유지법 긴급처령안(기사)

- 국체변혁을 목적한 결사 지도자에게는 사형 또는 무기징역

국체 변혁 처벌에 관한 건의 긴급처령안은 18일 각의에서 결정하고 곧 상주(上奏)하여 자문의 수속을 취하였는데 처령안 내용은 아래와 같다.

제1조 국체 변혁을 목적한 결사를 조직하는 자, 또는 결사의 역원(役員), 기타 지도자
의 임무를 담당한 자는 사형 또는 무기나 5년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에 처함.

제2조 그 뜻을 알고 전 조(前條)의 결사에 가입한 자, 또는 결사의 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행위를 위한 자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금고에 처함.

제3조 전 2조의 미수죄도 이를 벌함. (동경 전)

추밀원(枢密院)이 반대, 의회 권능을 무시한다고

치안유지법 개정에 대하여 추밀원 측의 의향은

- 치안유지법 개정안이 과반의 특별의회에서 매장(埋葬)된 사업
- 오는 의회가 금후 반년 안에 개회됨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어떠한 사정으로 긴급처령 공포의 필요를 인정하였는가?
- 만약 정부로서 긴급처령의 방법에 의해서까지 치안유지법의 개정을 단행치 않으면 안 된다면 특별의회에서 어째서 심의의 촉진, 또는 회기 연장을 하지 않았는가?
- 신민(臣民)의 권리와 의무에 관한 중대사항이므로 긴급처령에 의함은 헌법정신에 서 인정하지 않는 바이며, 만약 이를 인정하면 의회의 권능을 경시하고, 그리하여 헌법정치가 파괴될 우려가 있다는 등의 이유로 크게 반대하는 중이더라. (동경 전)

귀족원(貴族院)도 반대

정부가 긴급처령에 의하여 치안유지법 개정을 하려는 근본방침이 결정되었음에 대하여 귀족원 대다수는 반대 의향을 가졌는데, 그 이유는 아래와 같다.

1. 정부는 헌법 제8조 동(同) 제70조에 의하여 이번 긴급처령 공포가 위헌이 아니라는 논리를 주장할지 모르나 이것은 의문이다. 만약 치안유지법을 개정하기 위해 긴급처령까지 운용하여야 할 형편이면 어찌 특별회의의 회기를 연기하지 않았는가?

2. 긴급처령의 본질은 잠정적 효력에 있으므로 이를 공포할 시는 최소한도의 경과에 만 제한될 것이므로 함부로 공포할 수는 없다. 또 동령(同令)은 법률을 폐지하는 효력이 있으므로 만약 함부로 공포한다면 인민의 권리 보장이 불완전에 빠지기 쉬운 민사(民事), 형사(刑事)에 관한 중대한 사항을 신중히 고려할 필요가 있으므로 오는 의회를 기다리는 것이 당연하며, 또 법률정신 해석과 헌법 운용상 긴급처령에 의함은 인정할 수 없다.

〈출전 : 각方面에서 反對하는 治維法緊急勅令案, 『東亞日報』, 1928년 5월 20일〉

16) 국체변혁 엄벌주의(사설)

특별의회에서 심의 미료(未了)로 마친 치안유지법 개정안은 이달 18일 각의(閣議)에서 현행 치안유지법과는 독립된 단행긴급처령안으로 공포하기로 결의되어 추밀원(枢密院)에 자문할 수속을 취하게 되었다. 그러므로 이 단행긴급처령안이 추밀원을 무사통과하면 법률의 효력이 발생할 것이다. 이 긴급처령안은 본지에 이미 보도한 바와 같거니와 그 가운데 가장 중요한 조문은 제1조인 “국체 변혁을 목적으로 한 결사를 조직하는 자, 또는 결사의 역원, 기타 지도자의 임무를 담당한 자는 사형, 또는 무기나 5년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에 처함”이다. 문자 그대로 이 긴급처령안은 인명에 관계되는 것이므로 그 와 같이 중대한 법률을 긴급처령으로 공포함이 부당함에는 일본 언론계는 물론, 민정당(民政黨)과 그외 무산당(無產黨)에서도 상당히 많은 반대가 있다.

만일 특별의회에서 정부의 엄벌주의에 의한 치안유지법 개정안이 심의 미료로 끝났다면 그 법안은 오는 의회까지는 소멸된 것이다. 환연하면 국민의 대표의사는 그 법안을 임시 소멸시킨 것으로 볼 수 있다. 이와 같이 국민의 의사를 무시하고 정우회(政友會)정부가 그것을 긴급처령안으로 법률의 효력을 발생시키려 함이 과연 비입헌적 행위가 아니라 할 것인가? 뿐만 아니라 현 정부가 만일 치안유지법 개정안을 긴급처령안으로 공포하지 않으면 안 될 만큼 그렇게 중요성을 띠고 있는 것이라 하면, 특별의회의 회기를 더 연장해서라도 국민의 대표의사에 물어야 할 것이거늘 한갓 어찌하든지 특별의회의 난

관을 지나기만 하면 그만이다 하는 주의로 그와 같이 중대한 법률안을 심의 미료인 상태로 종료하였다 할 때, 그 누가 정우회를 가리켜 정치에 성의 있는 정당이라 할까?

이제부터 문제가 되는 것은 긴급치령안의 내용이다. 현재 국체를 진리로 알고 그 국체를 고수하겠다는 조건하에서는 국체 변혁을 목적하는 일체의 결사를 처벌하려 함에 논리상 모순은 없다. 그러나 그 별의 정도가 죄와 균형을 이루지 못하고 지나치게 가혹하면 도리어 국가, 사회에 불리한 결과를 초래하지 않을까 하는 의심이 있다. 왜냐하면 문제의 운동과 같은 것은 역사에 의하여 보건대 대개는 지식계급의 운동이어서 만일에 사형과 같은 엄벌을 가한다면 범죄자의 범죄수단은 더 심각하고 교묘해져서 의외의 대사단을 야기할 염려가 있는 것이요, 또 결사의 자유를 극도로 구속하면 그 대신 비밀결사가 많아져서 관헌도 그 단속에 곤란할 뿐만 아니라 이러한 비밀결사가 의외로 어떠한 사단을 일으킬지도 모를 일이다. 이와 같이 사고하면 엄벌과 중형주의는 도리어 사회의 불안을 가중시킬 뿐이다. 따라서 치안유지법을 개정하여 사회의 치안을 더 견실히 하자는 근본정신과 상용치 못하는 점이 있지 않을까. 시정자가 신중히 고려하지 않으면 안 될 문제이다.

그러므로 정부로서는 우선 긴급치령안을 내리지 않으면 안 될 그 이유를 천하에 공표하는 동시에 정부는 엄벌주의와 함께 사상은 사상으로써 퇴치하겠다는 이상적 방법을 채용함이 어떨까 한다. 인간의 사상을 바로잡는 방법으로는 사실에 있어 별도 유효하나, 사상은 사상으로써 퇴치하겠다는 수단도 별 이상의 효력을 발생시키는 일이 있음은 인류의 사상사에서 누누히 발견할 수 있는 일이다. 이단교(異端教)로 몰린 신자가 화형이란 무서운 별 앞에서도 종교, 신앙을 포기하지 않음은 인간의 사상이 그 얼마나 굳은 것인가를 응변함이다. 그와 반대로 루터 같은 종교개혁자가 재래의 구교에 신교로써 대항하여 사상을 사상으로써 정복함과 같은 것은 사상의 위력을 표시하는 사적 고증이다. 그러므로 정치당면에 서서 사상을 취체하는 자는 과거의 이러한 역사적 사실을 고찰하여 치안의 임무에 적용해야 할 것이라 한다.

〈출전 : 國體變革 嚴罰主義(사설), 『中外日報』, 1928년 5월 21일〉

17) 치안유지법 개정안의 추부(樞府) 통과(사설)

치안유지법(治安維持法) 제1조의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에 처함이라는 형벌을 사형 또는 무기 혹은 5년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라는 중형으로 하는 치안유지법 개정의 긴급처령안은 28일 추부회의를 통하여 발표 당일로써 적용 실행하게 되었다 하며 이는 의례히 조선에도 적용, 실행될 것이라고 한다.

동(同) 개정안을 긴급처령으로써 발표함에 대하여는 그 내용과 수속에 대하여 많은 반대를 본 바이니 그 여러 예를 들면 일본농민당(農民黨)과 전농간사협의회(全農幹事協議會)는 이에 대한 성명을 발표하여 말하길, “다나카(田中) 반동내각은 이번에 저 공산당 사건을 빌미로 대중의 의사를 묵인하며 헌법을 무시하고 편히 치안유지법의 개악에 광분하여 단순한 사상 범죄에 대하여 사형이라는 최대 중한 극형으로써 임하고자 한다. 우리는 우리나라 현하의 사회정세에 비추어 이러한 개악법의 출현에 대하여 단연코 반대하는 바이다. 추밀원(枢密院) 본 회의는 당연히 일회일치(一會一致)로써 이를 부결하고 정부는 속히 임시의회를 소집하여 여론의 귀추에 주목해야 할 것이다”라고 하였으며 민정당(民政黨)의 □무회는 그 수속에 대하여 동 법은 긴급처령으로 발표할 성질이 아님을 지적하여 추부의 반성을 촉구한 바 그 결론에 말하길, “(전략) 이번 □□된 것은 의회 폐회 후 50일이 경과하였고 추부에 □□된 지 이미 2주가 경과한 사실이 명백한 증거이다. 이미 긴급의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고 임시의회를 소집할 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이상 긴급처령에 의할 것이 아니라는 결론에 도달한다. 추부가 헌법의 옹호자이면서 이 결론을 회피하고자 함은 그 의사의 소재를 해석할 수 없다”고 하였다.

그러나 “동안(同案)은 필경 추부를 통하여 □□□□을 보게까지 되었다. 동 추부는 인권에 관한 지중지대한 법률을 개정함에 있어 의회의 의론에 맡길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부러 이를 피하였고 호헌의 책임이 있는 추부 역시 헌법의 본래 정신을 보아서 당연히 도달할 바 의론을 회피하였다고 하는 것이 적어도 정부□□을 제외한 일반의 여론이라고 볼 것이다. 그리고 이 통과에 대하여 대법시사와 같은 □□□□로써 필연 통과하였다 하면 정우회(政友會)의 대부분을 제외하고 그밖에 전 국민 정치사회의 추밀원에 대한 반감은 더욱 심화되어 추부무용론도 더욱 그 세력을 얻게 되리라”고 단언하고 있다.

이상에 의하여 동 법안이 얼마나 비난받고 있는가는 짐작할 수 있는 바이거나 원래 사상 범죄와 폐단이 다만 중형을 과하는 수단에 의해서 절멸될 것이라는 견해는 도저히 상식으로 이해할 수 없는 것이니 법률은 범죄인의 행동은 움직일 수 있으나 그 정신을

변화시킬 수는 없다. 국가와 사회가 참으로 우려할 바는 그러한 범행보다도 그러한 범행을 하게 된 원인과 동기에 있을 것이니 현명한 위정자로서 어떠한 사상이나 행동이 위험한 것이라고 잠정할 때에는 반드시 먼저 그 위험이 초래된 바에 대하여 잠심구명(潛心九命)함이 없으면 안 될 것이다. 소위 치안유지법에 적용될 종류의 사상과 행동의 원인에 대하여는 내가 여기서 논하고자 하지 않거니와 다만 위정자로서 크게 반성할 필요가 있음을 지적하여 두는 것이다.

〈출전 : 治維法改正案 樞府通過(사설), 『中外日報』, 1928년 6월 30일〉

18) 치안유지법 개정에 대하여(사설)

1.

논의가 구구하던 치안유지법 개정법안은 추부위원회(樞府委員會)에서 5 대 3으로 가결되었고 27일부터 개회된 추부본회의에서도 다소의 파란은 있었다 할지나 결국은 대다수로 통과되어 다음달 초부터는 그 실시를 보게 될 형편이 되었다. 이 법안이 긴급칙령에 의하여 실시되는 것에 대해서는 각자가 금일의 국정을 고찰하는 관점에 따라 찬반을 다르게 하게 될 터이다. 과연 금일의 국내실정이 긴급칙령에 의하지 않을 수 없을 만큼 절박하게 되었는지에 대해서는 책임의 지위에 있는 정부 당국자의 고찰과 설명을 믿고 따를 수밖에 없으므로 다만 이를 □□으로 생각할 뿐이다. 그리하여 국정이 이렇게 절박하게 됨에 대하여 이를 다만 엄벌주의에 의하여 처리하려 함은 본말전도의 □□라 할 것인즉 마땅히 발본색원(拔本塞源)의 방법을 강구하여야 할 것임은 추부위원회의 희망을 위시하여 일반 지식인이면 누구나 절감하는 바라 할 것이다. 그러나 시국에 의하여 발생하는 사상적 경향에 대하여 형벌의 엄준함으로써 이를 방지하거나 선도하려 함은 오히려 그 사상을 음험화(陰險化)하게 하며 심각하게 하여 방지는 고사하고 □화□시 할 뿐이라. 그러나 이 법의 실시에 반격을 행함은 정부 당국자의 감독에 반대하여 반대를 시도하는 자, 또는 화심(禍心)을 품은 자 등의 비명에 불과한 것이라 말하지 않을 수 없다.

2.

물론 사상은 사상으로써 선도하며 사상으로써 극복하여야 할 것이다. 그러나 국가로서 상별이 분명하지 못하면 선악의 표준이 확립하지 못하고, 선악의 표준이 확립되지 못하면 민중으로서 따라갈 바를 알지 못하게 될 것이다. 민중이 따라갈 바를 알지 못하는 사회에서 건전한 사상의 발육을 기도하려한들 가능할 것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인가. 농작물 육성을 양호하게 함에는 물론 종자의 선택, 시비(施肥)의 적당, 배양의 주도(周到)가 필요하다. 그러나 이와 동시에 잡초의 만연을 제거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종자가 얼마나 양호하며 그 시비가 얼마나 적당하며 그 배양이 얼마나 주도한다 할지라도 결코 그 발육의 양호를 바라기는 어려울 것이다. 농부의 □□이어니와 농사의 본말을 전도하는 소위 □하는 자 그 누구라 하는가. 건전한 사상을 유도, 발육하기 위하여 불량한 사상에 제재와 탄압을 가함은 마치 농부가 농작물의 원만한 성장을 위하여 잡초에 □□의 형을 가함과 같은 것이다. 이에 비난과 공격을 가하여 함은 농부의 제초를 비웃는 어리석은 자의 소행이 아니면 농작물을 □하는 잡초의 처지에 있는 자의 비평이라 말하지 아니 할까. 만일 우리 인류의 선행미사와 사회의 미풍양속이 다만 이를 유도 계발하며 지도 유액(誘夜)¹⁴⁾함에만 의하여 이루어진다 하면 자고로 형벌이 필요하지 않았을 것이다. 그러나 우리 인류사회의 형상은 극히 복잡하여 형벌이 아니면 그 질서를 유지하기 어려우며 그 진보를 기대하기 어려운 것은 인류 발달의 사실(史實)이 증명하는 것이다. 그리하여 그 형벌은 그 시대의 사회상에 의하여 때로는 관대하고 때로는 엄중한 상태로 그 효력을 법률화하게 되는 것이다. 만약 그것이 그 사회상에 대하여 관엄(寬嚴)¹⁵⁾에 마땅함을 가지지 못하고 경증의 균형을 잃는다면 그 사회의 불행을 알기 어렵게 될 것이다.

3.

혹자는 치안유지법 실시로 사상계가 이 법의 발포 실시 전에 비하여 도리어 심하게 악화된 재래의 경험에 비추어, 지금 또다시 이를 개정 엄준하게 하는 경우에는 더욱 사상이 극심하게 악화되리라 말하는 자도 있다. 그러나 이 자는 심히 그릇된 생각을 하는 것으로 그 □하는 바의 사례는 도리어 치안유지법 개정의 필요를 가장 명백히 증좌하는 것이라 할 수 있지 않을까 한다. 즉 사상계가 혼란하여 치안유지법을 실시하게 되었으므로 해법이 제정, 발포된 것이요, 또 이 법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악사상의 만연이 점

14) 남을 이끌어 도와준다는 뜻.

15) 너그럽고도 엄격함을 뜻함.

점 심하게 되므로 지금에 다시 이를 개정하지 않을 수 없게 된 것을 실제로 증명한 것이라 할 수 있지 않을까 한다. 물론 사상계가 점점 악화되어 이 법의 필요를 발견하게 되고 또 이를 개정하여 엄준하게 하지 않을 수 없게 됨은 실로 유감이지만, 위정자와 일반인으로서 발본색원의 봉쇄책을 수립하는 것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나 현재 □□한 현실에 대해서는 그에 □□한 봉쇄책을 강구하지 않으면 안 될 것이다. 사회에 발생하는 나쁜 경향에 대하여 그가 사상적 여부는 막론하고 다만 형별로만 이를 방지하려 함은 결코 근본 치료책이 아니라 할 것이다, 이에 형별로써 임함이 도리어 그 경향을 □장(□長) 악화한다 함은 도저히 수긍하기 어려운 잘못된 견해이다. 한편으로 이의 근본 원인을 제거할 시설을 가하는 동시에 다른 한편으로는 형□(刑□)을 명백히 하여 그 만연을 금지하는 것이라야 처음으로 뜻한 바 효과를 거두게 될 것이다.

〈출전 : 治維法 改正에 對하여(사설), 『毎日申報』, 1928년 6월 29일〉

19) 조선독립운동과 치안유지법 적용 문제, 치안유지법 · 제령위반 · 보안법의 차이점, 마츠데라(松寺) 법무국장 담(談)

다나카(田中) 내각에서 만든 치안유지법에 대한 긴급칙령안은 각 방면에서 반대의견이 많았으나, 결국은 추밀원(枢密院) 위원회를 통과하여 본회의에 부의되어 27일부터 장시간의 토론이 있었으나 결말을 내지 못하고 28일 오전 10시부터 다시 회의를 개최하고 토의 중이다. 그 결과 여하는 아직 미상하나 장차 실시될 운명에 빠진 것은 일반이 추측하는 바이며, 이것이 실시되게 되면 물론 조선에도 시행되리라고 한다. 그 법령의 내용은 국체 변혁을 목적으로 하고 결사운동을 하면 주모자는 사형 혹은 무기징역에, 관계자는 5년 이상의 징역 혹은 금고에 처한다는 엄중한 것으로, 이것이 실시된다면 조선독립운동자의 정치운동에 대하여 1919년에 제정된 제령 제7호(10년 이하의 징역 혹은 금고)와 어떠한 관계가 있게 되는가 하는 것이 문제가 된다. 이에 대하여 마츠데라(松寺) 법무국장의 말을 들으면, 다음과 같다.

“제령 제7호는 정치운동에 대한 것이요, 치안유지법은 국체변혁운동에 대한 것이므로 법률의 목적이 다르다 할지나,

국체 변혁 해석 국체라는 것은 주권, 민중, 국토의 삼자를 통칭한다는 것으로 사법성

과 내무성 사이에 의견이 일치되었으므로 만일 독립운동자가 결사를 하여 가지고 조선을 일본으로부터 이탈시키고자 하는 운동을 했다면 그 주모자는 당연히 치안유지법에 의하여 처벌될 것이다.

제령 위반범위 제령 위반은 쉽게 말하자면 그보다 가벼운, 예를 들자면 결사를 하지 않고 만세를 부른다든지, 선전문을 배포한다든지 하는 자를 처벌하는 것이며, 단독으로 했다면 보안법 위반으로 처벌할 것이다. 만일 관청폭파, 살인 같은 행동으로 그 목적이 독립에 있다 하면 물론 치안유지법에 걸릴 것이다.”

〈출전 : 朝鮮獨立運動과 治維法 適用 問題 『東亞日報』, 1928년 6월 29일〉

20) 치안유지법의 실시와 금후의 조선사회운동(1925)

당국의 단속이 어느 때에나 법령이 없어서 못한 것이 아니요, 세상의 어떤 일이나 운동이 일편 법령 때문에 좌우되는 것도 아닌바, 이번 치안유지법 실시에 대해서도 우리가 새삼스럽게 문제 삼을 것도 없지만 이런 기회에 한번 이야기나 하고 지나가는 것쯤은 피차에 괜찮을 듯 싶어서

1. 조선 사회운동의 향후 추세 여하
2. 조선 사회운동의 향후 방침 여하
3. 조선의 사회운동과 민족운동의 향후 관련 여하

라는 세 가지 조건을 들어 사회운동, 또는 언론계에 나선 몇 분에게 의견을 물었다. 그런데 그 말됨이 원체 거칠고 또 듣고 적는 말이 되어서 그이의 말뜻을 다 전하지 못하는 것이 유감이다.

조선노농총동맹(朝鮮勞農總同盟), 권오설(權五鵠)

1. 치안유지법이 실시됨에 따른 조선 사회운동의 추세. 이 법이 조선에도 실시될 만큼 사회운동이 격렬함을 증명하는 것이 올시다. 운동이 격렬하여 가는 것은 결코 일부 운동가의 활동만으로써 그렇게 된 것이 아니요 대중의 생활과 또한 온갖 사정이 운동을 금 일에 이르게 한 것이 올시다. 대중이 자각함에 따라서 운동이 격렬하여 감은 사회진화의

필연적 법칙에 기인함인즉, 어찌 치안유지법 그것으로 대세를 막을 수 있겠습니까. 보시오, 저 흐르는 물을! 아무리 거대한 암초가 있다고 흐르는 물이 흐르지 않겠습니까. 앞에 장애물이 있으면 있을수록 파고는 더욱 격앙될 것이올시다. 향후의 우리 운동은 저 흐르는 물과 같이 더욱더욱 힘 있게 진전되리라고 단언합니다.

2. 향후 운동의 방침. 치안유지법이 실시된다고 무슨 다른 방침이 있겠습니까. 원래 노동운동이나 농민운동은 조합을 많이 조직하는 데 있고 조합의 조직은 각각 당면문제의 해결에 골자가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소작료를 낮추지 않으면, 노동임금을 인상하지 않으면, 도저히 생활할 수 없다는 것으로써 유일의 목표를 삼는 것이요, 결코 사유재산 제도를 부인한다거나 공산주의를 실시하자는 것이 아닌 이상, 치안유지법으로 말미암아 조합의 조직에는 하등 미치는 영향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현하 노농단체 중 선언과 강령으로 보면 조금 막연한 것이 없지 않습니다. 이와 같은 것은 구체적으로 실지 운동에 적합하도록 고치게 되는 동시에 점차 선전적 기분운동에서 실지운동으로 나아가게 될 것이올시다.

3. 민족운동자와의 관련. 종래의 제령 제7호는 민족운동자를 눌러왔고 이번 치안유지법은 사회운동자를 막 누르게 될 것인즉, 같은 압박을 받는 처지에 있어서 양 운동자는 접근하게 될 일치점이 많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조선청년총동맹(朝鮮青年總同盟), 이영(李英)

1. 사회운동은 생산계급의 생존권획득운동이므로 법률로 인하여 좌우될 운동이 아니 올시다. 다만 일부 부허(浮虛)한 기분만은 어느 정도까지 영향을 받을지 모르겠으나, 본체운동에 있어서 영향을 받는다면 도리어 정치상으로는 단계를 진화한 조직적 운동을 촉성케 될 것이올시다.

2. 현재에 있어서 우리 운동의 방침을 구체적으로 표명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이 악법이 어떠한 압박을 가한다 할지라도 마르크시즘의 본령을 벗어나지는 않을 줄 압니다.

3. 타협적인 안인 민족운동과 제휴한다는 것은 우리 청년총동맹에서 이미 선명한 바입니다. 그러므로 여하한 법령이 실시된다 할지라도 이 원칙에 의하여 양 운동은 진전될 줄로 압니다.

신흥청년동맹(新興青年同盟), 조봉암(曹奉岩)

1. 치안유지법이 실시되기만 하면 사회운동은 근절되거나 위축되리라고 부르주아지는 떠들며 이에 대하여 최후의 기대를 가지고 무한히 기뻐합니다. 그들은 이러한 특이한 법망으로써 능히 역사적 사실이 증명하는 사회운동을 막을 수 있는 줄 압니다.

그러나 사회운동은 다수 민중의 대중적 생활운동이니 곧 노력군중의 생활의식의 약동입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역사적 필연의 산물인 대중의 생활운동은 어떠한 것으로도 막을 수 없으니, 만일 힘으로써 이 운동을 막으려 한다면 과연 어리석은 시험이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비스마르크가 공산주의 박멸정책을 쓰는 독일의 오늘은 사회운동이 더욱 맹렬하며, 파시스트 반동파운동이 격렬한 이탈리아에도 사회운동이 끊이지 않는 형세입니다. 입법자의 정신은 요컨대 사유재산을 부인하고 국체 변혁을 목적으로 하는 비밀결사를 단속함에 있다 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다만 일반 단속자에게 단속의 범위 및 방법을 명시함에 그칠 뿐이요, 사실에 있어서 대중운동의 실질에 대하여는 하등의 영향이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단속방법이 특수해짐에 따라 운동의 전술 또한 특이한 형태로 전개될 것입니다. 어느 나라를 막론하고 사회운동은 자본주의 발달 여하에 의하여 결정되는 것이니 자본주의의 공세가 만일 평화적이면 사회운동 또한 평화적 형태로 나타날 것이요, 이와 반대로 자본주의의 공세가 발달하는 것입니다.

2. 사회운동 전선이, 전위부대의 결속이 운동의 제일보라면 이 결속된 소수부대는 대중 속에서 민중을 움직이게 해야 될 것이니 곧 민중을 움직이게 하는 방법을 배워야 할 것입니다. 민중을 움직이게 함에는 무산계급의 당면한 문제를 적확히 관찰하여서 분투할 것입니다. 그리하여 종래의 운동자 대 운동자의 운동을 떠나 민중이 움직일 현실적 운동의 진로를 취하여야 될 것입니다. 이로써 운동의 전선은 점차 확대되고 따라서 현실에 입각한 실제 운동이 될 것입니다.

3. 사회운동과 민족운동의 관계는 더욱 밀접해질 것이니 운동을 근절하려는 가혹한 법령이 제정될수록 운동자 간의 관계가 종래의 관계보다 더 절실해질 것은 필연의 형세입니다. 반대편을 대항하기에 협력이 필요함은 물론이요, 당면에 있어서 양대 운동은 협동전선을 구성할 여러 가지 일치점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민족운동 중에는 타협적 운동을 배척하지 않으면 안 될 것을 말하여 듭니다.

서울청년회(青年會), 이정윤(李廷允)

1. (가) 법률의 제재로 인하여 사회운동이 침체되거나 저지될까요? 만일 그렇다 하면 러시아의 알렉산더 황제 1세나 독일의 비스마르크공 등이 사회운동을 진압하기 위하여 반세기 이전에 실시한 법령 때문에 벌써 천하는 그들 뜻대로 결정되어 오늘날 일본에도 이러한 법령이 불필요하게 되었을 것이외다. 그리고 오늘날 새삼스럽게 사회주의소비에트연방공화국과 요고사무라이 제국의 수교조약이니, 헨덴부르히 대장 대 공산당원 체르만 씨와의 대통령의자쟁탈전이니 무엇이니 하는 나대동(裸大童)의 각희(脚戲)¹⁶⁾와 같은 소동은 없었으리다. 좌우간 이 법률이 실시된 결과 사회운동은 일면으로 침울한 기세가 없지 않을 수 없으나, 그 반면에는 운동이 심화되어 사회적 강풍이 부는 대로 귀추하는 강기압의 긴장을 보게 될 것이올시다.

(나) 향후로는 지류운동이 성행하게 될 것이올시다.

2. 손실을 적게 하고 이익을 많이, 또는 급속도로 얻기 때문에 당분간은 될 수 있는 대로 운동선의 내부정리와 통일에 노력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올시다.

3. 진정한 의미의 조선 해방을 위하여 민족주의와 사회주의는 도저히 양립할 수 없으나 양 운동이 조직화해갈수록 양 운동은 정치적으로는 협동전선을 취하지 않을 수 없게 될 경우도 있을 것이올시다.

화요회(火曜會), 김찬(金燦)

사회운동의 향후 추세. 과연 어떠하리라고 단언하기는 어렵습니다만 신문이나 혹자들이 예측하는 바대로 기성단체 중 50단체가 해산된다거나 가혹한 압박으로 이후 사회운동이 침체하리라 운운하는 것과 같이 나는 생각지 않습니다. 도리어 나는 낙관하고 싶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인간이란 누구나 사물을 접할 때에 그 사물을 판단함에 필요한 지남차(標準)를 가지지 못하면 공연히 공포를 느끼며 자기 힘닿는 대로 함부로 덤비게 되는 것이올시다. 그런데 재래의 조선이나 일본에는 신흥하는 운동을 취체할 법률이 없었기 때문에 경찰 당국자의 의사대로 취체하였습니다. 신이 아닌 사람으로서는 누구나 절대로 과실이나 오해가 없을 수 없겠지요? 하물며 몰상식하고 어리석다고 모두가 공인하는 경찰 당국자로서 더욱이 급전직하(急轉直下)하는 신사조와 또 신흥하는 운동에 대하여 아무 이해와 지식을 가지지 못한 그네들이 일정한 법적 표준도 없이 자기네들의

16) 별거벗은 큰 아이가 씨름하는 것과 같은 현상을 비유함.

의사대로 함부로 해산, 금지, 검거를 자행하였으므로 우리 사회운동은 실로 많은 타격과 박해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번 실시되는 치안유지법은 그 입법의 정신은 물론이요, 그 조문을 보더라도 국체 변혁과 사유재산을 절대 부인하려고 결사하는 것을 취체함이 명백합니다. 다시 말하면 공산주의자나 무정부주의자의 비밀결사를 취체하는 법안입니다. 그런데 조선에서 재래의 사회운동단체, 즉 노총(勞總), 청총(靑總), 각 사상단체, 기타 청년, 형평(衡平), 여성 등 단체가 공산주의자나 무정부주의자들의 비밀결사가 아닌 것은 더 말할 여지도 없는 사실이 아닙니까. 그러므로 나는 이제부터는 재래에 금지되었던 모든 집회가 해금될 것은 물론이요, 국체 변혁, 사유재산을 절대 부인한다는 언론 이외의 언론에 대하여 기왕과 같이 무리하게 중지, 금지나 또는 압박을 하지 않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나는 향후 사회의 추세가 더욱 대중적으로, 표면으로 발전하게 되리라고 예측합니다. 과연 어떻게 될까요?

2. 사회운동의 향후 방침. 아마 사회운동의 향후 추세에 순응하게 되겠지요. 그렇다면 강연, 강좌 연설회 등 기타 각종 대회를 수시로 개최하며, 출판도 다수 발행하고, 또는 우리 무산계급의 기념일마다 대시위운동을 하는 등 선전, 훈련, 시위를 하는 동시에, 우리의 전위대는 산병전(散兵戰)을 시작하여 농촌으로 공장으로 광산으로 들어가서 조합을 조직하며 훈련하여 가지고 우리 무산계급의 당면을 위하여 투쟁하는 것이 우리의 취할 방침이 되겠습니다.

3. 사회운동과 민족운동과의 향후 관련. 더욱 밀접해지는 동시에 질을 엄중히 선택하리라고 생각합니다.

사회주의동맹(社會主義同盟), 김해광(金解光)

1. 사회운동의 향후 추세 여하. 치안유지법 실시로 인하여 그렇게 주목할 신추세가 오리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치안유지법이 사회운동을 압박하는 법안인 것은 사실이나 그것이 무산계급이 요구하는 최후의 목표를 변경시킬 수는 없을 것입니다. 더욱이 현재 조선 무산 민중의 요구를 변경하게 하기에는 전혀 불가능할 것이외다. 그 때문에 조선 사회운동의 이후 형세는 치안유지법이라는 악법과 항쟁하면서 현세를 지지하여 나갈 것입니다.

2. 사회운동의 향후 방침. 이때까지는 순전히 사상 선전의 운동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부터는 ‘단결과 조직’에 치중하며 경제상, 또는 기타 이해문제에도 다소간 고려하려 합니다.

3. 사회운동과 민족운동의 향후 관련 여하. 민족운동과 사회운동은 원래 공통의 이해 관계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부터라도 그 운동이 ‘서로 관련’될 것은 거듭 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만약 향후에 신일본주의자가 대두하고 종래의 불철저한 민족운동의 지도자들이 신일본주의에 가담한다면, 우리는 그들을 적수로 하는 동시에 민족운동의 부활에 조력할 것입니다.

북풍회(北風會), 신철(辛鐵)

1. 불성문법규 밑에 있는 민중보다도 성문법규의 제재를 받는 민중이 차라리 어떠한 행동을 취하기가 더 용이하고 또 행동이 타산적으로 되는 것과 같이, 종래로 조선에서도 그들의 소위 불령조선인, 혹은 불온사상 운운하는 막연한 문구 아래서 차라리 더 애매하고 더 가혹한 단속을 받아왔습니다. 그러나 이 치안유지법은 취체의 범위 정도가 다소 법조문으로 표준화되었다. 따라서 종래로 정도와 범위가 미정인 채로 막연한 불안을 가지고 있던 사회운동은 향후 어느 시점에 있어서든 차라리 행동하기가 용이하고 또 더 타산적인 전진을 하게 될 줄 압니다. ‘국체의 변혁’, ‘사유재산제도의 부인’, 이러한 사회 운동의 강령에 속한 것은 이제 6, 7년간에 일반 민중에게 널리 알려질 줄 압니다. 그리고 조선의 사회운동은 치안유지법의 실시 여부에도 불구하고 제1기의 기분운동 영역을 탈피하여 제2기의 조직적 운동으로 이행하려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치안유지법이 문제의 초점으로 하는 최대 강령에 속한 깃발만은 당분간 접어놓고라도 민중의 실제적 이익에 더 많이 착안해 가면서 조직과 정략 문제에 치중하여 더욱 규모 있고 실제적인 발달을 추구하리라고 생각합니다. 즉 사회운동은 치안유지법의 실시로 인하여 대타격을 당하리라는 일부 인사들의 그릇된 예상과 상상을 뒤집고 그 기초가 더욱 견실하고 보무가 더욱 당당해지리라고 생각합니다. 다시 한 번 말하면 사회운동이 현행법규의 해이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 아니고 그 움직이지 못할 이유와 원인을 가지고 있는 이상 현행법규가 더 엄혹해짐에 따라 운동의 기초에 변동이 생기지는 않을 것입니다. 오히려 그 엄혹은 운동의 열을 고조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고 민중은 이러한 법규의 대두에 의하여 입법자의 불안과 공포를 더 잘 직관하게 될 것입니다. 다만 당분간은 소위 잠행(潛行)의 기세와 표면의 쟁세(爭勢)가 다소 훼손되는 경향이 부분적으로 전혀 없지는 않으리라고 생각합니다.

2. 사회운동의 향후 방침에 있어서는 치안유지법의 실시가 이에 큰 영향을 준다기보다는 운동 자체의 진전상, 또는 민중의 실체적 요구에 의하여 획기적 변동이 있게 될 줄

압니다. 즉 향후로 기분의 고취와 사상의 선전보다 민중의 실제 이익에 더 많은 힘을 쏟게 될 것입니다. 특히 노농조합운동 같은 것은 이러한 방침에 의하여 더욱 그 실리를 거두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당분간은 소위 운동의 레벨을 다소 낮추게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3. 향후 양 운동은 당면의 실제적 이해 문제에 있어서, 더욱이 경제 문제에 있어서 상호협동과 제휴를 성립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이는 현상 변혁에 부절(不絕)의 운동(또는 실지운동)을 계속하는 민족주의 강경파와 단계적 정책을 취하는 사회운동자 및 이러한 종류의 운동을 지지하는 민중 사이에서만 그 실현이 가능하게 될 줄 압니다.

동아일보사(東亞日報社), 송진우(宋鎮禹)

1. 사회운동의 향후 추세 여하. 첫째는 표면운동보다 이면운동이 치열해질 것이며, 둘째는 재래의 분규 혼잡하였던 운동선이 외부의 압박으로 인하여 각자 반성을 촉구하는 동시에 통일, 단결의 기분을 양성할 것입니다.

2. 사회운동의 향후 방침 여하. 외부 선전보다 내부 조직을 절실하게 하여 실제 세력을 수립하는 것이 필요하지 아니할까 합니다.

3. 사회운동과 민족운동의 관련 여하. 외래의 공통된 압박과 현하의 공통된 생활 불안으로 인하여 더욱더 제휴와 협조의 관계가 발생할 것입니다.

변호사(辯護士), 이인(李仁)

치안유지법이 실시되어도 조선의 사회운동은 일본처럼 큰 영향을 받을 것 같지는 않습니다. 원래 조선에는 세계 무비의 악법이라 말할 수 있는 보안법과 제령 제7호가 있어서 정치적, 경제적, 기타 모든 운동을 억압하고 제재하여 온 터이니 아무리 치안유지법이 새로 실시되어도 그 이상의 억압과 제재는 더 없을 것이옵니다. 따라서 모든 운동도 여전히 진행, 발전될 것이옵니다. 특히 주의자란 것은 그 시대의 법령제재를 다 불구하고 자기의 주의대로 활동하는 것인즉, 만일 법령 여하에 따라 그 주의를 굽힌다든지 운동을 중지한다면 그 무엇이 주의자라 하겠습니까. 다만 조선에 철저한 주의자가 있느냐 없느냐 하는 것이 문제지 법령 여하는 문제가 아니옵니다. 그러나 치안유지법이 시행된 오늘 어제처럼 정치적 범죄를 혼동하여 제재를 하지 아니하고 엄정하게 구별하여 제재하게 되었기 때문에 사회운동이나 정치운동도 각각 구별되어 진행할 것이요, 그 전술 방면 등 여러 가지로 어제와 현격하게 다를 것이옵니다. 그리고 조선에서는 아직 민족주의와 사회주의자의 선명한 구별이 없으니까 서로 결합이 된다든지 안 된다든지 말씀

하기가 어렵습니다. 만일에 선명한 색채를 가진 주의자가 있다면 향후에도 운동이 당연히 다를 것이요, 이 법령으로 인하여 결합될 이유는 없을 것 같습니다.

시대일보사(時代日報社), 흥명희(洪命熹)

치안유지법이 시행됨에 따라 조선의 사회운동이 다소 장애를 받을 것은 사실이겠습니다. 그러나 그 장애로 해서 금일에 이만큼 진전된 운동이 다시 침체되리라고 비관할 수는 없습니다. 어떤 점으로는 그 운동이 더 착실하고 진지하게 되어 금일보다도 유력한 근거를 세우게 될지도 알 수 없습니다.

그리고 향후 방침에 대해서는 주의자 그네들이 다 정한 바가 있을 터이니 따로 말씀 할 것이 없습니다. 민족주의자라든지 사회주의자라든지 조선에 있어서는 다른 국가나 민족과 처지와 사정이 특수하니 각각 주의를 가지고 너와 나를 구별하여 파당을 세우지 말고 서로 약수하여 전진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경성청년회(京城青年會), 송봉우(宋奉瑀)

1. 사회운동가의 향후 추세. 실행 이전과 조금도 다름이 없을 줄 압니다. 오히려 어느 의미로 보아서는 종전보다 편리한 진로를 발견하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어찌하여 그러하냐 하면 악법 실시 이전은 정체를 알지 못할 제령이란 암초가 있어 좌초된 적이 많았습니다. 실로 제령이란 것은 범위가 막연하여 당국자의 기분과 감정에 얼마든지 영합되도록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번 이 악법은 조문이 확연하니 그것만 피하면 종전과 같이 좌초될 위험은 없을 것입니다.

2. 금후 방침. 레벨을 자연히 낮추게 되겠지요. 악법이 실시되기 때문이 아니라 기분 운동 시에 우리의 목표를 환하게 보았으니 이제부터 당면의 이익을 위하여 투쟁하자는 것은 늘 주장한 바입니다. 이것이 운동의 본류는 아니지마는 어쩔 수 없는 필연의 과정입니다.

3. 민중운동과 향후 관련 여하. 더 말할 것 없이 시간상 공동전선에 서게 되어야 합니다. 금후에는 유기적으로 되어야겠지요. 그러나 딱하게도 국내에는 3·1운동 이후로 거리에 나선 민중운동단체나 개인을 발견하지 못한 것이 유감이옵니다.

조선일보사, 신일용(辛日鎔)

1. 치안유지법은 시세의 산물이외다. 이런 악법을 제정하지 않고는 소위 치안을 유지하지 못하게 된 까닭이외다. 우리는 종래의 보안법과 제령 제7호의 가혹한 취체를 받아온 터이니 더 조직적 취체를 받게 되었다는 각오만 가지면 그만이외다. 어떠한 의미로 보면 우리의 운동을 심화하는 데 유력한 자극제로 볼 수도 있습니다.
2. 우리의 사회운동은 이때껏 개념적 감정적인 초기의 영역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 방면을 고쳐서 대중의 실생활에 접근하지 않으면 안 될 것이외다.
3. 민족운동과 사회운동은 성질상으로 협동되지 못할 것이외다. 다만 전략상으로 일시적 협동, 즉 비상기에 임하여 공동전선에서 공동의 적을 대하는 시기는 없지 않을 것 이외다.

〈출전 : 治安維持法의 實施와 今後의 朝鮮社會運動, 『開闢』 60호, 1925년 6월, 10~18쪽〉

21) 치안유지법과 조선독립운동(1925)

고등법원 판사 노무라 초타로(野村調太郎)

1.

1922년 2월 정부가 과격사회운동 단속법안을 귀족원에 제출한 아래, 여론이 시끄러워, 소위 과격법안도 그 내용을 크게 바꾸고 명칭도 치안유지법으로 바꾸어 간신히 이번 회기 회의를 통과하여, 지난 4월 22일 공포되어 드디어 법안으로 되었다. 그런데 5월 12일부터 조선에도 시행되게 된 것이다.

치안유지법은 무정부주의 또는 공산주의 등의 사회주의적 과격운동에 기초한 불온행동을 단속하려고 하는 것이므로, 이미 법률이 된 이상은 과격파의 본가이고 본원인 러시아에 인접한 조선에 그것을 시행해야 할 것은 당연하다. 그러나 조선에는 이미 정치범죄처벌에 관한 1919년 제령 제7호의 벌칙이 있을 뿐만 아니라 구한국시대에 제정된 보안법의 몇 부분이 지금 여전히 그 효력을 보유하고 있는데도, 치안유지법을 조선에 시행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인가, 또 치안유지법을 조선에 시행했을 때에 종전의 법령은 어

떻게 될 것인가 하는 것이 일부 사람들 사이에 문제가 된 것 같다. 그러나 당국자는 이러한 법령들은 그 취지가 반드시 동일하지 않으므로 종전의 법령은 여전히 그것을 존치하여 치안유지법의 시행을 기다려서 조선에서의 치안유지의 만전을 도모하려고 하는 것이다.

과연 전에 서술한 각 법령은 그 취지가 다소 다른 것이 없지는 않다. 따라서 그 적용을 해야 할 사항의 범위에는 광협(廣狹)의 차가 있고, 그 금지행동의 종류 및 형태에도 큰 차이가 있다. 즉 치안유지법의 취지는 우리 국가조직의 가장 중대한 요건인 국체의 불변과 사유재산제도의 안정을 파괴하려고 하는 약간의 불온행동을 금지하는 데 있으므로, 이에 따라 벌해야 할 행동은 항상 국체의 변혁과 사유재산제도의 부인 중 어느 한쪽을 목적으로 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런데 1919년 제령 제7호 즉 정치범죄처벌령의 내용은 그것보다도 넓은 의의를 가진 정치의 변혁을 목적으로 하는 불온행동을 금지하는 데 있고, 더욱이 보안법에 이르러서는 그것보다도 넓어서, 정치에 관한 불온한 일체의 언론동작을 금지하는 내용을 가진 것이다. 그러므로 치안유지법을 시행한다고 해서 종래의 법령이 불필요해진다고 말할 수 없는 것은 물론이다.

그러나 보안법은 정치범죄처벌령보다도, 또 동령은 치안유지법보다도 각각 그 적용사항의 범위가 넓은 결과로서, 때로는 치안유지법의 규정에 해당하는 불온행동이 동시에 정치범죄처벌령이나 보안법의 규정에도 해당하게 된다. 예를 들면 국체의 변혁을 목적으로 다수인이 공공연히 결사를 조직하는 행위, 치안유지법 제1조 제1항이 정한 행위, 또는 동법 제3조 혹은 제4조에 규정한 선동행위 같은 것은, 정치범죄처벌령 제1조 제1항 및 보안유지법 제7조의 규정에도 해당하는 것이다. 이처럼 전후의 규정이 서로 중복하는 경우에는 어떤 법규를 적용해서 처단해야 하는가 하는 의구심을 생기게 할 것이다. 이것은 법의 적용범위가 아니라 법의 효력범위이다. 대저 전후의 법령이 저촉 혹은 중복하는 경우에는 ‘후법은 전법을 폐한다’라는 법리상의 원칙에 의해 저촉하거나 중복하는 범위 내에서 전법은 개폐되는 것이라고 해석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러므로 종전 보안법 또는 정치범죄처벌령의 적용을 받은 사항으로, 치안유지법의 규정에 해당하는 것에 대해서는, 종전의 적용을 해서는 안 되고 즉 이처럼 중복하는 범위 내에서는 보안법 및 정치범죄처벌령은 치안유지법에 의해 개폐되는 것으로 해석하지 않으면 안 될 것이다. 보안법과 정치범죄처벌령의 관계에 대해서 동취지의 고등법원의 판결이 있다. 즉 보안법의 규정 중 정치범죄처벌령의 규정에 저촉하거나 혹은 중복하는 부분 같은 것은 동령의 시행에 의해 저절로 폐지되는 것이라고 한 것이다. (1917년 6월 12일 및 1921년 11월 19일 판결)

위와 같은 견해하에 전후의 법령의 효력에 대해서 영역을 정하는 것은 중요한 것이지만, 그것은 치안유지법의 전반에 걸쳐서 일단 고찰한 뒤가 아니라면 논하기 어려우므로 잠시 제쳐두고, 다음에 조선독립운동에 대한 법령의 적용에 대해서 생각해 볼 것이다.

2.

1919년 제령 제7호 즉 정치범죄처벌령은 같은 해에 발발한 조선의 독립운동을 목적으로 한 불온행동을 단속할 필요에 의해 급히 제정된 것이라는 것은 세상에서 주지의 사실이다. 그러므로 동령에 소위 정치는 오직 제국주권의 작용하는 권력행위 혹은 권한 분배의 조직에 관한 사항만을 지적하는 것이라고 해석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제국주권의 존립에 관한 사항도 병칭(併稱)하는 것으로 해석하지 않으면 안 된다. 즉 소위 정치는 정체 및 국체에 관한 사항을 총칭하는 것이고, 조선의 독립을 목적으로 하는 불온행동은 제국주권의 존립에 관한 사항 즉 국체의 변혁을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 동령 적용의 대상이 되는 것이다. (1919년 6월 5일 및 동년 7월 31일 고등법원판결참조)

그런데 치안유지법은 그 범죄 성립의 요건인 목적 중의 하나가 국체의 변혁 즉 제국주권의 존립에 관한 사항을 다루고 있다. 따라서 조선의 독립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제국주권의 존립에 관한 사항의 변혁을 목적으로 하는 것에 다름 아닌 것이라면 그것은 바로 치안유지법에 소위 국체의 변혁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라는 데 해당하는 것이다.

치안유지법은 주로 사회주의적 과격운동을 단속하려는 취지에서 제정된 것에는 의심 할 것 없지만, 이것 역시 법률 제정의 구체적 동기일 뿐이다. 설령 입법의 이유는 그것에 있다고 해도 성법(成法)의 해석으로는 그러한 구체적 사유에 구속되지 않고, 법문에 나타난 바의 의의와 치안유지라고 하는 법의 근본정신에 의해 그 적용범위를 정하지 않으면 안 된다. 소위 국체에 대한 정부의 견해도 위에서 서술한 것과 같은 것으로 생각된다. 즉 “국체라는 것은 누가 주권자인가의 문제이다. 우리 제국은 ‘천황’이 아니면 통치권의 총람자일 수 없고, 제국 영토는 ‘천황’에 의해 통치되는 국토가 아닌 것이 없다. ‘천황’이 아닌 자가 ‘천황’에게 연원(淵源)하는 통치권의 일부를 보유할 수 없다. 소위 국체의 변혁이라는 것은 이와 같은 국체의 본질에 변경을 가하려는 것이다”라고 말하고 있다. 조선의 독립을 목적으로 하는 것은 조선에 대한 일본 제국의 정치를 배척하려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다. (1919년 6월 5일 고등법원 판결) 환언하면 제국 영토에서 ‘천황’에 의해 통치되지 않는 국토를 생성시켜 ‘천황’이 아닌 자가 ‘천황’에 연원하지 않고 통치권의 일부를 보유하려는 것에 다름 아니다.

전술한 바에 의하면, 조선의 독립은 제령에 소위 정치의 변혁에 해당하고 치안유지법

에 소위 국체의 변혁에 해당한다. 그래서 그것을 목적으로 하는 행동은 또 보안법에 소위 정치에 관한 언론동작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조선의 독립을 목적으로 하는 행동은 동기 혹은 범의(犯意)의 방면에서 각 법령이 정한 요건을 충족시키게 된다. 그렇지만 전술한 각 법령은 범죄의 객관적 방면에서 각각 다른 모습을 제정하고 있으므로 각각 그 적용에 의해 다른 영역을 가진다. 그것이 곧 각 법령의 병존이 허락되는 이유이다(범의와 행동 모두 동일의 것을 대상으로 하는 범위 내에 있을 때 전법이 후법에 의해 개변되는 것은 전술한 대로이다).

치안유지법에서 정한 범죄의 모습 즉 불온행동으로서 다루는 바는 (1) 결사의 조직, 지정가입(知情加入), 이러한 것의 미수(일부) (2) 목적사항의 실행 협의 및 실행 선동(2조 및 3조) (3) 일정한 범죄 선동(4조) (4) 이상의 범죄를 양성하려는 목적에서 나온 금품, 이익의 수수 등이다. 조선의 독립을 목적으로 하는 이러한 행위들에 대해서 종전과 어 떠한 차이가 생기는가에 대해서는 다음에 그 대략을 들어본다.

(1) 결사조직, 지정가입 : 조선의 독립을 목적으로 결사를 조직하거나 사정을 알고 그 것에 가입했다 해도 동지(同志) 간에 규합을 멈춘 경우에는 아직 제령에서 명시하는 바 소위 치안을 방해하거나 방해하려고 했다고는 말할 수 없다. 따라서 제령에는 위반되지 않지만 치안유지법에 소위 국체를 변혁하는 것을 목적으로 결사를 조직하거나 또는 지정가입한 자라는 것에 해당한다. 즉, 특별히 정해진 벌칙이다. 그래서 그 미수를 벌하는 것이다. 그러나 결사를 조직하는 것에 대해서 공공연하게 선언서를 발포해서 동지를 모으는 것 같은 행동으로 나온다면 그것 자체가 치안방해 행위가 되는 것이다. 또 동지 간에 그치지 않고 불특정 다수인에 인지되는 상황에서 결사를 조직하거나 그것에 가입한 행위는 치안법 제7조의 불온의 언론동작이라고 하는 것에 해당하므로 이러한 경우는 종전에도 벌한 것이다.

(2) 목적인 사항의 실행 협의 및 실행 선동 : 조선의 독립을 목적으로 하는 실행행위로 적법한 수단이 있다는 것은 상상할 수 없으므로(적어도 치안유지법 시행 후에 있어서는) 그 협의 및 선동은 대부분 치안방해의 예비 혹은 음모라고 하게 된다. 따라서 종전에도 치안을 방해하려고 하는 것으로 제령에 의해 처벌되었지만 신법에 적절한 규정을 만들었으므로, 제령의 이 부분에 관한 규정은 폐지되게 된다. 즉 이러한 종류의 행동에 대해서는 제령의 적용에서 배제된다고 해석해야 할 것이다.

(3) 일정한 범죄 선동 : 치안유지법은 법정의 목적으로 소요 및 폭행, 그 외 생명과 신체 또는 재산에 해를 가할 만한 범죄를 선동한 자에 대해서 특별히 형을 정하고 있다. 조선의 독립을 목적으로 이러한 종류의 범죄를 선동하면, 설령 형법에 속하지 않는다 해

도 종전에 있어 제령에 소위 치안을 방해하려고 하는 것으로서 벌을 받을 것이다. 즉 전 향과 같이 새로 정해진 범죄로 인정할 수 없다.

(4) 금품, 이익의 수수 : 치안유지법은 동 법에서 정한 죄를 범하게 할 것을 목적으로 금품, 그 외 재산상의 이익을 공여하거나 또는 그 신청이나 약속을 한 자 및 사정을 알고 공여를 바꾸거나 또는 그 요구 또는 약속을 한 자에 대해서 형을 정하고 있다. 종전에도 제령위반의 죄를 범하게 할 것을 목적으로 이러한 종류의 행위를 한 경우에, 목적으로 한 범죄가 성립하면 공범으로 처벌되었을 것이다. 그렇지만 단순히 조선독립의 목적에 공명해서 소위 불온무리들과 금품이익의 수수를 한 것은 불문에 붙였지만, 치안유지법에 의해서는 조선의 독립을 목적으로 행한 전기 (1) 내지 (3)의 범죄를 저지르게 할 것을 목적으로 금품 이익을 수수하면 주범이 성립되는가 아닌가에 관계없이 동 법 제5조에 의해 벌을 받게 된다.

여기에서 서술한 것은 하나의 비견(卑見)에 그침은 물론, 편집자의 재촉에 어쩔 수 없이 깊게 연구하지 않고 창출간에 만들어진 것이다. 두찬(杜撰)¹⁷⁾의 비(誹)를 면하지 못 할 것은 말할 것도 없고 또 큰 잘못도 있을 것이다. 오로지 많은 사람들의 관용을 바랄 따름이다.

(1925년 5월 25일 탈고)

〈출전 : 治安維持法 卜朝鮮獨立運動 『普聲』 2호, 1925년 6월 5일, 2~9쪽〉

17) 저술의 출처가 명확하지 않거나 오류가 많은.

친
일
반
민
족
행
위
관
계
사
료
집
III

III. 주요 경제기구와 제도

1. 동양척식주식회사

1) 동양척식주식회사 정관

1908년 10월 8일 인가

1910년 5월 21일 개정 허가

1917년 10월 1일 개정 인가

1918년 5월 22일 개정 인가

1919년 9월 10일 개정 허가

제1장 총칙

제1조 본 회사는 1908년 법률 제63호 동양척식주식회사법에 의해 설립되어 동양척식 주식회사라고 칭한다. 단 영어로는 The Oriental Development Company, Limited. 라고 한다.

제2조 본 회사는 조선 및 외국에서의 척식자금의 공급, 그 외의 척식사업을 운영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 본 회사는 본점을 동경(東京)에 둔다.

본 회사는 정부의 인가를 받고, 경성(京城)과 봉천(奉天), 기타 편리한 곳에 지점 또는 출장소를 둘 수 있다.

제4조 본 회사의 자본은 5천만 엔으로 한다. 단 정부의 인가를 받아 이를 증가할 수 있다.

제5조 본 회사의 자본증가는 주금(株金, 주식투자금) 전액의 불입을 요한다.

제6조 본 회사의 존립 시기는 설립 등기일로부터 100년으로 한다. 단 정부의 인가를 받아 이를 연장할 수 있다.

제7조 본 회사에서 정부의 인가를 받은 사항을 변경할 때에는 다시 정부의 인가를 필요로 한다.

제8조 본 회사의 공고는 관보 및 본점소재지의 관할 재판소나 공고를 게재하는 신문지로 한다. 단 지점소재지에서 공고를 요할 때는 총재가 지정하는 신문지로 한다.

제2장 주식

제9조 본 회사의 주식은 모두 기명식으로 하고 일본인에 한에 소유할 수 있다.

제10조 본 회사는 정부가 아래의 재산을 출자할 것을 승인하고, 그 재산가격금(財產家格金) 3백만 엔에 대해서 6만 주를 부여하는 것으로 한다.

- 논 5천 7백 정보
- 밭 5천 7백 정보

제11조 본 회사의 주식은 100만 주로 하고 1주의 금액을 금 50엔으로 한다.

제12조 본 회사의 주주의 책임은 그 주식의 총액을 한도로 한다.

제13조 본 회사의 주권은 1주권, 5주권, 10주권, 50주권, 100주권 및 1000주권의 6종류로 한다.

제14조 본 회사의 주권에는 사명(社名), 등기년월일, 자본의 총액, 1주의 금액, 불입금액 및 번호를 기재하고 총재가 이에 기명날인하기로 한다.

제15조 주금 불입은 1주에 대해 제1회에는 금 12엔 50전으로 하고, 제2회 이후에는 사업의 필요에 따라 총재가 그 불입금액 및 기한을 정하여 최소한 30일 전에 각 주주에게 통지를 해야 한다. 단 1주의 불입금액은 매회 금 12엔 50전보다 많지 않은 것으로 한다.

제16조 주주불입의 기일에 주금을 불입하지 않았을 때에는 그 불입해야 할 금액에 대해서 금 100엔당 1일 금 4전의 비율로 연체이자를 징수한다.

제17조 제1회 주금 불입기일 후에 15일이 지났는데도 불입하지 않았을 때에는 15일 내에 불입해야 한다는 내용의 최고(催告)를 하고, 기한에 이르렀는데 여전히 불입하지 않았을 때에는 본 회사의 주주 권리를 상실한다는 내용을 통지한다.

전 항의 경우에 그 권리를 상실했을 때는 이전에 불입한 증거금을 환부한다.

제18조 제2회 이후 주금 불입기일 후 15일을 지나서 불입을 하지 않았을 때에는 15일 이내에 그 불입을 해야 한다는 내용과 그 기한 내에 불입하지 않을 때는 주주의 권리를 상실한다는 내용을 통지한다.

전 항의 경우 주주가 그 권리를 상실할 때는 본 회사는 주식의 각 양도인에게 15일 이내에 불입해야 한다는 내용의 최고를 내리고, 가장 먼저 체납금액을 불입한 양도인이 주식을 취득한다.

양도인이 불입하지 않을 때 본 회사는 주식을 경매에 부치고, 그 금액이 체납금액에 미달할 때는 종전의 주주에게 그 부족액을 변제시킨다. 만약 종전의 주주

- 가 14일 이내에 변제 하지 못할 때는 본 회사가 양도인에게 그 변제를 청구한다.
- 제19조 전 조에서 정한 양도인의 책임은 양도를 주주명부에 기재한 후 2년이 경과했을 때는 소멸한다.
- 제20조 회사, 기타 공사의 법인이 본 회사의 주식을 소유할 때에는 그 대표자를 정하고 본 회사의 주주명부에 기재를 받아야 한다.
- 주식을 여러 명이 공유할 때에는 공유자들이 주주의 권리와 행사할 자 1명을 정해야 한다.
- 공유자들은 연대하여 주금 불입의 의무를 진다.
- 제21조 주주 또는 법정대리인은 주식을 취득할 때, 그 씨명과 주소 및 인감을 본 회사에 신고해야 하고 그 변경이 있을 때도 역시 같다.
- 제22조 주식을 양도할 때는 본 회사 소정의 서식에 의해 당사자 연서의 서면으로써 주권의 서환(書換)을 청구해야 한다. 단, 상속의 개시와 유언 또는 재판의 집행 등에 의해 주식을 계승하는 자가 서환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호적리(戶籍吏)의 증명서 또는 본 회사에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증거서류를 첨부해야 한다.
- 주식의 양도는 양수인의 씨명과 주소를 주주명부에 기재하고, 또 그 씨명을 주권에 기재하지 않으면 본 회사에 대해 효력이 없다.
- 제23조 주권을 훼손·분실한 주주는 그 사유를 상기(詳記)하고 본 회사에서 적당하다고 인정하는 2인 이상의 보증인 연서의 증서를 제출하여 신주권의 교부를 청구할 수 있다. 단, 분실의 경우에는 청구서의 비용으로 그 내용을 공고하고, 공고일로부터 30일이 경과해도 이의를 제기하는 자가 없을 때에 한해 신주권을 교부한다.
- 제24조 주권의 종류를 변경하려는 자는 그 주권에 청구서를 첨부해서 제출해야 한다.
- 제25조 주권의 명의서환(名義書換 ; 명의개서(名義改書)), 신주권의 교부 및 주권 종류의 변경 시 본 회사가 정하는 수수료를 징수한다.
- 제26조 본 회사는 정시총회 전 30일이 경과하지 않은 기간에는 주식 양도에 의한 주권의 명의서환을 정지한다.

제3장 주주총회

- 제27조 정시총회는 매년 5월, 임시총회는 총재 또는 감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및 총주수의 10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주주가 총회의 목적 및 소집의 이유를 기재

하는 서면을 제출하여 총회의 소집을 청구할 때 총재가 소집한다. 단 주주가 총회의 소집을 청구할 경우에는 총재는 14일 이내에 소집 수속을 할 필요가 있다.

제28조 총회의 의사는 미리 통지한 목적 및 사항 이외에도 할 수 있다.

제29조 총회의 일시 및 장소는 총재가 정하고, 최소한 14일 전에 주주에게 통지해야 한다.

제30조 총회의 의장의 직무는 총재가 행한다. 단, 총재 결원 또는 사고가 있을 때는 이사 중 1명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31조 각 주주의 의결권은 소유주수 1주당 1개로 한다.

제32조 주주는 의결권의 행사를 다른 출석주주에게 위임할 수 있다. 단, 위임장을 본 회사에 제출해야 한다.

제33조 총회의 의장은 주주로서 의결권을 행사하는 것을 방해하지 않는다.

제34조 총회의 의결은 상법에 별도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과반수로 한다. 단, 정관의 변경은 자본의 반액 이상에 상당하는 주주가 출석하고 그 의결권의 과반수로 정한다.

전 항의 경우 가부동수일 때는 의장이 결정한다.

제35조 총회 의사의 요령은 총회결의록에 기재하고, 의장은 총회에 출석한 중역과 함께 기명날인해야 한다.

제36조 총회 의장은 회의를 연기하고 회장을 변경할 수 있다. 단, 연기 회의의 의사(議事)는 이전 회의에서 의료(議了)한 사항 이외에도 할 수 있다.

제4장 역원(役員)

제37조 본 회사는 총재 1인, 이사 3인 이상, 감사 2인 이상을 둔다.

제38조 총재는 회사를 대표하고 그 업무를 총괄한다.

총재에 사고가 있을 때는 이사 중 1명이 그 직무를 대리하고, 총재 결원 시 그 직무를 행사한다.

이사는 총재를 보조하고 회사의 업무를 분담한다.

감사는 회사의 업무를 감사한다.

제39조 총재는 정부가 임명하고 그 임기를 5년으로 한다.

이사는 50주 이상을 소유한 주주 중에서 주주총회에서 2배수의 후보자를 선거하고, 정부가 그중에서 임명하며 그 임기를 4년으로 한다.

감사는 30주 이상을 소유한 주주 중에서 주주총회에서 선임하고 그 임기를 2

년으로 한다.

제40조 매년 총재 및 이사에게 지급해야 할 보수는 아래와 같이 정한다.

1. 총재 금 6천 엔
2. 이사 1급 금 4천 엔
2급 금 3천 5백 엔

감사의 보수는 주주총회에서 의결해서 정한다.

조선 또는 외국에 거주하는 이사에 대해서는 수당을 지급할 수 있고, 그 액수는 정부가 정한다.

제41조 이사는 재임 중 소유 주식 50주를 감사에게 맡겨야 한다. 단, 이 주식은 퇴임해도 주주총회에서 재임 중 취급한 사무를 승인한 다음이 아니면 환부하지 않는다.

제42조 총재 결원 시는 정부가 후임자를 임명하고 후임자는 전임자의 임기 동안 그 직을 맡는다.

제43조 이사 중 결원이 생겨 보결이 필요할 때에는 임시총회를 열어 50주 이상을 소유한 주주 중에서 2배의 후보자를 선거하고, 정부가 그중에서 후임자를 임명하고 후임자는 전임자의 임기 동안 그 직을 맡는다.

이사의 증원이 필요할 때는 전 항을 준용(準用)한다. 단, 그 임기는 여기에 한하지 않는다.

제44조 감사 중 결원이 생겨 보결이 필요할 때에는 임시총회를 열어 30주 이상을 소유한 주주 중에서 후임자를 선임하고 후임자는 전임자의 임기 동안 그 직을 맡는다.

제45조 총재 및 이사는 정부의 허가를 받지 않으면 다른 직무 또는 상업에 종사할 수 없다.

제46조 총재는 정관 및 주주총회의 결의록을 본점 및 지점에 비치해 둔다. 또 주주명부 및 사채원부를 본 점에 비치해 두어야 한다.

제47조 총재는 정시총회 일로부터 7일 전에 아래의 서류를 감사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재산목록
2. 대차대조표
3. 사업보고서
4. 손익계산서
5. 준비금 및 이익의 배당에 관한 의안

제48조 총재는 정시총회 회일 전에 전 조에서 언급한 서류 및 감사의 보고서를 본점에

비치해야 한다.

제49조 총재는 제47조에 언급한 서류를 정시총회에 제출해서 그 승인을 청구해야 한다.

총재는 전 항의 승인을 얻은 후 대차대조표를 공고해야 한다.

제50조 감사는 총재가 주주총회에 제출하려는 서류를 조사하고 주주총회에 그 의견을 보고해야 한다.

제51조 감사는 언제라도 총재에게 영업 보고를 요구하고 또한 회사의 업무 및 사업재산의 상황을 조사할 수 있다.

제5장 영업

제52조 본 회사는 아래의 업무를 경영한다.

1. 척식을 위해 필요한 자금의 공급
2. 척식을 위해 필요한 농업·수리사업 및 토지의 취득·경영·처분
3. 척식을 위해 필요한 이주민의 모집 및 분배
4. 이주민을 위해 필요한 건축물의 축조·매매 및 대차
5. 이주민 또는 농업자에게 척식을 위해 필요한 물품의 공급 및 그 생산한 물품의 분배
6. 위탁에 의한 토지의 경영 및 관리
7. 기타 척식을 위해 필요한 사업의 경영

전 항 제7호의 사업을 경영하고 또는 외국에서 전 항 제1호 내지 제6호의 사업을 경영할 때에는 그 사업지역에 대해 미리 정부의 허가를 받도록 한다.

제53조 삭제

제54조 제52조 제1항 제1호의 자금의 공급은 아래의 방법에 따라 실행한다.

1. 이주민에 대해서 25년 이내의 연부상환 또는 5년 이내의 정기상환의 방법에 의한 이주비의 대부
2. 생산자에 대해 그 생산물을 담보로 한 1년 이내의 대부
3. 30년 이내의 연부상환 또는 5년 이내의 정기상환의 방법에 의해 부동산·철도·광업권, 기타 부동산상의 권리를 담보로 한 대부
4. 공공단체 또는 특별 법령에 의해 조직한 산업에 관한 조합에 대해서 30년 이내의 연부상환 또는 5년 이내의 정기상환의 방법에 의한 무담보 대부
5. 농업자 20인 이상 연대해서 채무를 지는 자에 대해 5년 이내의 정기상환의

방법에 의한 무담보 대부

6. 이민취급업, 기타 척식사업을 경영할 것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의 주권 또는 채권의 응모 · 인수
7. 이민취급업 기타 척식사업을 경영할 것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의 주권 또는 채권을 저당으로 한 5년 이내의 정기상환의 방법에 의한 대부
8. 법령의 규정에 의해 설정된 재단, 기타 확실한 물건을 담보로 하는 30년 이내의 연부상환 또는 5년 이내의 정기상환의 방법에 의한 대부
전 항 제2호의 대부를 한 경우에는 어음할인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

제54조의 2. 본 회사는 정기예금을 할 수 있다.

전 항의 정기예금은 전 조 제1항 제2호 또는 제7호의 대부로 충당한 경우를 제외하고 이를 적용할 수 없다.

제55조 부동산을 담보로 한 대부금은 본 회사에서 감정한 가격의 3분의 2 이내로 한다.

제56조 부동산을 담보로 한 대부는 제1순위의 담보에 한한다. 단 구채(舊債)인 경우에는 본 회사에서 차입하는 신채(新債)로 구채를 상환하는 효과를 통해 신채의 제1순위 확보로 삼을 때는 이에 해당되지 않는다.

제57조 대부금의 연부상환은 5년 이내의 거치연한을 정한다.

제58조 연부금은 원리와 이자를 합하여 계산하고 매년 일정한 평등의 상환액을 정한다. 단, 거치연한의 이자는 여기에 해당하지 않는다.

제59조 연부상환의 방법으로 차입한 채무자는 상환기간 전에 차용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상환할 수 있다.

전 항의 경우에는 본 회사는 상환액의 100분의 2 이내에서 본 회사가 정한 수수료를 징수한다.

제60조 본 회사는 아래의 경우에 상환기간 전이라고 해도 대부금 전부의 상환을 요구할 수 있다.

1. 채무자가 대부의 목적에 반해 대부금을 이용할 때
2. 채무자가 연부금의 불입을 지연하고 최고(催告)를 받아도 여전히 불입을 하지 않을 때
3. 담보한 부동산의 전부 또는 일부가 공용을 위해 수용되었을 때. 단, 채무자가 수용보상금을 공탁하거나 상당한 부동산을 증담보(增擔保)로 할 때는 여기에 해당하지 않는다.

전 항 제3호의 경우 그 수용이 일부에 그쳤을 때는 그 비율에 따라 상환액을

정한다.

제61조 담보물 가격이 감소하고 대부금 상환잔액에 대해서 제55조의 비율에 부족할 때는 증담보를 요구하거나 그 부족에 상당하는 대부금액의 상환을 요구할 수 있다. 채무자가 전 항의 요구에 응하지 않을 때는 상환기간 이전이라도 대부금 전부의 상환을 요구할 수 있다.

제62조 본 회사에서 이주 규칙과 기타 규정을 정할 때는 정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제62조의 2 본 회사의 대부금의 이자 및 할인율의 최고 보합(歩合)은 매 영업연도 초에 정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제63조 영업상의 여유금은 일시 국채증권(國債證券) 또는 정부의 인가를 받은 유가증권을 매입하거나 정부 혹은 정부가 지정한 은행에 예금한 것 이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

제64조 본 회사는 영업상 필요할 때는 정부의 인가를 받고 금전으로 차입할 수 있다.

제64조의 2 본 회사는 일본권업은행의 대리점이 될 수 있다.

본 회사는 일본권업은행의 대부를 대리할 경우에는 일본권업은행에 대해 채무를 위해 채무를 보증할 수 있다.

제6장 동양척식채권

제65조 본 회사는 불입자본액의 10배 한도로 동양척식채권을 발행할 수 있다.

동양척식채권을 발행할 경우에는 주주총회의 의결이 필요하다.

제66조 동양척식채권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매회 그 금액과 조건, 발행 및 상환의 방법을 정하고 정부의 인가를 받는다.

제67조 동양척식채권을 발행할 경우에는 여러 번에 걸쳐 불입할 수 있다.

제68조 동양척식채권은 전액 불입한 후에는 무기명 이찰부(利札附)로 한다. 단, 응모자 또는 소유자의 청구에 의해 기명식으로 할 수 있다.

제69조 동양척식채권의 소유자는 본 회사의 재산에 대해서 다른 채권자보다 우선해서 자기 채권을 변제할 권리를 가진다.

제70조 본 회사는 사채 차환을 위해 일시적으로 제65조의 제한에 의하지 않고 동양척식채권을 발행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발행 후 1개월 이내에 그 사채 총액에 상당하는 구동양척식채권을 상환해야 한다.

제71조 동양척식채권의 거치연한은 5년 이내로 하고, 그 상환기간은 30년 이내로 한다.

제72조 본 회사는 정부의 인가를 받고 동양척식채권을 매입·소각해야 한다.

제73조 동양척식채권 소유자 채권 또는 이찰(利札)을 훼손·상실했을 때는 신채권 또는 신이찰의 교부를 청구할 수 있다. 단, 본 회사는 채권소유자의 부담으로 공시(公示)·최고(催告)를 수속하고, 무효 선고가 내려진 이후가 아니라면 이를 교부하고 기명채권은 제23조의 규정을 준용(準用)한다.

제74조 채권의 명의서환, 신채권 또는 신이찰의 교부, 채권 종류의 변경 시 본 회사가 정한 수수료를 징수한다.

제7장 감리관(監理官)

제75조 동양척식주식회사 감리관은 회사의 업무를 감시하고 어느 때라도 회사의 금고와 장부 및 제반의 문서·물건(物件)을 검사할 수 있다.

동양척식주식회사 감리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어느 때라도 회사에 명령하여 영업상 제반의 계산 및 경황(景況)을 보고하게 할 수 있다.

동양척식주식회사 감리관은 주주총회, 기타 제반의 의회에 출석해서 의견을 전술할 수 있다.

제8장 계산

제76조 본 회사의 영업연도는 매년 4월 1일에 시작되어 다음해 3월 31일에 종료한다.

제77조 본 회사는 당해 연도 총이익금에서 동 연도 제(諸) 이식(利息)·영업비 및 제 손실을 공제한 잔액에 정부 보급금(補給金)을 더한 것을 이익으로 한다.

제78조 본 회사의 이익금은 아래의 방법에 따라 처분한다.

1. 이익의 100분의 8 이상 결손보전준비금
2. 이익의 100분의 2 이상 배당평균준비금
3. 이익의 100분의 10 이상 역원상여금
4. 이익 중에서 전 3호의 금액을 공제한 잔액을 주주에게 배당하거나 연도이월금으로 해야 한다.

제79조 본 회사는 설립등기일로부터 기산하여 8년간에 한해서 정부에서 매년 금 30만 엔의 보급금을 받는다. 단 매 영업연도의 이익 배당률이 불입자본금에 대해 연 8% 비율을 초과할 때는 그 초과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보급금 안에서 공제한다.

제80조 이익 배당률이 불입자본액에 대해 연 10%를 초과할 때는 그 초과금액은 우선 전 조의 보급금 상환에 충당한다.

전 항의 상환을 마쳤을 때에는 해당 초과금액은 그 반액을 특별적립금으로 한다.

제80조 2 본 회사는 정부가 소유하는 주식에 대해 1917년도 이후 1924년도까지의 영업 기의 이익을 배당할 필요가 없다. 단, 매 영업기에 이익배당이 정부 이외에 소유하는 주식의 불입자본액에 대해 연 8%의 비율을 초과할 때는 그 초과액은 정부 이외에 소유하는 주식에 대한 배당 비율에 도달할 때까지 정부가 소유하는 주식에 배당하고 여전히 잔여(殘餘)가 있을 때는 평등하게 배당한다.

제81조 본 회사는 정부의 허가를 받지 않으면 이익금을 처분할 수 없다.

제82조 이익금은 5월 1일 현재의 주주명부에 의해 주주에게 지불한다.

새로 불입된 주금액은 현재 불입을 마친 다음달부터 기산해서 이익금 배당액을 산출한다. 배당금의 불입기일 및 장소는 총재가 정하고 주주에게 통지해야 한다.

제9장 부칙

제83조 본 회사에 지방위원을 둘 수 있다.

지방위원은 총재가 촙탁한다. 그 인원수 및 보수는 총재가 정한다.

제84조 본 회사의 부담으로 귀속되는 설립비용은 금 7만 엔을 한도로 한다.

전 항 금액 중 정부의 입환(立換)과 관계되는 것은 정부가 반납한다.

제85조 본 정관을 개정할 때 현 이사의 임기에 관해서는 종전의 예에 따른다.

제86조 1918년 5월 22일 개최한 정시주주총회의 결의에 따른 자본증가액 1천만 엔 중 3백만 엔에 대한 주식 6만 주는 액면 이상의 가액으로 발행한다.

제87조 1919년 9월 10일 임시주주총회의 결의에 따른 자본증가액 3천만 엔 중 145만 엔에 대한 주식 9만 주는 액면 이상의 가액으로 발행한다.

〈출전 : 東洋拓植株式會社定款 『東洋拓植株式會社二十年誌』, 1928년, 109~131쪽〉

2) 동양척식주식회사 업무지역 및 업무종류

1. 업무지역

본사는 창립 당시부터 1917년 9월에 이르기까지는 조선에서만 척식사업을 운영했지만, 본 회사법의 개정에 따라 그 지역을 조선 및 외국으로 확장함과 동시에 동년 10월 우선 관동주(關東州) · 만몽(滿蒙)에 진출하고, 더욱이 1919년 6월에는 동부 러시아령 아시아 · 중국 본부 · 필리핀 · 남양반도에, 또 1923년 1월에는 말레이반도로 사업지역을 확장하였다. 현재의 영업지역은 아래와 같다.

- 1) 조선
- 2) 만주, 몽고
- 3) 동부 러시아령 아시아(바이칼호 동쪽)
- 4) 중국 직예성, 산동성 및 강소성
- 5) 필리핀 및 남양제도
- 6) 말레이반도

위 지역에서 사업을 경영하기 위해 설치된 본사의 영업소 소재지는 아래와 같다.

본점	도쿄시(東京市) 고지마치(麹町區) 우치야마시타초(内山下町) 1정목(一丁目) 1번지(一番地)
조선업무부	조선 경기도 경성부 황금정 2정목 195번지
토지개량부	조선 경기도 경성부 황금정 2정목 195번지
부산 지점	조선 경상남도 부산부 영정 2정목 2번지
대구 지점	조선 경상북도 대구부 동문정 4번지
이리 지점	조선 전라북도 익산군 익산면 이리 658번지의 3
목포 지점	조선 전라남도 목포부 본정 2정목 6번지
대전 지점	조선 충청남도 대전군 대전면 본정 2정목 80번지
경성 지점	조선 경기도 경성부 황금정 2정목 195번지
원산 지점	조선 함경남도 원산부 주동 6번지의 5
사리원지점	조선 황해도 봉산군 사리원면 구천리 442번지

평양 지점	조선 평안남도 평양부 죽전리 1번지
봉천 지점	중국 봉천성 봉천신시가 양속통 31번지
하얼빈지점	중국 길림성 하얼빈 추두구 우치야스토코와야가 23번지
대련 지점	관동주 대련시 근강정 20번지
간도출장소	중국 길림성 간도 용정촌 조선관사 통(거리)
청도출장소	중국 산동성 청도관도로 제16호
천진출장소	중국 직예성 천진 프랑스 조계 2호로 69호

또 상해 및 네덜란드령(보르네오, 반쟈르마신)에는 주재원을 상시 파견하여 업무를 계속하고 있다.

2. 업무종류

창립 당시 본사의 업무 종류는 아래와 같다.

- 1) 농업
- 2) 척식을 위해 필요한 토지의 매매 및 대차
- 3) 척식을 위해 필요한 토지의 경영 및 관리
- 4) 척식을 위해 필요한 건축물의 매매 및 대차
- 5) 척식을 위해 필요한 일한(日韓) 이주민의 모집 및 분배
- 6) 이주민 및 한국 농업자에 대해서 척식상 필요한 물품의 공급 및 그 생산 또는 획득한 물품의 분배
- 7) 척식상 필요한 자금의 공급
- 8) 부대사업으로서 수산업, 기타 척식을 위해 필요한 사업의 경영

1917년 7월 본 회사법 개정 결과, 업무 종류는 다음과 같이 변경되어 오늘날에 이르고 있다.

- (1) 척식을 위해 필요한 자금의 공급
- (2) 척식을 위해 필요한 농업, 수리사업 및 토지의 취득 · 경영 · 처분
- (3) 척식을 위해 필요한 이주민의 모집 및 분배
- (4) 이주민을 위해 필요한 건축물의 축조 · 매매 및 대차
- (5) 이주민 또는 농업자에 대해서 척식을 위해 물품의 공급 및 그 생산한 물품의

분배

- (6) 위탁에 의한 토지의 경영 및 관리
- (7) 기타 척식을 위해 필요한 사업의 경영
- (8) 정기예금

〈출전 : 業務地域及業務種類 『東洋拓植株式會社二十年誌』, 1928년, 7~11쪽〉

3) 궁삼면(宮三面) 사건 관계

[3-1]

삼면(三面) 사건의 진상 및 증거서류

삼면 대표자

(상략)

(2) 동양척식주식회사의 불법 약탈

1.

1909년 대표자 등은 모두 개량운동에 힘쓰고 고심하여 노력할 때, 동양척식주식회사에 삼면 사건의 진상을 알아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면민들의 수년의 고생에 동정하는 것 없이 도리어 중역 및 사원 등은 자주 경선궁(순빈 업비의 궁)의 엄주익(嚴柱益) 감무를 방문해서 삼면의 토지 전부의 매수를 신청했다. 엄주익은 그 토지는 면민과의 계쟁지(係爭地)라서 매각하기 어렵다고 하며 거절함에도 불구하고 동양척식주식회사는 계속 계책을 꾸미고, 관현의 위력을 업거나 또는 은밀하게 유리하게 행동해서, 마침내 동사에서 엄주익에게 아래와 같은 증서를 매입해서 삼면 토지의 매수계약을 성사하였다.

동양척식주식회사는 삼면의 토지에 대해서 면민과의 사이에 소송 등이 일어나서 폐사의 패소가 되더라도 피해는 폐사가 부담하고 귀하에게는 어떠한 피해도 끼치게 하지 않겠다고 운운.

이처럼 동양척식주식회사는 조선에서 몇 안 되는 옥토이자 우리 삼면민 2만여 명의 생명이라고 할 수 있는 양전 24,775두(斗) 4승락(升落)(1두락(斗落)은 200평)과 1만여 명의 면민이 비바람을 피할 수 있는 가옥 및 대지 1,600여 개소와 우리의 선조의 묘지와 임야를 합쳐서 금 8만 원으로 소유자가 아닌 경선궁(慶善宮)의 대리라는 염주익으로부터 매수하였다.(동양척식주식회사와 염주익과의 삼면의 토지매매계약서는 별책에 있다)

이처럼 몇 번이나 동양척식주식회사는 나주군 영산포 이창동에 출장소를 설치하고 삼면의 토지는 이번에 경선궁으로부터 매수했다며 삼면 인민에게 계약의 날인을 요구했지만 한 사람도 여기에 응하지 않았다. 이에 동양척식주식회사는 경관(警官)의 힘을 빌려서 면장·이장 등을 모두 포박하여 경찰서로 압송하여 구류에 처하고 밤낮으로 그들을 구타하여 빙사상태에서 강제적으로 날인시켰다.

1911년 동양척식주식회사는 일본 이민 51호(戸)를 삼면에 이주시켜 면민의 경작지를 몰수하고 회사 소유라고 기록한 표목을 세웠다. 면민은 자기의 전답을 빼앗기자 극력 반대했지만 현병 5명과 회사원 수십 명은 목도를 휘두르며 면민을 구타하거나 발로 차는 등 극히 난폭한 행동을 일삼았다. 그 과정에서 특히 비참한 것은 금산리 이회춘(李回春) 모친의 비명횡사이다. 그의 모친은 이 논은 우리 집의 소유인데 무슨 이유로 표목을 세웠는가라고 항의하며 표목을 뽑아갔는데, 이를 본 현병이 뛰어 와서 군화발로 격렬하게 모친의 흉부를 찼고, 결국 모친은 흉골 2개가 부러져서 자기 소유의 논두렁에서 비참하게 죽었다. 그 아들 이회춘은 비분을 견디지 못하고 경성고등법원 검사정(檢事正)에게 애소(哀訴)하려고, 울며불며 모친의 참사체(慘死體)를 호판(戶板)에 실어 이웃 4명과 함께 등에 지고 야음을 틈타 집을 나와 다음날 새벽 영산포 부근 남평에 이르렀지만 현병에게 발견되어 어쩔 수 없이 나아가지 못하였다. 다시 모친의 사체를 메고 영산포로 돌아갔는데, 무정한 현병은 이회춘 등이 현병분대 앞에 도착하자 한 걸음도 움직이지 못하게 하고 그 자리에서 강제적으로 매장하게 했다. 모친이 참살되었는데 더구나 호소할 곳도 없이 하늘에 탄식하고 땅에 곡하는 이회춘의 소리는 사방에 절절이 퍼져 비참하기 짝이 없었다.

2.

동양척식주식회사는 삼면의 토지 전부를 경선궁에서 매수했다고 성언(聲言)함에도 불구하고 이 토지 중에는 일본인 야마카미(山上)·구로즈미(黒住)·우치야마(内山)·고우노(河野)·요네자와(米澤) 등의 소유에 속하는 총 2,200여 두락¹⁾의 토지가 있다. 이 일본인 소유의 토지는 모두 시가로 매입했지만 우리 면민의 토지는 편법으로 탈취했다. 한

이 맷한 면민은 1912년 동양척식주식회사를 상대로 토지 환수소송을 광주지방법원에 제기해서 면민이 승소하였다. 이에 동양척식주식회사는 대구복심법원에 공소했지만 역시 패소하고 농민의 승소가 확정되었다. 때는 1913년 5월 20일이었다.(대구복심법원의 면민 승소판결문은 별책에 있다)

그런데 동양척식주식회사는 여전히 현병과 경관의 위력을 빌려 토지를 점령하고 반환하지 않았다. 그래서 면민은 어쩔 수 없이 광주지방법원에 다시 토지인도소송을 제기했다. 그런데 동 법원은 삼면의 토지는 1908년 한국 황제의 조칙에 의해 국유로 편입되고 국가에서 경선궁에 급여한 것이라는 사실무근의 이유로 면민에게 패소를 언도하였다. 이에 면민은 곧바로 대구복심법원에 공소했지만 다시 면민이 패소하였다. 때는 1914년 8월 12일이다.

3.

1915년 면민은 광주지방법원에 증명취소유권확인 토지인도의 소송을 제기해서 개정 2회째의 법정에서 면민은 애소하며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1913년에는 이 법정에서 삼면의 토지는 면민의 사유지라고 판결했습니다. 그런데 동양척식주식회사가 여전히 그 토지를 점유하고 반환하지 않아 그 인도를 당 법원에 호소했더니, 이전의 재판과는 달리 조칙의 효력은 사법재판에 좌우되지 않는 것이라는 명목으로 면민에게 패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동일한 재판소에서 동일 사건에 대해 전후가 모순되는 판결을 내린 것은 법리상 일사재리의 의혹이 없는지 우리는 의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특히 그 조칙에도 1897년 한국 황제 폐하의 고등재판소는 삼면의 토지는 면민의 소유라고 판결했고, 이후 국유재산조사국 위원회도 역시 삼면의 토지는 국유가 아니라, 삼면 인민의 사유라고 조사 결정하였습니다. 또 통감정치 시대에 민유지 무상몰수 등의 조칙이 있을 리가 없습니다. 우리 2만여 명의 면민은 더욱이 이 조칙이라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바라건대 판관이 당시의 황제 폐하 즉 이태왕 전하를 알현해서 그 사정을 여쭤본다면 조칙의 진위도 자명해질 것입니다. 특히 조선은 일본과의 전쟁에서 패하여 배상금으로 일본의 영토가 된 것이 아니라, 황송하게도 메이지(明治) 대제 폐하와 한국 황제 폐하는 세계의 대세에서 동양의 평화를 생각하시어 조선을 일본에 병합시켰습니다. 그렇다면 한국시대의 공정한 판결 및 사정(査定)은 병합 이후라도 유효한 것이 물

1) 斗落은 벼 1두를 파종할 수 있는 경지면적 단위이다. 전남의 경우는 120~200평에 해당하는데 궁삼면의 경우 1두락은 약 200평이다.

론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물며 당 법정에서 이전에 삼면의 토지는 면민의 소유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우리는 1888년 이래 오랫동안 악한폭리(惡漢暴吏) 때문에 괴로워하고 소유 전답은 항상 위협받고 수확물을 거의 탈취되어 비참한 상황에 빠졌을 때, 일한병합이 되어 겨우 탐관오리의 질곡에서 벗어나 공명정대한 일본의 법치하에 생활의 안정을 얻는 것으로 기뻐하였습니다. 그런데 얼마 안 되어 또 다시 여우와도 같은 동양척식주식회사의 중역 등은 한국시대의 폭리 및 경선궁에 모여드는 무뢰한 등과 공모 결탁하여 폐하의 선량하고 적자인 우리 면민의 생명인 전답을 빼앗으려고 합니다. 우러러 바라건 대 동양척식주식회사와 악한 엄주익 등 공모의 내용사실을 규명하여 공정한 판단하에 우리를 새로 편입된 민으로서 폐하의 덕과 혜택을 입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판관들은 면민의 도리 있는 주장과 비통한 탄원을 듣고 동정의 뜻으로 크게 움직였다.

4.

동양척식주식회사는 이 재판이 불리하다고 보고 3회째 개정일이 이르기 전, 즉 1915년 1월 초순 사원들과 현병 등 700여 명을 삼면에 출장시켜 전면을 포위해서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모든 인민을 큰 광장에 끄집어내어 그중 주요 지주 130여 명을 포박하여 영산포 현병분대와 광주 감옥에 투옥하였다. 남은 2만여 명의 남녀노소는 각각 자택 내에 감금하고 한 걸음도 문밖에 나가지 못하게 했다. 또 삼면의 토지는 동양척식주식회사의 소유로 인정하고 더욱이 과거의 소작료도 지불해야 한다는 증서에 날인을 강요하고, 이에 응하지 않은 자는 삼나무 밧줄로 결박하거나 목검으로 구타해서 다수의 중경상자를 속출하였다. 이 과정에서 면의 노인 나정문(羅正門)과 같은 경우는 타박으로 상처가 찢어져서 결국 사망하기에 이르렀다. 또 윤낙준(尹洛俊)의 부인은 출산 후 얼마 안 되어 끌려나왔기 때문에 열이 나서 빈사상태에 빠졌다. 잔인하고 악귀와 같은 무리들도 이를 차마 보지 못하고 그 부인을 온돌방으로 옮겼다. 이후 그 부인은 회복하였지만 산아(產兒)는 죽고 말았다. 이러한 아수라장 속에서 면민은 어쩔 수 없이 동양척식주식회사의 요구대로 무념의 눈물을 삼키면서 증서에 날인했고, 조정 중인 소송도 취하되기에 이르렀다.

[3-2]

면민총대(面民總代)의 동상(東上)²⁾ 탄원

목포에 체류하면서 면내의 정세를 감시하고 자주 주요 면민을 초치(招致)하여 모의에 열중하는 한편, 12월 8일 광주에 가서 하지(土師) 경찰부장과 회견하고 상경 인사를 하고, 부장의 중지권고를 받아들이지 않고 같은 날 밤 광주를 떠나 경성에 돌아가, 면민총대 이화춘·나상문·권평원·박승효 등과 회합해서 함께 경성을 떠났다. 도중에 부산에서 경찰의 저지를 당해도 완강하게 돌파해서 동경행을 감행하여 우선 본사(동양척식회사)에 중역을 방문하여 원하는 뜻을 말하였다. 이후 귀경 중인 혼죠(本庄)와 통모하여 요로를 방문해서 다음과 같이 기록한 탄원서를 제출하고 또 의회청원을 기획하고 체류한 것이 해를 넘기기에 이르렀다.

탄원서

조선 전라남도 나주군(羅州郡) 구(舊)지죽면(枝竹面), 구상곡면(上谷面), 구육곡면(郁谷面)(현재 세지면(細枝面), 영산면(榮山面), 왕곡면(旺谷面) 및 봉황면(鳳凰面)의 일부, 다시면(多侍面)의 일부)의 면민 일동은 피눈물을 토하며 탄원합니다. 과거에 메이지 대제(明治大帝) 폐하가 동양의 영원한 평화와 조선 민족의 복지를 생각하셔서 일한병합을 행해 주신 심원한 처사에 우리는 감격하였습니다. 그런데 병합 아래 정도(政道)가 자칫 하면 우리의 기대를 저버리고 일한병합의 성지(聖旨)에 위배되는 감이 없지 않습니다. 우리 삼면 2만의 주민은 동양척식주식회사의 사기간계에 의해 조상 전래의 전답을 빼앗겨 짚주리고 도로에 눕고, 조종의 분묘를 빼앗겨 유혼이 지하에서 옵니다. 더구나 이를 담당 관리에게 호소해도 듣지 않아, 우리는 곤란하고 당혹할 수밖에 없습니다. 대저 우리는 일본의 통치하에 있던 날이 적다 해도 동등한 일본 국민이고, 우리의 생명과 재산은 헌법에 의해 안전하게 보호받는다 함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새로 신민이 되었지만 차별 대우를 받고 있습니다. 동양척식주식회사의 죄악은 명백해서 해와 달이 함께 비추지 않고, 더구나 우리가 그것을 담당 관리에게 호소해도 듣지 않습니다. 이치가 잘못된 것은 자명한데 이를 호소할 길이 없어 우리는 곤혹할 수

2) 동경(東京)으로 감.

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어떤 죄가 있어 황화(皇化)에 젖을 수 없는지 고심번뇌를 금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동양척식주식회사 때문에 빼앗긴 전답은 우리 생활의 자원이라 우리는 이를 잊고 궁핍에 처했습니다. 삼면의 평화가 이 때문에 파괴되고 기아는 여전히 참아야 합니다. 참혹함과 괴로움 역시 참아야 하지만 우리가 비분통한 함을 참을 수 없는 것은 조종(祖宗)의 분묘를 빼앗긴 일입니다. 아! 우리가 어떤 면목으로 조종의 영령을 대하겠습니까? 우리는 두려워 조종에 감사하는 말을 하지 못하고 피와 눈물을 흘릴 뿐입니다.

우리가 동양척식주식회사 때문에 불법으로 빼앗긴 선조 전래의 경지 2만 4,775두(斗) 4승락(升落)³⁾과 가옥 및 택지 1,600여 필과 묘지, 임야 및 벼 13만 6,000석에 대해 반환을 요구합니다.

우리러 바라는 것은 우리의 사정을 불쌍히 여기시어 속히 이 문제를 해결해서 우리 생활의 안정을 도모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일시동인의 덕정에 은혜를 입을 수 있도록 문제의 진상과 증거 서류를 첨부하여 관계된 삼면 면민 일동 울며 피를 토하며 애절히 엎드려 바랍니다.

[3-3]

유고(諭告)

나주군(羅州郡) 영산면(榮山面), 세지면(細枝面), 왕곡면(旺谷面) 기타 5개 면의 각 일부에 걸친 소위 구궁삼면(宮三面)의 토지는 1909년 동양척식주식회사가 제규(制規)의 수속을 밟아 경선궁(慶善宮)에서 매수한 이래 거액의 자재를 투입하여 토지개량사업 등을 실시한 토지로서 그 소유권이 확실하게 동 회사에 귀속된 것은 명확하다. 어떤 방법으로도 추호도 침범할 수 없다는 것은 누구도 의심할 수 없는 사실이고 관계 면민도 충분히 숙지하는 바이다.

동양척식주식회사는 본 토지에 대해 매수 이래 거만(巨萬)의 부를 투입해서 관개 기타 식산상의 여러 시설에 노력하여 과거의 박토(薄土)를 현재의 옥토(沃土)로 바꾸고, 또 관계 소작인의 보호를 위해 상당한 시설을 설비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관계 소작인

3) 1두락은 200평.

등은 그 토지를 상실하고 과거의 관계를 말하며 이치적으로 용인할 수 없는 부당한 요구를 하고, 또 협잡배의 유혹에 의해 무익한 운동을 하여 금전을 낭비하는 등 인심이 안정되지 못하여 면민을 위해 견딜 수 없이 마음이 아프다.

반대로 그 지역 내의 토지와 소작인의 관계를 살펴보자. 이제 와서 법률문제로서 그 것을 말할 여지는 없다고 해도, 삼면의 땅은 소작인 등의 무덤의 땅으로 인연이 멀지 않은 것이 있고, 또 당국은 면민 각자의 생활 상태를 고려하여 깊이 그 속사정을 살펴서 신속히 지난 경위를 일소하고 정신적 내지 경제적 안주의 기초를 확립하지 않는다면 관계 소작농민이 오랫동안 구제되어야 할 시기가 없는 것을 생각해서 전에 동양척식주식회사의 동정에 호소한 바가 있다. 한편 관계 소작인 등은 자주 대표자를 통해서 당국에 속사정을 호소하고 더욱이 성의를 피력해서 동 회사에 대한 희망조건을 제시하고 받아들여지도록 알선해 달라는 취지를 탄원해서 동 회사에 그것을 전달했던바 다행히 동 회사는 소작인의 속사정을 깊이 양해하고 참을 수 없는 희생을 지불해서 그 목적 달성을 따를 것을 인정하고 승낙하였다. 그 이래 신중히 심의를 마친 결과, 별도의 발표처럼 관계 소작인의 희망 전부를 거의 충족하는 성안(成案)을 얻기에 이르렀고 지금 그 내용의 큰 틀을 서술하면 다음과 같다.

– 가대(家垈)는 즉시 무상 양도할 것

사는 집은 가족이 단란하게 즐거움을 향유하는 일가 유일의 안식의 장소이다. 그리고 대(垈)는 사는 집과 유일불가분의 관계를 가졌으므로 양자의 병유(併有)는 누구라도 열망하는 바로 이것이 있어야 주거의 안정을 기약할 수 있다. 현재 집에 긴절(緊切)한 관계를 가진 가대(家垈)는 무상으로 즉시 양도하는 것으로 결정된 이유로, 피양도자는 이에 의해 단지 가산의 증대를 달성했을 뿐만 아니라 안주의 기초를 확립했다고 할 수 있다.

– 묘전(墓田)으로서 논 등을 즉시 무상 양도할 것

선조를 제사하고 선영의 제사를 두텁게 하는 것은 우리 민족의 미풍이고 존중해야 할 것에 속한다. 제사의 비용을 대기 위해 광범한 면적의 토지를 더구나 무상으로 즉시 양도하기로 결정한 이유로서, 각 문종은 그에 의해 완전히 선조의 영을 제사하고 아울러 일문의 번영을 기원할 수 있다.

– 전답을 파격 조건으로 양도할 것

경지는 농업 경영상의 기본으로서 그 소유의 유무는 농가경제의 안정과 불안정을 좌우하는 근본문제이다. 1호당 약 5단보씩 표준에 의해 경지를 양도하기로 결정한 것으로, 관계 소작인은 이에 의해 거의 자작농으로 되거나 장래 자작농으로 될 수 있는 자격을 획득하게 되었다고 할 수 있다. 더구나 양도조건이나 가격 그 외에 대해서 보건대 이는 과거에는 물론 장래에도 다시 바랄 수 없이 피양도자에게 유리한 것으로서 본 건은 전 2항의 은혜와 더불어 일가생활상 및 농업상의 기초 확립이라고 할 수 있다.

위는 완전히 동양척식주식회사가 관계 소작인의 과거의 그 토지에 대한 연고관계를 성찰하고 또 연고 소작인 장래의 생활 안정 및 향상에 도움을 주기 위한 것에 다름 아님과 동시에 실로 연고관계 소작인에 대한 최후의 시설인 것을 깊이 명심해야 할 것이다.

지금 조선총독부 이하 당국 관헌의 다대한 알선과 동 사의 대 영단에 의해 여러 사람들이 장래의 향상, 발전의 기초를 확립하고 일신(一新)하여 생활경지에 들어설 수 있는 기회에 도달한 것은 관계 소작인에게 진실로 경복(慶福)이라고 할 수 있다. 여러 사람은 이 취지를 잘 납득하고 양도지(讓渡地)는 일시의 필요에 몰리거나 또는 그 외의 욕망으로 타인에게 양도하는 것 없이 영구히 자자손손에 물려주어 보유해야 할 것은 물론 서로 협동해서 농사의 개량과 발달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서, 안으로는 일가의 번영을 도모하고, 밖으로는 모범농촌의 이상향을 만들어서 널리 성대(聖代)의 혜택을 입게 할 것을 기약해야 할 것이다.

위와 같이 유고한다.

1926년 4월 1일
전라남도지사 장현식(張憲植)

〈출전 : 三面事件之眞相並證據書類 面民總代ノ東上歎願 諭告, 『宮三面事件關係』, 1925년,
日本國立公文書館 소장, 簿書番號 17c番 19号〉

2. 산업조사위원회

1) 산업조사위원회 규정

조선총독부훈령 제36호

산업조사위원회 규정을 다음과 같이 제정한다.

1921년 6월 6일
조선총독 남작 사이토 마코토(齋藤實)

산업조사위원회 규정

제1조 조선총독부에 산업조사위원회를 설치한다.

산업조사위원회는 조선총독의 자문에 응하여 조선의 산업에 관한 중요사항을 조사, 심의한다.

제2조 산업조사위원회는 위원장 및 위원으로 조직한다.

제3조 위원장은 조선총독부 정무총감이 맡는다.

위원은 조선총독이 촉탁한다.

전 항 이외에 위원은 조선총독부 고등관 중에서 임명한다.

제4조 위원장은 회무를 총괄하고 회의의 결과를 조선총독에게 구신(具申)한다.

위원장 사고 시는 위원장이 지정하는 위원이 그 사무를 대리한다.

제5조 산업조사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따로 위원을 지정하여 조사를 시행할 수 있다.

제6조 위원장은 위원 출석의 편의를 위하여 도쿄 및 경성에서 따로 위원을 소집하여 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전 항의 경우, 특히 모든 위원이 회의에 참석하여야 할 때는 위원장은 서면(書面)으로 위원의 찬부(贊否)를 알려야 한다.

제7조 위원장은 서면으로 위원의 의견을 묻고 회의를 대신할 수 있다.

제8조 조선총독은 필요에 따라 조선총독부 및 조선총독부 소속관서의 고등관 또는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자를 회의에 출석시켜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제9조 산업조사위원회에 간사를 둔다. 조선총독은 조선총독부 고등관 중에서 간사를 임명한다.

간사는 위원장의 지휘를 받아 서무를 처리한다.

제10조 산업조사위원회에 서기를 둔다. 조선총독은 조선총독부 판임관(判任官) 중에서 서기를 임명한다.

서기는 상사의 지휘를 받아 서무에 종사한다.

〈출전 : 『朝鮮總督府官報』, 1921년 6월 6일〉

2) 산업조사위원회 개황

본회는 1921년 6월 6일 위원회 규정의 발포(發布)에 이어 같은 해 8월 30일 및 9월 3일 두 차례에 걸쳐 일본과 조선에 재주(在住)하는 자 각 20명 및 본부 각 국장과 부장 8명, 총 48명에게 각각 위원을 촉탁, 임명하여 완전한 준비가 갖춰진 9월 15일에 개회하였다. 회의에 참여한 위원 총 43명(5명은 사고로 불참)은 본부에서 조사연구를 위해 제시한 「조선 산업에 관한 일반 방침 및 계획 요항(要項)」과 「조선 산업에 관한 계획 요항 참고서」를 자료로 먼저 15, 16일 이틀간 본 회의를 열고 많은 질의응답과 의견진술을 마쳤다. 그 결의에 따라 3부(部)의 특별위원회(제2부 특별위원회에서는 따로 소위원회를 설치한다)를 설치하고 각 사항을 분담하여 상세한 연구조사를 실시하기로 하고, 17일부터 19일에 걸쳐 회의를 계속하여 각각 조사를 마쳤다. 20일에 다시 본 회의를 개최하여 각 특별 위원회 보고를 기초로 하여 더 진중하게 심의하여 이를 승인하고, 모든 의사(議事)를 종료하고 오후 5시에 폐회하였다. 결의사항은 '산업에 관한 일반 방침'에 다소간의 자구(字句)를 수정하고 또한 '계획요항 제10 도로항만하천에 관한 건' 중 '제6 내륙수운의 이용을 도모할 것'의 1항을 추가한 것 이외에는 전부 본부가 제시한 안(案)을 가결하였다. 또한 두세 가지 희망사항을 덧붙여 같은 날 위원장으로부터 그 사항을 진술하고, 이를 총독에게 답신하여 답신서(答申書) 및 의사의 개요 등을 별도로 기록하여 본서에 첨부한다.

〈출전 : 『產業調查委員會概況 『產業調查委員會會議錄』, 1921년 9월, 1~2쪽〉